

연구보고 2007-02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서 문 회
최 혜 선

발 간 사

영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를 둘러싼 환경과 영아의 경험은 이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투자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투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면서 더 어린 연령의 영아에게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의 양육을 가족이 책임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신생아때부터 대리양육을 경험하는 영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하여 상당부분 약화되거나 사회로 전이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간 보육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출산휴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취업모를 위한 자녀 양육정책은 취약한 수준이다. 상당수의 영아가 조부모와 같은 혈연이나 이웃탁아모와 같은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아 양육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영아 양육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모집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정부와 보육 관계자, 그리고 조사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 보고서의 근로자 자녀양육 부분의 자료수합 및 정리에 도움을 준 최정운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와 정책 대안들이 영아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 영아 양육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영아 양육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모집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

나. 연구 내용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양육지원 법·제도를 검토하고, 영아 양육지원이 아동발달, 여성취업 및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 영아보육에 대한 OECD 등 국제 정책 동향을 분석함.
 - － 영아를 둔 가정의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 시설보육 운영, 이용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관련 제도 사용 및 요구도를 파악함.
 - － 영아 양육지원 제도와 부모 요구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시설보육의 내실화, 가정내 자녀 양육 지원의 강화,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제도 사용의 활성화 등 정책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국내외 영아 양육지원 관련 자료 수집·분석
 - － 관련법, 제도, 현황 통계, 관련 연구문헌 등 자료를 수집함.

□ 기존 조사자료 분석

-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2007년도 육아정책개발센터 베이비시터 실태 조사와 2007년도 보육도우미 조사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하였음.

□ 3종의 설문조사 실시

-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총 743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 현황과 지원에 따른 시설간의 제 특성의 차이, 요구도 등을 파악함.
- 3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982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구 및 부모특성, 자녀 양육지원 실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음.
- 근로자 51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양육지원 및 이용 실태, 장단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였음.

□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회의, 영아보육 시설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를 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이론적 배경

-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인지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여성의 취업률 및 출산율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냄.

- 기존 연구와 OECD 국가의 영아 보육서비스와 육아휴가제도, 현금 지원 등 자녀 양육지원 정책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이 모두 높은 국가들은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국가들임.
- 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지원정책이 필수적임. OECD 유럽 국가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더 길고 휴가 중 대체임금 지원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어 있음.
- 영아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원의 정도가 중요함. 충분한 기간과 급여가 보

장되는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제공하고, 이후의 취업도 보장하며, 육아휴가 이후에는 부모가 큰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육을 공적체제로 확립하였음.

3.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제도

가. 제도

-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2007년 법 개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음.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음.
-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은 시설보육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2004년 법 개정으로 인력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도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를 강화하였음.

나. 현황

-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아직 많은 아동이 가정내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보육료 지원 이외 중앙정부의 자녀양육비용 직접 지원 정책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자녀 양육 정보 제공, 상담, 심리적 지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자녀양육 지원 기능은 취약함. 대부분 친구나 동료와 같은 비공식 채널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음.

4. 영아 시설보육 실태

가. 보육시설 이용 영아 특성과 이용행태

-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조사에서 조사된 보육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은 0세아 82.0%, 만1세아 75.7%, 만2세아 66.6%로, 총 취업모 비율은 70% 정도가 되는데 비하여 종일제 보육아동비율은 그 1/2에 불과함.

-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종일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님.

나. 영아와 유아 보육의 형태

- 영아 보육시설 유형에서 시설장과 부모의 선호는 다양함. 대략적으로 45.8%는 영아전담 시설을 선호하고, 25.7%는 영아 중심 시설을 선호하며, 28.5%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시설장과 부모의 의견을 보면 보육아동 구분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다. 보육시설 프로그램

-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높아, 0세아의 경우 외국어를 한다는 비율이 13.2%로 가장 높음.
- 영아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은 매우 낮고, 개별적 서비스 의뢰 가능성은 높지 않음.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실시도 취약함.

라. 비용

- 시설유형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차이로 보육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민간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음.
-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0세아 75.2%, 만1세아 69.8%, 만2세아 67.7% 수준의 비용으로 아동을 보육하여야 함. 그 결과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시설 교사의 64% 수준이고,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음.

마. 시설 운영의 투명성

-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인증, 운영위원회 운

영, 재무회계규칙 등을 실시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정부의 비용지원과 시설 운영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나타냈음.

바. 부모 인식 및 의식

□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이 기본보조금 지원 시설인지를 인지하는 비율이 낮음.

- 이용하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경우가 64.7%,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0.9%로 총 65.6%의 부모가 지급 여부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4%임.

□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의 차이가 큼. 시설장의 20.0%가 자율화 시설로의 운영을 찬성하지만 부모들은 단지 2.7%만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료 자율화 제도 도입 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함.

사.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최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 부모와 시설장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음. 부모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최근 서비스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7개 항목 중 긍정적 응답이 50% 이상인 항목은 시설장은 6개였으나 부모 응답에서는 한 항목도 없었음.

- 기본보조금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하여 시설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는 낮음.

5. 가정내 보육 실태

가. 서비스 공급

□ 기관 보육서비스 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모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단체에서 가정내 보육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영리회사에서의 사업도 별도로 실시됨.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육아돌보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등이 실시되고 있음.
- 각 사업주체별로 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므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음.
- 비영리 기관이나 영리 기관이나 모두 도우미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보육내용, 사후관리 등이 개별 조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음.
- 보육 비용 지원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고, 가정내 보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이 없음.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비용을 지원함.
- 공적 가정내 보육제도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확대와 가정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나. 이용

- 본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에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는 친조부모 47.1%, 외조부모 37.8% 순으로 높고, 나머지 대리양육인의 이용비율은 10%로 조사되었음.
- 비용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63.9%, 지불 안 함 32.8%, 비정기적 지불 3.4% 순임.
- 지불하는 경우, 지불하는 액수는 월평균 40만 300원으로 최소 7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타냄.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평균 지불 액수의 차이는 약 8천원으로 크게 차이는 없음.

6.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실태

가. 모성보호

- 근로자를 위한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으나 파트타임제,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풀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0% 이하로 나타남.

- 실제 시행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 미만이고, 실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30% 이상으로 높음.
 -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시차 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단축근로 제도를 실시한다는 비율은 각각 10.4%, 3.8%, 8.5% 수준임.
- 육아 휴직자의 수가 증가하여 산전 휴가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6년 27.8%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육아휴직제도 정착 방안으로는 복수 응답 결과 50.5%가 직장분위기, 원직복직 보장 43.5%, 육아휴직 급여인상 31.0%, 대체인력 확보 28.6%, 불이익 금지 21.6%의 순임.

나. 직장보육

- 2004년 이후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이 매년 10% 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2006년까지도 전체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시설 설치 비율은 22.1%이고 수당 지원 등 의무 이행률은 40.1%에 머물고 있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행률이 높음.

다. 탄력 근무

-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에서 실시 비율은 시차출근제가 10.4%, 파트타임제 3.8%, 근로시간 단축 8.5% 수준임.
 - 사업장 규모별로는 20~49인 사업장이 시차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임.
 - 탄력적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주로 업무 성격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제도 실시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음.

7. 영아 양육지원 체계 정립방안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영아 양육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본방향은 지원 정책 대상의 포괄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는 정책, 서비스에 대한 지원간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이 고려 등임.

나. 영아 시설보육의 내실화

1) 보육시설 운영

- 보육아동 구분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장의 45.8%는 영아전담 시설을 선호하고 25.7%는 영아 중심 시설을 선호하며, 28.5%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적 물리적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수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됨.
 - 국공립·법인시설에도 아동이 줄어든 경우 현재는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3개월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이 교사 1인당 영아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교사 2인당 아동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취약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거점형 시설로 육성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임.
 - 시간제 보육은 거점형 시설을 중심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던 지, 아니면 특수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아픈 아동 보육은 일부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설비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어 보육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시간연장형 보육은 인건비 지원 시설의 규모를 늘려나가야 함.

2) 보육비 및 재정

-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지원은 교사 급여와 운영의 투명성 등과 계속 연계되어야 함.
 -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차이로 보육비용에 차이가 있음.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0세아 75.2%, 만1세아 69.8%, 만2세아 67.7% 수준의 비용으로 아동을 보육하여야 함. 추가 소요액은 2007년 기준으로 496억원인데, 이 비용의 정부와 부모의 부담이 정책과제임.
- 모의 취업여부에 의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연장제와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 필요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 기존 필요한 예산 대비 93% 정도가 소요됨.
- 차등보육료 지원체계 중 0세아와 만1세아에 한해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이상부터 지원 비율을 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상 계층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함.

3)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운영위원회 운영, 재무회계규칙 등 실시 비율이 낮아서 이러한 조치와 정부 지원과 연계가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조력을 강화함.
- 정부 지원의 정도를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잘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교사 급여로 책정되도록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함.
 -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조기에 추진함. 우선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연계시키고, 추후 차등보육료와도 연계시켜야 함.

다.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1)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를 시설보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립이 필요함. 영리, 비영리 민간사업체는 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 가정내 보육서비스 소개 사업자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함.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자격을 위하여 실습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계한 초기 교육,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사후관리가 중요함.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함.
 - 아이 돌보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개별적인 손해보험 가입 등 시터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가 주어져야 할 것임.

2)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공체체계 구축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 사업체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함. 여기에는 보육인력의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됨.
 -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 대상, 서비스 유형 등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의 근로자성 확보 문제임.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필요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함.
 - 영아에 우선 적용하고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할 수 있음.

라. 영아 양육지원금 지원제도 도입

- 제1안
 - 제1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보육 미이용 영아 중 혈연,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임.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영아는 2008년 아동수 기준으로 37만 1895명으로 추정됨.

-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소요예산은 총 3719천만원이 됨.

□ 제2안

- 제2안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임.
-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받는 아동을 제외하면 영아 수는 약 92만명인데, 이들 전체에 월 10만원을 적용하면 소요예산은 약 1조 1100억원이 소요됨.

- 연령, 출생순위,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 등 아동과 가정 특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마. 세제지원의 개선

- 취업모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탁아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연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보육수당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데, 취업모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함.
 - 취업모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보육수당도 기업이 지급하는 전액을 비과세 하여 취업모와 그 이위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사용함.

바.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확대

- 자녀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현재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여성가족부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부모 상담은 물론 부모와 아동이 함께 와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취업모 자녀양육 지원 활성화

1) 산전후휴가 사용 제고

-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사용 비율을 높임.
 -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휴가를 계속 부여할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6개월간 40~60만원을 지원하는데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산전후휴가 급여 중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대기업 60일분 휴가 급여를 사회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급여 수준의 상한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급여 상한선은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인데, 135만원은 2006년 평균 임금 201만원의 2/3 수준임.
- 산전후휴가의 대상은 고용평등과 부모의 자녀 양육공동책임 관점에서 여성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함.

2) 육아휴직의 활성화

- 현재 30% 미만인 출산 대비 육아휴직률은 제고하여야 함. 적어도 출생 후 1년은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 발달과 부모 모두에게 바람직함
- 비정규직 육아휴직 경험률은 12.2%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 정책지급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평상 임금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남성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우대 등 지원 방안도 필요함.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대체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시기를 육아휴직자 복귀 시점에서 대체인력 활용 때 분기로 전환함.

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확산

- 탄력적 근무제도 등 유연근무제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은 미흡한 상태이므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탄력적 근무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함.

4) 직장보육 지원 활성화

-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직장에서 담당하여야 할 보육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부적절성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는 수용하여 충분히 검증하여야 함.
 - 기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장 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체 밀집지역 등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의 정의 및 보고서 구성	9
II. 이론적 배경	12
1. 영아 양육지원의 영향력	12
2. 영아 양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24
3. OECD 국가의 영아 양육지원	31
4. 정책시사점	49
III.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제도	50
1. 영아 양육지원 현황	50
2. 영아 양육지원 제도	64
3. 정책시사점	83
IV. 영아 시설보육 실태	84
1. 영아 보육시설 이용	84
2. 영아 보육시설 운영	98
3. 보육비용 지원	134
4. 정책시사점	143
V. 가정내 보육 실태	146
1.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	146
2.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168
3. 정책시사점	176

VI.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실태	178
1. 여성근로자 현황	178
2. 산전후휴가 실시 및 사용	188
3. 육아휴직 실시 및 사용	193
4.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199
5.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및 이용	206
6. 정책시사점	210
VII. 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영아 양육지원 방안	213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13
2. 영아 시설보육의 내실화	215
3.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223
4.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활성화	232
VIII. 맺는 말	237
참고문헌	240
부 록	249
1.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조사표	
2. 영아가 있는 가구조사표	
3. 영아가 있는 근로자조사표	

표 목 차

〈표 I-3-1〉	보육시설 설문조사 항목	5
〈표 I-3-2〉	보육시설조사 완료 시설 수	5
〈표 I-3-3〉	가구 설문조사 항목	6
〈표 I-3-4〉	가구조사 완료수	7
〈표 I-3-5〉	근로자 설문조사 항목	8
〈표 I-3-6〉	근로자 설문조사 응답자 사업장 규모 분포	9
〈표 II-1-1〉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	21
〈표 II-3-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39
〈표 II-3-2〉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	42
〈표 II-3-3〉	주요 국가의 자녀 양육지원 사례 비교	47
〈표 III-1-1〉	연도별 연령별 추정 영유아 수	51
〈표 III-1-2〉	아동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여부	52
〈표 III-1-3〉	영아 모의 주된 미취업 이유	52
〈표 III-1-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53
〈표 III-1-5〉	취업모의 영아 실제 보육자	53
〈표 III-1-6〉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54
〈표 III-1-7〉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54
〈표 III-1-8〉	취업모의 가사대리인 이용 이유	56
〈표 III-1-9〉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이유	56
〈표 III-1-10〉	기관 미이용자의 주된 기관 미이용 이유	56
〈표 III-1-11〉	모 특성별 부모 이외의 바람직한 영아 주 양육자(기관)에 대한 의견	57
〈표 III-1-12〉	모취업여부별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58
〈표 III-1-13〉	취약보육 필요성 정도	59
〈표 III-1-14〉	취약보육 필요시 대처방안	59
〈표 III-1-15〉	영유아가구 공동 비용 1인 당 몫 월 평균	60
〈표 III-1-16〉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	60
〈표 III-1-17〉	학습지나 방문지도 이용 및 주요 내용	61
〈표 III-1-18〉	개인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61

〈표 III-1-19〉	정부의 보육수당 지원 시 도움이 되는 최저 월평균 보육비용	62
〈표 III-1-20〉	모 특성별 육아 관련 정보 획득 경로	63
〈표 III-1-21〉	모 특성별 자녀 양육 관련 주된 상담자	63
〈표 III-1-22〉	모 특성별 육아정보·상담제공 전문의 육아지원전문기관 필요성	64
〈표 III-2-1〉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69
〈표 III-2-2〉	연도별 영아전담시설 지정 및 지원 현황	71
〈표 III-2-3〉	연도별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영아 지원 현황	72
〈표 III-2-4〉	시도 영아보육관련 특수사업	74
〈표 III-2-5〉	시·군·구 영아보육관련 특수사업	74
〈표 III-2-6〉	자녀 양육 가정 세제지원 제도	75
〈표 III-2-7〉	지방자치단체 양육비 지원 현황 총괄표	78
〈표 III-2-8〉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양육비 지원 현황	79
〈표 III-2-9〉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관련 양육비 지원 현황	80
〈표 IV-1-1〉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84
〈표 IV-1-2〉	각 세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비율	85
〈표 IV-1-3〉	보육료 지원아동 수	86
〈표 IV-1-4〉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비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87
〈표 IV-1-5〉	지원형태별 취업모 비율	88
〈표 IV-1-6〉	시설유형별 취업모 비율	88
〈표 IV-1-7〉	지원형태별 종일제 영아 비율	89
〈표 IV-1-8〉	시설유형별 종일제 영아 비율	89
〈표 IV-1-9〉	현재 해당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91
〈표 IV-1-10〉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기간	92
〈표 IV-1-11〉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일수	92
〈표 IV-1-12〉	보육시설유형별 이용시간	93
〈표 IV-1-13〉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94
〈표 IV-1-14〉	지원형태별 차량이용 영아 비율	94
〈표 IV-1-15〉	시설유형별 차량이용 영아 비율	95
〈표 IV-1-16〉	부담하는 보육료 대비 보육서비스 만족 여	96
〈표 IV-1-17〉	불만족 시,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부문	97
〈표 IV-1-18〉	영아보육시설에 가장 바라는 점	98

〈표 IV-2-1〉	보육시설유형별 보육 영아수	99
〈표 IV-2-2〉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아동 대비 영아 비율	99
〈표 IV-2-3〉	연령별 보육영아의 보육시설 유형 분포	99
〈표 IV-2-4〉	영아보육시설 지원형태별 보육비용 비교	101
〈표 IV-2-5〉	연령별 보육비용 비교(2005, 2007)	102
〈표 IV-2-6〉	바람직한 영아 보육시설 형태에 대한 시설장 의견	103
〈표 IV-2-7〉	현 형태별 바람직한 보육시설 형태에 대한 시설장 의견	104
〈표 IV-2-8〉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104
〈표 IV-2-9〉	연령별 활동별 특별활동 실시 보육시설 비율	105
〈표 IV-2-10〉	영아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이용 비율	106
〈표 IV-2-11〉	지원형태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107
〈표 IV-2-12〉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107
〈표 IV-2-13〉	보육시설에 개별서비스의 의뢰 가능성	108
〈표 IV-2-14〉	시설유형별 개별서비스 의뢰 가능 여부	109
〈표 IV-2-15〉	지원형태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110
〈표 IV-2-16〉	지원형태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112
〈표 IV-2-17〉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평가 5점 척도 I	113
〈표 IV-2-18〉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평가 5점 척도Ⅱ	113
〈표 IV-2-19〉	이용시설의 서비스·설비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114
〈표 IV-2-20〉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116
〈표 IV-2-21〉	영아 연령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117
〈표 IV-2-22〉	모의 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117
〈표 IV-2-23〉	보육서비스 개선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인식	118
〈표 IV-2-2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인식	119
〈표 IV-2-25〉	최근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120
〈표 IV-2-26〉	영아 연령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121
〈표 IV-2-27〉	취업여부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122
〈표 IV-2-28〉	지원형태별 보육교사 자격 분포	123

〈표 IV-2-29〉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분포	124
〈표 IV-2-30〉	지원형태별 교사 급여 및 경력	124
〈표 IV-2-31〉	시설유형별 교사 급여 및 경력	125
〈표 IV-2-32〉	지원형태별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 급여 차이 여부	126
〈표 IV-2-33〉	지원형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126
〈표 IV-2-34〉	시설유형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127
〈표 IV-2-35〉	지원형태별 대체교사 고용 여부	128
〈표 IV-2-36〉	시설유형별 대체교사 고용 여부	128
〈표 IV-2-37〉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130
〈표 IV-2-38〉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130
〈표 IV-2-39〉	지원유형별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	131
〈표 IV-2-40〉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상태	131
〈표 IV-2-4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132
〈표 IV-2-42〉	지원형태별 재무회계 규칙 준수의 어려움	132
〈표 IV-2-43〉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133
〈표 IV-2-44〉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133
〈표 IV-3-1〉	지원형태별 연령별 보육료	134
〈표 IV-3-2〉	시설유형별 연령별 보육료	135
〈표 IV-3-3〉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보육료	135
〈표 IV-3-4〉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136
〈표 IV-3-5〉	지원형태별 정부 지원금 비율	136
〈표 IV-3-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입 중 정부지원금 비율	137
〈표 IV-3-7〉	시설유형 및 지역별 기본보조금 중 교사급여 인상분	137
〈표 IV-3-8〉	시설유형 및 지역별 영아 기본보조금 수령 이후 보육인력 충원 여부	138
〈표 IV-3-9〉	이용 시설의 기본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부모 인지	139
〈표 IV-3-10〉	기본보조금 지원 받는 경우, 비용 인지 여부	140
〈표 IV-3-11〉	시설유형 및 기본보조금 지원여부별 보육시설 운영 방향	141
〈표 IV-3-12〉	앞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시설 형태	142
〈표 IV-3-13〉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금액 ..	143
〈표 V-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 교육 현황	148

〈표 V-2-11〉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174
〈표 V-2-12〉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174
〈표 V-2-13〉	연도별 영아 부모의 가정과건 보육도우미 제도의 필요도	175
〈표 V-2-14〉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제도 필요 여부	175
〈표 VI-1-1〉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추이	181
〈표 VI-1-2〉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3
〈표 VI-1-3〉	노동시장 복귀 시 장애요인	183
〈표 VI-1-4〉	일일 평균 육아시간	184
〈표 VI-1-5〉	취업으로 인한 영아 대리양육 시 바라는 사항	184
〈표 VI-1-6〉	정부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문제점	185
〈표 VI-1-7〉	영아 양육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185
〈표 VI-1-8〉	기업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의 애로요인	186
〈표 VI-1-9〉	가장 효과가 높은 제도	186
〈표 VI-1-10〉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187
〈표 VI-1-11〉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제도	187
〈표 VI-2-1〉	여성취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여성근로자	188
〈표 VI-2-2〉	연도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	189
〈표 VI-2-3〉	산업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2006년)	189
〈표 VI-2-4〉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2006년)	189
〈표 VI-2-5〉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제도 실시 및 사용	190
〈표 VI-2-6〉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191
〈표 VI-2-7〉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자 만족도	192
〈표 VI-2-8〉	산전후휴가기간 미사용 이유	193
〈표 VI-3-1〉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194
〈표 VI-3-2〉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현황(2006년)	194
〈표 VI-3-3〉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현황(2006년)	194
〈표 VI-3-4〉	연도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195
〈표 VI-3-5〉	연도별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실적	195
〈표 VI-3-6〉	연도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실시 현황	196
〈표 VI-3-7〉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필요성	197
〈표 VI-3-8〉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대체인력 풀 운영 제도 필요성	197

〈표 VI-3-9〉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만족도	198
〈표 VI-3-10〉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198
〈표 VI-3-11〉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정착 방안	199
〈표 VI-4-1〉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용자지원 현황	200
〈표 VI-4-2〉	연도별 의무사업장의 직장 보육 서비스 제공현황	201
〈표 VI-4-3〉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	201
〈표 VI-4-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비율	202
〈표 VI-4-5〉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 실시 및 이용 비율	202
〈표 VI-4-6〉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203
〈표 VI-4-7〉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 실적	203
〈표 VI-4-8〉	연도별 보육교사 임금지원 현황	204
〈표 VI-4-9〉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과 기업의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 ..	205
〈표 VI-4-10〉	직장보육시설과 기업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	205
〈표 VI-4-11〉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206
〈표 VI-5-1〉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현황	207
〈표 VI-5-2〉	사업장 규모별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및 이용 비율	208
〈표 VI-5-3〉	사업장 규모별 탄력근무제도의 필요성	209
〈표 VI-5-4〉	탄력근무제도별 만족도	209
〈표 VI-5-5〉	사업장 규모별 탄력적 근무제도 미이용 이유	210
〈표 VII-1-1〉	영아 양육지원 기본 인프라	214
〈표 VII-1-2〉	영아 양육 비용 지원 내용	214
〈표 VII-2-1〉	시설보육의 과제	215
〈표 VII-2-2〉	보육비용 기본	219
〈표 VII-2-3〉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비용 절감 비율	221
〈표 VII-2-4〉	취업모 소득단계별 차등보육료 조정(2009)	222
〈표 VII-3-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의 과제	223
〈표 VII-3-2〉	제1안 예산 추계안	229
〈표 VII-3-3〉	제2안 예산 추계안	229
〈표 VII-3-4〉	연령별 연차별 적용시 소요예산(제2안)	230
〈표 VII-4-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의 과제	232

그 립 목 차

[그림 II-3-1]	3세 미만아의 모 취업률과 ECEC 이용률	34
[그림 II-3-2]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비용(2003)	37
[그림 II-3-3]	OECD 각국의 육아휴직 및 영아 보육기관 등록률	43
[그림 II-3-4]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정책 접근 유형	44
[그림 III-1-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 보육서비스 이용률 비교	55
[그림 III-1-2]	2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정책	62
[그림 IV-1-1]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증가 추이	85
[그림 IV-2-1]	보육시설에 개별서비스의 의뢰 가능성	108
[그림 IV-2-2]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111
[그림 IV-2-3]	이용시설의 서비스·설비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115
[그림 IV-2-4]	최근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 변화: 시설장과 부모 비교	120
[그림 VI-1-1]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79
[그림 VI-1-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80
[그림 VI-1-3]	성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추이	181
[그림 VI-1-4]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	183
[그림 VI-2-1]	여성 위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	19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람의 두뇌는 생후 첫 2~3년 동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다. 생후 3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유아의 언어적, 인지적 발달과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 대한 투자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투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기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양질의 보육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맞물려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아보육은 여성 노동력 활용 관점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영아를 둔 젊은 여성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영아 양육지원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양육지원은 출산력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OECD 국가의 시계열 자료 분석(Castle, 2003)에서는 아동 보육지원, 특히 3세 이하 영아 보육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강력한 정책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보육서비스 이용률이 1% 증가할 경우 출산률이 0.01명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OECD, 2003).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전은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이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Sleeboos, 2003)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자녀 양육이 저출산 현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3세 이하 영아의 보육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영아 양육 지원이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 OECD 각국의 영아에 대한 정책 접근은 부모휴가에 의한 보호와 시설 및 개인에 의한 대리보호 기회의 확대의 두 가지가 주축을 이룬다. 출생 후 1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기간이 더 길고 휴가 중 대체임금 지원 비율이 높고, 휴가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어 있으며, 부모휴가에 아버지의 동참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형 국가들은 출산 및 부모휴가 기간도 짧고 무급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대체로 출산 후

1년 이후에는 공적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기회는 3세 이상 유아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공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위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근 들어 영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도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출산전후 모성보호와 출산 후 일정기간의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정책을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지난 10여년간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보육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보육예산도 2002년 대비 2007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2004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사실상 전면 개정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제도 및 자격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보육발전 방안들이 추진하고 있다. 영아보육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는 영아전담시설 지정제도를 추진해 왔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2002년부터 영아반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에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되고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시설의 영아수는 191천명으로 2005년 182천명에 비하여 9천명이 늘어났으며, 지원 예산은 942억원으로 전년대비 37.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시설 중심이어서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출산휴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육아추진제도와 수유·탁아 등 육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여성이 육아로 인해 취업을 중단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30일 연장으로 추가된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사회화하였으며,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2007년에 동법을 전부 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장 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보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녀 양육지원은 선진국 각국의 가족친화적 포괄적 지원정책에 비

하여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아직 미미하다. 외국처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또한 영아, 특히 생후 첫 1년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양육에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여건 마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취약하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이 조부모와 같은 혈연이나 아웃타아모와 같이 비혈연에 의한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비공식 보육이 영아 보육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영아 양육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영아 양육지원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 부모집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영아를 둔 부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양육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영아 양육지원이 아동발달, 여성취업 및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토하였으며, 영아보육에 대한 OECD 등 국제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영아를 둔 가정의 공식, 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가구 특성과 모의 특성 등 집단간 영아 양육서비스 이용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 시설보육 현황과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비용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시설보육에 대한 대안보육인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과 공급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정보육모 파견사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 등 영리, 비영리부분에서 추진되는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파견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 정책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고, 근로자 관련 제도의 이용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여섯째, 영아 양육지원 제도와 부모 요구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시설보육의 내실화, 가정내 자녀 양육 지원의 강화, 기업의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제도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나누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영아 양육지원 관련 자료 수집·분석

관련법, 제도, 현황 통계, 관련 연구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관 중심 양육지원서비스, 기업에서의 양육지원,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 가족 친인척에 의한 지원, 개인고용에 의한 지원 등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중 영아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2005년 영아를 보육하는 일하는 엄마 영아 보육실태조사 보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 의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나. 기존 조사자료 분석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중 보육부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특성과 가정에서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조사한 2007년도 베이비시터 실태 조사와 2007년도 보육도우미 및 보육도우미 이용 가정 실태조사 자료 중 영아 보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 설문조사 실시

보육시설, 영아 양육 가구, 근로자 설문조사의 3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1) 보육시설 설문조사

영아전담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등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총 7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기관에서의 영아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지원에 따른 시설간의 제 특성의 차이, 요구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지역은 시·도를 대상으로 시설유형별로 임의 배분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통계 생산보다는 시설유형별 차이 규명에 1차적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유형별로 일정수의 표집을 목표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 전화조사팀에 의뢰하여 전화조사로 실시하였다. 구체적 조사문항은 <표 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3-1> 보육시설 설문조사 항목

구분	항목
영아보육시설 유형	영아보육시설 유형 현황, 바람직한 영아보육시설 유형
일반현황	정원, 현원, 취업모 자녀수, 취약보육 실시 여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재정 비율
서비스 수준 평가	공간배치, 교재교구, 위생상태, 건강관리, 급간식, 놀이감 안전관리, 비상사태 대피시설
보육사업지침 준수	총정원 및 반별 정원 준수, 4대 보험 가입, 평가인증 상태, e-보육 사용 여부, 재무회계규칙 회계보고 여부
교사	교사 급여,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급여 차이, 영아교사로 전문성 필요 여부
기본 보조금 관련	기본보조금 수령 여부, 미수령 이유, 부모 홍보 여부, 아동 및 수입 변화, 2007년 교사급여 인상 금액, 교사 및 보육서비스 변화, 부모 부당요구 경험 여부, 자율화 의견

<표 I-3-2> 보육시설조사 완료 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전담	일반	계
전체	102	641	743
국공립	9	103	112
법인	30	110	140
민간개인	53	223	276
가정	10	205	215

조사된 시설수는 총 743개소이다. 시설유형 및 전담여부별로는 <표 1-3-2>와 같다. 전담시설이 102개소, 일반시설이 641개소이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각각 112개소, 140개소이고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각각 276개소, 215개소이다¹⁾.

2) 영아 양육 가구 설문조사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3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도시로 서울과 대전 두 지역이고, 중소도시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청주시 두 지역으로 한정하여 집단 표집하였다. 조사 대상영아는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영아 가구와 일반가구이며, 조사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로 실시되었다. 동사무소로부터 영아가 있는 가구 명단을 협조 받아서 가정으로 접근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보육시설의 협조를 받아서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표 1-3-3> 가구 설문조사 항목

구분	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구 및 부모	가구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족유형, 자녀수
		경제적 특성	생활정도, 가구소득
	부모특성	인구사회보건학적 특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부모 취업 특성	고용형태, 근로시간, 급여, 퇴근시간
자녀 및 양육 일반		특성 및 서비스 이용 현황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이용하는 기관 돌보는 사람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	보육시설 이용	이용형태	시설 유형, 이용이유, 이용기간 이용시간, 특별활동 종류 및 비용
		비용	보육료, 추가 비용, 보육료 감면, 면제 여부 기본보조금 인지, 자율화 시설 이용 의사 비용 추가 부담 가능 정도
		취약보육	보육시설에 희망 사항, 취약보육 의존 가능성

1) 우리나라 전체 시설 분포에 비하여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이 과표집되었고, 일반시설에 비하여 전담시설이 과표집되었음.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통계치보다는 시설유형이나 지원별 차이 규명에 우선적 목적을 둠.

(표 계속)

구분	중분류	소분류	항목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	보육시설 이용	서비스 수준	공간배치 등 14개 항목 평가 최근 서비스 수준 변화 인지 여부 환경변화 인식, 기본보조금 영향에 관한 의견
		만족도	이용시간 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	혈연 및 비혈연인 보육	제공자	돌보는 사람, 인지 경로, 결혼상태 및 자녀 유무, 자격유무
		비용	비용지불 여부, 지불하는 액수
		만족도 및 애로	애로사항, 항목별 만족도
		이용 행태	일수 및 시간, 이용경로, 이용이유
미취업모	이유		미취업이유
기타 총괄 및 의견	일과 가정 양립		막내 출산후 복직여부, 막내 출산후 취업중단 이유,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취약 및 파견보육		취약보육 요구 및 대처방법, 바람직한 영아보육시설 유형, 보육도우미제도 필요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설문내용은 <표 I-3-3>과 같이 가구 및 부모특성, 아동특성, 자녀 양육지원 실태,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행태,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혈연 및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은 서비스 제공자, 비용, 만족도, 이용행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외 미취업모인 경우 미취업 이유, 일과 가정 양립, 취약보육 및 파견보육에 대한 의견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된 총 완료 가구수는 982가구이다. 이중 보육시설 이용 영아 가구가 439가구이고,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가구가 119가구이며 424가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조사되었다.

<표 I-3-4> 가구조사 완료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가구	보육시설 이용 가구	가정내 보육 이용 가구	기타 일반 가구
전체	982	439	119	424
대도시	456	238	75	143
중소도시	526	201	44	281

3) 근로자 설문조사

기업의 육아휴직, 탄력근무, 직장보육 등 양육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500명을 목표로 양육지원 및 이용 실태, 장단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인터넷 사이트 동호회를 이용한 조사와 보육시설의 협조를 받아 부모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에 수거하는 자기식 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구체적 설문내용은 <표 I-3-5>와 같이 부모, 가구 및 아동 특성, 여성근로자의 근로특성, 서비스 이용 및 출산양육제도에 대한 필요성, 만족도 등의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표 I-3-5〉 근로자 설문조사 항목

구분	중분류	항목
가구 및 부모	가구특성	성별, 연령, 자녀수, 학력, 직업, 가구소득
	부모특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아동 특성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이용하는 기관, 돌보는 사람
근로 환경 특성		회사 규모, 고용 및 근무 형태, 근로시간, 급여, 퇴근시간
서비스 이용	보육시설 이용	비용, 선택시 고려사항 바람직한 대리양육방식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이용 여부 및 비용, 베이비시터 이용 경험, 베이비시터 선택기준, 베이비시터 기관, 이용 빈도, 이용이유, 비용, 만족도
출산 양육지원제도		필요성, 시행하는 제도, 이용경험, 만족도, 비이용 이유,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육아휴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취업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관련 의견

조사결과 근로자 514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분포를 보면 5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19인 이하가 34.8%로 가장 많으며, 20~49인 이하가 24.3%, 그리고 300~499인 이하가 15.0%의 분포를 보이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표 1-3-6〉 근로자 설문조사 응답자 사업장 규모 분포

단위: %(명)

구분	19명 이하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합계
비율	34.8	24.3	10.9	7.6	15.0	7.4	100.0
(수)	(179)	(125)	(56)	(39)	(77)	(38)	(514)

라. 자문 및 의견수렴

영아 시설보육,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 영아보육 시설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를 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및 보고서 구성

가.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로 영아, 영아 양육지원, 시설보육, 가정내 보육, 탄력적 근무제 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는 출생 이후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조사 자료에서 기준이 되는 연령은 각기 다르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조사의 연령 산출 시점은 조사 시점인 6월 30일이고, 2004년에 실시한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의 연령 산출 시점은 9월 30일이다. 따라서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육통계 상의 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영아 양육지원은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시설보육 지원, 가정내 보육 지원, 근로자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으로 개인 영육지원은 혈연, 비혈연 등 개인에 의한 지원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셋째, 시설보육과 가정내 보육을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설보육(institutional care), 가정보육(family care), 가정내 보육(in-home care)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보육은 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하고, 가정보육은 주로 가정보육모의 가정에서 보통 5명 정도의 아동을 보육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가정내 보육은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보육을 의미한다.

다. 개념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비혈연, 혈연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보육만 제도화되어 있다. 가정보육은 그 규모가 5명 이상으로 시설보육화 되어 있다.

넷째,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보육도우미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본 보고서에서 취약보육은 정규 시간 이외의 보육을 나타내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여섯째, 탄력적 근무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어서 이에 준거하였다.

나. 보고서 구성 등

본 과제명은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부모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인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총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보육과 육아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아동 발달, 여성 사회활동 증진 및 출산력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고, 선행연구 및 외국 영아 양육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은 시설보육(institutional care)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은 탁아모 등에 의한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제6장은 사업장에서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자녀양육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바람직하

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사회성, 인지 발달 등을 위하여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순서로 보면 직장에서의 양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으나, 이는 주로 취업모에 한정된 관심사이므로 보육서비스를 먼저 다루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설계되었다. 즉, 예산이나 조사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통계치로서의 대표성보다는 부모의 취업, 아동의 연령 등 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나 육구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통계는 기존의 전국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3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먼저 영아 양육 지원이 아동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일환으로 보육서비스가 개별아동의 정서,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끼치는 영향과 여성 취업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로는 영아보육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검토하였으며, 끝으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영아 양육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영아 양육지원의 영향력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하여 상당부분 약화되거나 사회로 전이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 이로 인한 지속적인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성인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주요 정책과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아동발달,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제고 관점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가. 영아발달, 보육경험 및 육아지원

Brooks-Gunn 등(2002)은 NICHD(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0) 연구 대상 중 900명의 유럽계 미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과 가정환경, 양육방법 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보육의 질이 높지 않다면 1세 이전에 집 밖의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린 영아일 때 성인과 애정적이고 일관적인 관계가 부족한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발달적 문제로 고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즘 일하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과 재정, 투자와 그 외 지지적인 자원 등과 같이 부모가 어린 자녀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Shonkoff, 2000).

본 절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일환으로 보육서비스가 개별 아동의 정서,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정책이 아동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들은 상호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논의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보육서비스의 질, 그리고 개별아동의 경험과 이들을 둘러싼 가족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 영아발달과 보육경험

발달학적 관점에서는 출생에서 생후 1년까지를 영아기로 보기도 하나, 대체로 생후 18개월까지를 영아기로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0세부터 만 3세 미만을 영아라고 구분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태어난 후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영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 생애에 걸쳐 이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Caplan & Caplan, 1982; Shore, 1997). 영아기는 발달의 속도가 빠른 시기이며 짧지만 발달적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행동들이 많이 밝혀져 있다(이영, 2000). 따라서 어린 영아의 보육경험은 영유아의 이후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생후 3년 동안 경험한 보육은 영아의 언어적, 인지적 발달과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영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보육의 질은 주로 아동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구조적 특성, 교사의 지속성에 의해 결정된다(Hofferth & Chaplin, 1994).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임과 동시에 영아의 발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보육이나 대리양육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영아를 보육기관에 보내도 괜찮은지, 어떤 보육프로그램이 좋은지, 보육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Belsky는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한 보육이나 종일제 보육 등 장시간의 영아보육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며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Belsky, 1994; 2001), Howes(1990)는 보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10개 지역으로부터 1,4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시작한 NICHD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보육의 질과 보육시간(양)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NICHD, 2001; NICHD, 2002). 보육시간(양)과 보육의 질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지지되고 있다(박성연, 2006).

가) 정서 발달

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기간 동안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부모와의 강제적 분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자간의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Belsky, 1989²⁾). 국내 연구로서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생후 6개월 정도에 시작한 보육시설의 이용경험을 통한 타인 양육의 경험이 영아의 애착형성과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보육교사와의 애착관계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as & Cummings, 1994).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연구(Strange Situation Experiment)를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보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부모 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보육교사에게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육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되었다고 해서 부모와의 근본적인 애착관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 류경(2000)도 영아가 보육시설에 적응하는 데에는 최소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설이용 초기에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

2) 보육시설에 맡겨진 영아의 41%가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반면,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와는 26%만이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였음.

3) 한편 보육시설 이용 후 관찰되는 일시적인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영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반응을 전적으로 보육시설의 이용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함. 즉, 보육시설 이용경험은 주당 평균 이용시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교사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자질, 시설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내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은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형성 노력에 의하여, 또한 교사와 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Howes 등(199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와 애착관계가 안정적인 경우의 영아는 다른 영아들과의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래집단 내에서도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보다 성취 지향적으로 성장한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의 애착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한 찬반의 논의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나) 인지 발달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심도 깊게 연구되었고, 대부분의 결과들이 발달적 자극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학습경험이 인지발달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들이 단순한 아동단계에서의 발달 차원을 넘어서 개인으로서 성장하여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편익을 분석하였다. 정서, 사회성, 인지 발달의 결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간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시기보다 영유아기에 투자하는 것이 편익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출생 첫째가 그 이후보다 교육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보육의 효과성에 대한 초기 종단연구들은 대부분 실험상황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보육 유형,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가정환경 등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있는 추세이다. 잘 알려진 종단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rry Preschool Experiment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학 전 프로그램 경험집단이 5세아의 초등학교 준비, 14세아의 학교 등록률과 학업 성취도, 고등학교 졸업률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Schweinhart & Montie, 2004, OECD,

2006 재인용). 또한 취학 전 연구도 연령 4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과 범죄 등으로 체포된 빈도 등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었다(OECD, 2006).

생후 3개월 된 빈곤계층의 흑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집단의 영유아가 유치원 입학연령이 되어서 비교집단의 아동에 비하여 지능지수가 8.5점 높고, 초등학교 2학년에 5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한 유아의 언어기술 수준이 비교집단의 유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Ramey, 1992).

미국의 Chicago 지역에서 1967년부터 시작된 자녀-부모 지역사회 프로그램 (Child-Parent Centre Programme)⁴⁾을 경험한 아동과 이용경험이 없는 비슷한 환경의 일반아동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 취학 후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Raynolds, 1999).

Ramey와 Campbel(1997)은 미국의 생후 3개월의 저소득층 영아부터 주 5일 전일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Carolina Abecedarian Project에 등록된 아동을 포함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becedarian Project의 양질의 기관형 보육서비스(center-based child care)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만을 지원한 집단, 3세 이후에 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집단, 그리고 유치원 교육만을 제공받은 집단에 비하여 초등학교 취학 후 인지발달 정도가 높았고, 고학년에 진학한 후에는 이 집단의 아동의 수학성과 읽기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sse와 Barnett(2003)도 발달위험에 처한 빈곤계층의 자녀에게 생후 3개월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프로그램 집단과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동일한 계층의 아동을 종단적으로 비교한 결과, 학업과 취업은 물론 흡연, 건강, 사회적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고, 2002년의 달러가치로 보았을 때 보육시설 이용 아동 1명당 소요비용은 약 \$14,000정도였으나 이들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절약된 사회비용은 불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투자 \$1당 \$4의 환원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장래 기대 임금의 4% 상승효과, 백인 아동 고등학교 탈락률의 5% 감소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였다(Currie & Thomas, 1995).

4) 3~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이 밖에도 보육시설의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매개 요인의 작용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출생 직후 아동 1,300명을 표본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NICHD 종단연구에서 보육서비스가 만2세와 만3세아 언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부모가 양육한 아동보다 언어 기술 점수가 높으나 질적 수준이 낮은 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부모가 양육한 아동보다도 낮았다. 미국 4개 주에서 4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The Cost, Quality and Child Outcome Study에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각기 다른 질적 수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추적 조사한 Scarr와 Thompson(1994)의 연구에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나 인지능력이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우수성은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취학 후 학업성적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기관형 보육시설(center-based child care) 이용이 가정보육시설보다 아동의 지능지수가 하락되는 경우가 적었다(Golden, et al., 1988)는 연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가정환경도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12개월 이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아동의 경우 이들이 5~6세가 되었을 때, 독해 및 이해력 측정에서 빈곤계층의 아동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수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수학실력도 빈곤계층의 아동과 비교하여 우수하였다(Caughy et al., 1994). 우리나라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경우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발달적인 차이가 줄어들어 언어능력 및 표현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김명순, 2004). 한편, 저소득층 아동일 경우에는 특별히 질 좋은 보육이 아니더라도 1세 이전에 보육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보육경험을 했을 때 유아기나 아동기에 높은 지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Caughy, Dipietro, & Strobino, 1994). 따라서 가정환경조건이 열악한 경우는 보육이 가정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질 높은 보육의 경우 그 효과는 더 크게 작용하므로 저소득층 영유아의 지적능력 확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은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적능력과

지적활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공격성, 분노, 충동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ates et al., 1994)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보육시설 이용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비하여 이용하는 아동이 사회성이 높고, 반일제보다는 종일제로 이용하는 아동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일반화된다(Thornburg, 1995; Schindler, 1998). 보육시설 최초 이용 시기와 아동의 연령을 통제한 후에 살펴본 Field(1998)의 연구에서도 종일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다소 독단적이기는 하지만 혼자 놀기를 즐기지 않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다 협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호작용 수준이 반일제 아동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전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반일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한 2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에 비하여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덜 공격적이며, 좌절에 대해서도 더 잘 참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1990). 또한 조방제(1996)는 보육시설의 이용경험이 취학 후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취학 전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안나(1990)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도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양질의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윤정, 1995). 양연숙(1995)의 연구에서도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협력성이 증가하였고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낮았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나 교사의 지속성과 일관성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2) 가족을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

보육의 영향은 가정에서의 아동의 경험에 의해 중재되고, 가정에서의 아동의 경험은 보육경험과 함께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보육환경이나 가정환경의

내용은 그를 둘러싼 다른 환경과 상호연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외체계인 사회의 경제구조나 어머니의 직업조건은 간접적으로 아동의 보육경험이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직업조건은 사회경제체제나 자신의 교육 및 사회계층 등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건강,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시간의 융통성, 유급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 등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역할에서의 자신감, 부모자녀관계 및 상호작용, 부부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보육조건이나 보육의 질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나 가구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보육환경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역할 및 양육행동과 상호연계를 갖고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 보육의 질이 우수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빈약한 경우, 일에 지친 부모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장시간의 영아보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가중된다.

그러므로 영유아 보육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고용정책은 물론, 질적 보육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아동의 일상경험과 관련된 가족과정에도 맞추어질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동과 가족 모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보육정책만이 질적 보육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박성연, 2006).

나. 육아 지원과 여성취업 및 출산율

영아보육 지원이 여성취업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양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OECD 국가 등 외국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육아지원과 여성취업

보육 등 영아 양육지원과 여성취업과의 관계는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이 양육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실증적 비교연구 결과들은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밝혀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여성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

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제학적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 부여하여야 하는 가치가 감소됨을 의미하고, 둘째는 여성근로자에게 보육비용이 '세금'과 같은 영향을 가지므로, 이 비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장노동 선호도를 약화시킨다(Meyer. et al., 1999)는 것이다. 기혼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결국, 요구임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과 비교해서 낮은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때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이 주로 임금과 비근로소득의 함수인데 반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Mincer, 1962; Blau et al., 1998) 있다. 즉,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행동은 노동참여, 근로시간, 임금, 직업상 지위 등이다(Gunderson, 1986, Cleveland & Krashinsky, 2003 재인용). Cleveland 등(1996)에 의하면 보육비용이 영유아 부모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공공보육시설이나 재정 지원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시장 보육서비스가 보편화 된 캐나다의 경우 보육비용이 10% 증가되면 고용은 3.9%, 보육서비스 구매는 11%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에서 대안이 있는 경우 외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제 취업 등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보육서비스 미이용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의중임금을 낮추었을 때 기혼여성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접근성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과 보육비지원 혹은 소득지원 등의 현금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결정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가를 단위로 한 연구들을 보면, Immervoll & Harber(2005)는 OECD 국가들의 3세 미만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세 미만아의 보육등록률을 이용한 단순회귀분석에서 영아 보육 등록률은 출산율에 대하여 16%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둘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취업을 증가하면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또한 여성취업이 증가하면 영아 보육이용 영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연구에서도 공보육이 출산력과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Del Boca, 2003).

Meyers와 Gornick(2003)은 Esping-Anders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⁵⁾을 적용

5) Esping-Anderson(2002)은 '탈 상품화'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 가구 구성권 개념 미포함(Orloff) 등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을 수용하여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고 측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모부성 휴가를 제시하였으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3개 지표의

하여 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⁶⁾ 사회적 지원이 미약한 나라와 충분한 국가 간에 아동이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표 II-1-1 참조).

〈표 II-1-1〉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

구분	ECEC의 사회보급도 (공급/비용에서의 가용성)		아동으로 인한 모성 취업에의 불이익(penalty) ¹⁾	
	0~2세	3~5세	모성취업 감소 (0~2세 자녀)	모성취업 감소 (3~5세 자녀)
사회민주주의 국가				
덴마크	고/고	고/고	0%	0%
핀란드	중/고	중/고	0%	0%
노르웨이	중/고	중/고	-29%	-27%
스웨덴	고/고	고/고	0%	0%
보수주의 국가				
벨기에	중/고	고/고	0%	0%
프랑스	중/고	고/고	0%	0%
독일	저/저	중/중	-25%	-117%
이탈리아	저/저	고/고	na	na
룩셈부르크	저/저	고/고	0%	0%
네덜란드	저/저	고/고	-25%	-21%
자유주의 국가				
호주	저/저	중/중	-35%	-15%
캐나다	저/저	중/중	-15%	-10%
영국	저/저	중/중	-45%	-31%
미국	저/저	중/중	-22%	-15%

주: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Gomick and Meyers(2003).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모든 국가에서는 아동의 존재가 어머니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수주의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⁷⁾, 북유럽

이질성 등의 비판은 여전히 있음.

6)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7)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됨.

사회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노르웨이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달리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취업 불이익이 크게 나타났다. Sainsbury(1999)는⁸⁾ 복지국가 유형별로 보육서비스나 그 영향이 다른 것에 대하여, 특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 중 노르웨이가 다른 북유럽 국가와 달리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젠더 관점에서 보면 Esping-Anderson 복지국가 유형이 노동의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하였고 성이나 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보육 등 양육지원이 여성 취업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연구는 아동수에 따른 취업 유형과 임금의 변화이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아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수가 많은 가정의 여성취업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낮다. 반면 남성에게는 이러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취업자에게는 아동 한 명 당 6%의 시간당 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acobsen, 2002).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취업과 퇴출이 용이한 서비스나 판매업종에 시간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육아휴직이 여성의 근로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휴가에 소득 보완 장치가 부가되면 이러한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일본, 미국, 영국의 3개 국가 연구에서도 휴가가 직장으로의 복귀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기 휴가가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Meyer. et al., 1999). 프랑스가 휴직 후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정책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2) 출산수준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Gauthier 등(2001), Sleetbos(2003), D'Addio and Mirad'Ercole(2005) 같은 연구자들이 자녀양육비용, 보육시설 존재 유무 등과 같은 요인

8) Sainsbury(1999)는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 권리의 단위가 가정인지 개인인지, 사회보장의 수급권이 전통적 성별분업에 기초하는지,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범위, 돌봄 노동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접근권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남성부양자체제, 성역할분리체제, 성역할공유체제로 분류하고, 이러한 페미니스트적 북가국가론 분류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제도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들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Guathier 등(2001)의 문헌 연구 검토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 국가를 분석했을 때는 일치되지 않은 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육제도의 유무가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공보육이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과 공보육시설의 유무가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이 긍정적이나, 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보육비용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과 출산력의 관계를 분석한 Blau와 Robins(1989) 연구 등을 보면 자녀양육비용이 전업주부의 출산율은 낮추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율은 낮추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양육비용의 활용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Sleeboos(2003)는 Gauthier(2001) 등의 문헌 연구 검토를 토대로 연구방법과 육아 관련 정책의 범주 차이로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나 대체로 약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에 관해서는 상호 부적 관계를 보이던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 이후 출산수준이 높은 국가가 여성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Sleeboos(2003)는 OECD 국가들의 1998년 출산율과 1995~2000년의 보육 등록률을 이용하여 3세미만의 영아 보육 이용 가능성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0.01로 산출하고 설명력을 43%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8년 자료에서는 현금 급여는 출산수준에 대하여 7%의 설명력을,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정책은 27%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출산수준 제고 정책으로 영아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D'Addio & Mira d'Ercole(2005)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다. Blau와 Robins(1998, 1989)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반대로 육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산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공보육제도가 중요하여 공보육체계를 갖춘 국가의 출산력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다(Castle, 2003). 이탈리아 연구에서도 공보육이 출산력과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Del Boca, 2003). 둘째,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경우 육아비용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Ermish, 1988,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재인용),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조세감면이 가족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tington et al., 1990; Whittington et al., 1992,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프랑스는 1994년 개혁이 둘째아 출산을 11% 줄이고 셋째아 출산을 2% 감소시켜 총 5%의 출산 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aroque & Salanie, 2004,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셋째, 육아휴가 역시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휴가의 연장이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Rosen, 2004,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특히 D'Addio & Mira d'Ercole(2005)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 가지 정책요인을 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출산율이 2.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숙희 등(2006)이 OECD 20개국 자료를 분석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 일자리 우선권, 파트타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등으로 측정된 양성평등 환경조성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자녀 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들 요인을 개선할 경우 출산 수준이 1.5까지 증가가 가능한 것이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맞벌이 부부의 베이비시터, 친인척 보호, 공식적 영유아보호시설의 세 유형의 보육방법 접근성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Lehrer와 Kawasaki(1985)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율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베이비시터의 활용 가능성과 비교하여 공식적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2. 영아 양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육아지원 및 보육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연구, 시설보육 중심의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 가정내 서비스 관련 연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가.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정책 관련 연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 시행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의 제시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고, 1990년대 후반에 포괄적인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모성보호 관련 초기 연구로 박정한(1994)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실시 및 이용 비율을 조사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성민우회(1994)에서는 육아휴직과 직장보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후 개선방안으로 국가와 사회의 재정 지원과 행정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장동환(1996)은 모성보호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하였고, 김재구와 김태홍(1999)은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2001년부터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늘어난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 실시된 연구도 그 이전 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제도의 실시 현황과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장지연 등(2002)은 2001년 11월 법 개정 후 시행 1년여가 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체가 체감하는 가장 큰 영향은 업무대체와 인력대체에 대한 큰 부담감이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업장 직장보육시설은 규제나 법령에 의한 강압적인 외부 효과보다는 사업체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권고하였다. 장지연 등은 2004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의 임금부담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장지연 외, 2004). 또한 김태홍과 김난주(2003)도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제도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제시하였다. 김승권 등(2003)은 출산휴가는 대체인력 확보와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가 주요한 정착화 방안이 되고, 육아휴직에서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대체인력 확보와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원직복직 보장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모성보호에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가족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김태홍과 고인아(2001)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각국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가정과 직장 영역의 상충 현황, 이것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도의 도입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대안을 휴가제도, 근무제도, 육아 및 노인보호 지원제도, 가족친화적 서비스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유계숙(2006)은 가족친화적 기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각종 제도의 운용은 인지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인지도가 높은 제도가 주로 시행되고 탄력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인지도가 낮은 제도의 시행은 저조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양육친화성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출산·양육친화성은 5점 기준에 대기업 3.67점, 중소기업 1.76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당부분이 2007년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나. 보육 및 교육 제도 관련 연구

1) 영아보육 사업 및 정책 관련 연구

보육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영아보육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극히 일부이다. 최근에 실시된 일부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희(2001)는 영아보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영아보육의 확충 및 올바른 영아반 운영, 영아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다양한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영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강화를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김영희는 영아가 아동 발달 특성상 지적·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애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진 영아 보육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아나 걸음마기 영아 보육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이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도(Whitebook, 1995; 한미라, 1995 재인용) 같은 맥락이다.

서문희와 이상현(2002a)은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영아전담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보육사업을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아동 모의 취업에 의한 비용 편익의 효율성은 높고 이용 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지만 양적 확충의 충분성이나 지역적 균형 배치 등이 부족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지역 및 시설유형별 형평성은 낮은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영아보육의 편익 비용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금 대비 취업모에 의한 생산성 규모의 비율이 전체 보육사업이 약 6배라면 영아보육 사업은 약 10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영아보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육에 소요되는 총비용 대비 취업모의 생산성으로 보는 경

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용-편익은 전체 보육 1.72배, 영아보육 1.8배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영아보육 서비스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시설 및 가정보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령 통합시설보다는 영아전담시설 위주의 보육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서문희, 2000; 김영희, 2001). 김승권 등(2000)도 잠재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욕구 조사에서도 영아전담반 42.6%, 영유아통합시설의 영아전담반 36.4%가 이용을 기대하고 있고, 반구성도 연령혼합반보다는 동일연령반에서 보육을 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동일한 관점에서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보육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소규모 가정보육모 제도화 가능성 등이 모색되었다(서문희 외, 2002). 이영 등(2006)은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심층 면접 방법으로 연구하여 소규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국공립보육시설 역할 및 기능 정립과 관련해서도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잘 할 수 없는 영아보육 등 특수한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정원으로 책정된 영아반 운영을 인건비 지원의 필수 조건으로 하자는 안이 제기된 바 있고(서문희 외, 2001),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근로자 지원제도, 공보육체계 확립, 아동가족급여제도의 실시 등 종합적 정책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서문희 외, 2004).

2) 영아보육 이용 관련 연구

영아보육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수요 추정, 이용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와 이용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수요 추정

먼저 수요 추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경희와 김유경(1997)은 보육수요를 객관적 관점⁹⁾ 및 보육 희망에 따른 주관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모든 아동, 취업모 아동, 저소득층 아동에 적용하여 보육수요로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세 별 및 각 시·도별로 보육수요 대비 아동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영아보육 공급에 대하여 2세 미만아는 최소한인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을 희망하는 주관적 기준

9) 일반적으로 보육수요 관점은 보편적 보육관점, 대리보육관점, 그리고 기본보육관점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이석무, 1994).

보육수요를, 그리고 2세아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보육하는 기본적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 영아보육 공급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변용찬(1998)은 1997년도 출산력 조사 자료를 기초로 보육수요 규모를 추정하여 대리적 보육수요는 전체아동의 0세 19.4%, 1세 20.4%, 2세 28.8%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승권(2000)은 2001년의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희망률 0세 53.0%, 1세 54.4%, 2세아 51.6%를 적용하여 각 세의 보육수요를 추계하고 추가 영아 보육수요가 산출하였는데, 이는 총 92만 2,54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당시 보육시설 이용 영아 11만 9,600명에 비하여 8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자녀를 앞으로 또는 계속하여 보육시설에 보내겠느냐는 단순한 질문에 근거하고 있어 잠재수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문희 등(2002, 2004)은 보육수요 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단·중·장기로 추계하였다. 2002년 연구 결과는 중기 수요율을 기준으로 총 영아보육 수요율을 25.0%로 추정하였다. 연령별로는 0세아 5.8%, 만 1세아 17.0%, 만 2세아 48.8%로 충족률은 약 40%로 25만의 추가수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한 수요율 추계는 2002년에 비하여 7.4%가 증가한 32.4%로 추정하였다. 연령별로는 각각 0세아 10.1%, 만1세아 25.4%, 만2세아 57.7%로 충족률은 약 47%로 약 25만의 추가수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전국 및 시·도 단위로 보육수요를 제시하고 있어서 시·군·구 단위에서 보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보육서비스 이용 및 선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2002년 및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2004년 실태조사로 파악되었고, 노동부(2005)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공통점은 특히 0세아는 시설보다 개인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육 제공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보면 0세인 영영아기는 조부모라는 응답이 취업모 72.4%, 미취업모 67.1%로 취업모가 5.3% 포인트가 높았고, 친인척은 취업모 11.2%, 미취업모 12.6%로 미취업모가 1.4% 포인트 높았다. 이외에는 7% 미만의 비율로 약

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1세아 역시 조부모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취업모 69.9%, 미취업모 64.2%로 취업모가 5.7% 포인트 높았으며, 친인척은 각각 11.5%, 13.5%로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양육자는 놀이방으로 취업모 2.6%, 미취업모 1.8%이다. 또한 만2세아도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서문희 외, 2005).

다) 이용 결정요인

한편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서문희, 2001) 결과 0~2세아는 모가 취업중이고 가정에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그리고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보육시설 이용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며, 모의 학력, 모의 결혼상태 및 거주 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사한 결과로, 2004년도 조사자료 분석(서문희 외, 2006)에서도 영아로 한정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아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는 부모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 나머지 보육시설 환경, 보육인력, 교육내용,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역 문항의 만족도는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으로 높다. 그러나 유아 부모 만족도와 비교하면 보육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유아에 비하여 대체로 낮다(서문희·이상현, 2002). 김승권(2000)의 영아보육 만족도 연구에서는 영아보육시설의 시설설비,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부모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조사되었다.

3) 가정내보육 관련 연구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가정보육모, 베이비시터, 그리고 비영리 가정보육도우미 파견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정보육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외국의 가정보육제도를 검토하고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서문희 외, 2002). 이옥 등(2004)은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아

보육 수요자인 0세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영아보육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 보육교사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 사업 실시 모형을 제시하였다.

영리 부분에서의 파견 서비스인 베이비시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벤처사업으로 기관 중심의 보육 틈새시장을 겨냥한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체가 등장하자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문희 외, 2002)에서 이러한 베이비시터회사 설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베이비시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베이비시터 관련 연구를 다시 추진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서문희 외, 2007).

한편 최근에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등의 이름으로 비영리 파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성지미 등(2005)은 노동부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영아보육을 설정하고 영아보육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서비스제공자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탁아모형, 영아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형, 시설형태의 영아보육센터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정민자 등(2006)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업 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경영과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등록 대상범위 설정, 등록기준, 아이돌보미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 기준안, 이용요금 기준과 보험 등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문희 등(2007)은 한국 공동모금회가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지원한 보육도우미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3. OECD 국가의 영아 양육지원

OECD(1999)는 일찍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유형을 자유방임적 접근방식(laissez-faire approach), 공공서비스 제공방식(public provision approach), 책임공유 접근방식(shared responsibility approach)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⁰⁾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국가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보육시설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주로 시설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한다. 한편,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이나 보육은 가정의 책임이며 각 가정이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와 같이 지원 대상을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공급 역시 시장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그 중간의 정책들로서 국가와 가정의 책임을 조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보육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비영리 공동단체의 역할이 크다.

영아보육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적 분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OECD 국가들은 영아에 대하여서는 시설 및 개인에 의한 대리보호와 더불어 부모의 육아휴직에 의한 보호 기회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출생 후 1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정책 강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기관 서비스 이용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가. 최근 양육지원 정책 강화의 배경

1) 서비스경제의 증가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임금시장으로의 유입이 증대되었다. 산업국가들이 서비스 및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 가면서 성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GDP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30%, 덴마크, 스웨덴은 40%이다. 최근 G7

10) 이러한 분류체계는 대체로 Esping-Anders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기초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영유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국가의 2003년도 여성취업률은 66.4%로 10년간 8%가 성장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취업 증가와 더불어 기회 평등 관점에서 일과 모성의 조화, 일에서의 기회 균등, 자녀양육과 가사의 평등한 분담의 세 가지가 주요과제가 된다. 각 국가는 일과 모성의 조화를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 부모휴가와 보육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인구학적 요인: 출산력 하락과 이민 증가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GDP 성장이 둔화되고, 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높은 사회복지비용 지출로 국가의 정당성이 도전받는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공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하다는 결과가 많다. 특히 공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cker(2005)는 교육과 고용 안전성 추구를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육비도 직접 비용은 물론, 어머니의 경력 단절과 같은 간접비용 역시 자녀 출산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가족수당, 가족친화적 근로정책, 부모휴가, 보육서비스, 보육 부모보조금 등으로 국민에게 일과 가정 조화가 가능하다는 확산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부모휴가가 끝난 후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조기교육과 포괄적 방과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유럽 각국의 보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또 하나의 인구학적 요인은 이민이다. 유럽과 미국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교육기관의 50%의 아동이 이민자 자녀이다. 이들은 부모들의 취업 어려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위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25%의 이민아동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채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영유아 보호와 교육 확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정책은 아동발달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불이익을 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민으로 인한 도시 빈민의 증가로 이들 아동에 대한 정책이 과제가 된다. 조사된 24개 OECD 국가들 중 17개 국가에서 1995~2005년간 아동빈곤율이 증가하였다. 둘째는

공공의 선으로서의 조기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이다. 보육서비스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아동이 인지발달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제시하여 지적능력, 지적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발달 장애요인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대부분 3세 미만 영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재정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와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아발달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육적 목표와 가족지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와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영아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원

3세 미만 영아의 서비스 기관 등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이들 국가는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정책, 공보육에 기초한 ECEC 정책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적 재정 지원이 제한적인 나라에서는 일하는 부모 대부분이 접근성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사립 형태의 시설·기관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보육에 의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부족한 육아휴직과 제한된 공적투자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모들이 6주정도 밖에 안 되는 어린 영아를 맡길 곳을 찾아 고생한다(Capizzano, 2000a, 2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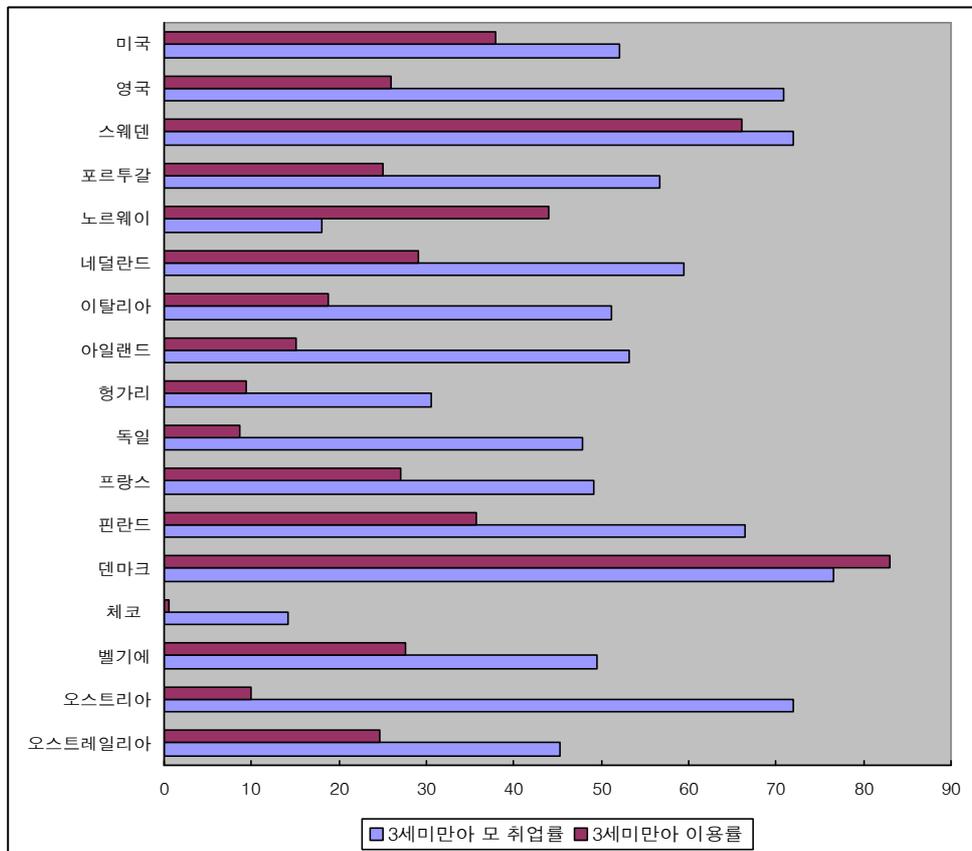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 ECEC 정책은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보편적인 지원으로 사립형태의 시설·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육서비스 이용

영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지만 주된 시설유형은 가정보육, 시설보육, 1세부터 6세까지의 통합된 시설이다. 보다 전문적인 시설들은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가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보다 전문적인 시설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중등교육을 마친 모의 경우 21%가 3세 미만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데, 대학을 졸업한 모의 경우 41%가 3세 미만의 자녀를 시설보육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보육이나 가족, 친척 등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선호는 종종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도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기도 하다. 일을 찾아야 하는 이민자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1]은 OECD 국가들의 3세 미만아의 모 취업률과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낸다.



[그림 II-3-1] 3세 미만아의 모 취업률과 ECEC 이용률

많은 국가들이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영아의 이용률보다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많은 비공식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보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스웨덴의 효과적인 육아휴직 때문에 18개월 동안 기관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수도 있다.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가장 잘 발달하였다. 이 국가들은 공보육에 기반을 둔 ECEC 역사를 가졌으며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종일제로 이루어지며 부모들은 수입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한다. 이 국가들의 서비스는 한 부처의 소관으로 통합되었으며, 대부분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보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단, 덴마크는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지자체에 의한 가정보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30개월 미만 영아의 1/3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가정보육과 보육시설,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다. 프랑스는 2세, 벨기에는 2.5세부터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다. 유치원에 등록하는 그 연령의 아이들은 [그림 II-3-2]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아이들도 포함된다면, 프랑스의 이용률은 스웨덴과 비슷해질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영아와 걸음마기 아이들에 대한 공적 자금을 기반을 둔 제공을 의미있게 확대하였다.

모의 취업률이 등록보육 이용률을 앞서는 나라 대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비공식 보육이나 비등록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구조사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등록 보육보다 비공식 또는 비등록 보육 이용이 더 높다. 아일랜드의 경우, 집에서 6세 미만 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할 경우 지방 위생국(Local Health Board)에 보고해야 하고 규제를 받게 된다. 비공식·비등록 보육은 보통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건강, 안전, 프로그램의 규제 등을 피해간다(OECD, 2003). 호주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자유경제국가들에서는 비등록 보육의 대부분이 이러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2) 보육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

3세미만 영아의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부모와 정부에서 분담한다. 정부는 지방 당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¹¹⁾, 현금혜택¹²⁾이나 세금 공제¹³⁾와 같이 간접적

11)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해당함.

12)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이 해당함.

13) 벨기에, 영국이 해당함.

으로 지원하기도 하며, 기업주가 부담¹⁴⁾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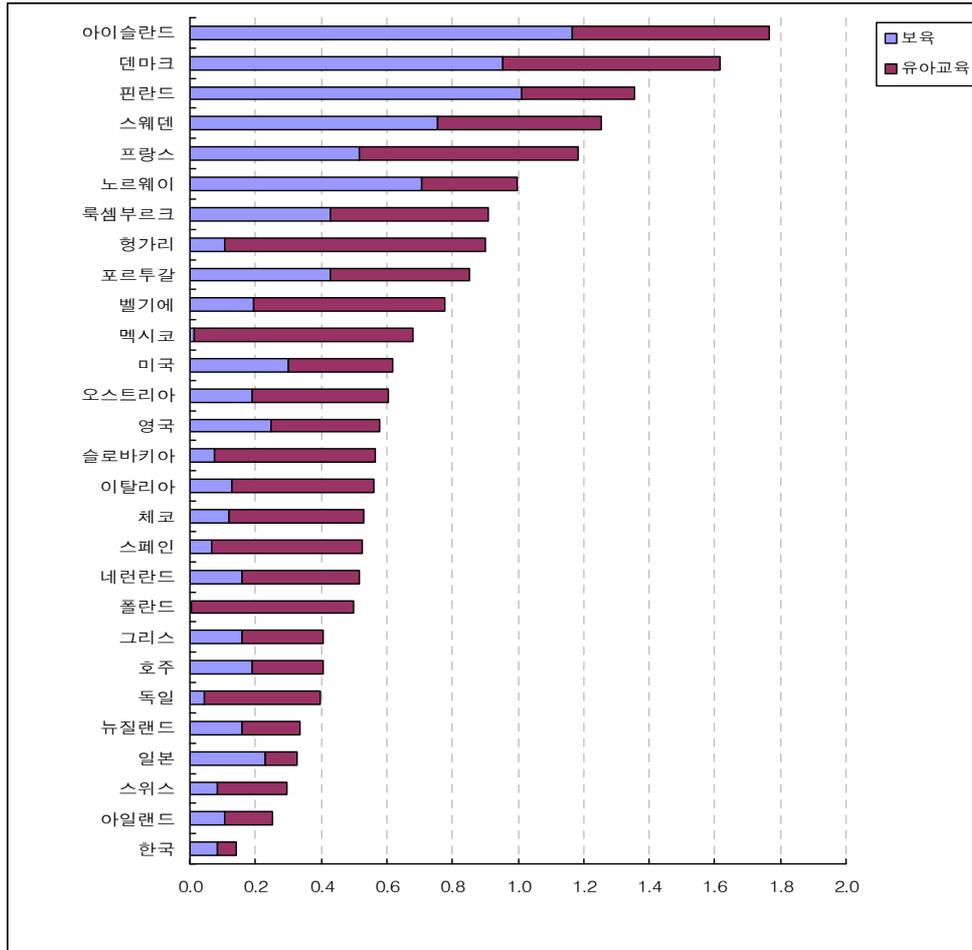
OECD 20여개국 중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3국가에서는 영아의 첫 1년부터 질 높은 ECEC를 제공하여 연령이 높은 아이들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을 실행하고 있다.

3세 미만 영아의 서비스 이용 비용은 평균 25~30%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9~15% 정도만 부모가 부담하지만,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는 부모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하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영아나 걸음마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벨기에의 경우 2세 반부터, 네덜란드의 경우 4세부터 무상의 보편주의 형태의 보육을 실시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보통 의무교육 전까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유지한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이나 가족의 유형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한다(OECD, 2006).

3세 미만 영아의 공식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은 영유아 1인당 지출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다. 남유럽은 보육에 대한 투자가 낮는데, 이는 어린 영아의 경우 비공식 보육시설 이용이 우세하고 3세가 되어서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1인당 정부 지출액은 사립 형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더 낮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가계 지출이 학령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지출에 큰 역할을 한다(OECD, 2007). 아래 [그림 II-3-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비용이 OECD 평균 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3세 미만 영아 보육에 대한 개념이 질 추구를 포함하여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후 첫 3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에 의해(Shore, 1997; Shonkoff & Phillips, 2000) 영아 보육의 발달적, 교육적 역할에 대한 초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는 등록보육을 아동 발달, 양성평등, 사회통합, 가족부양과 같은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1998년 보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개인의 요구’에서 ‘공공의 관심으로서의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로 전환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종일제보육, 시간제보육, 일시적 보육 등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왔다.

14)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이 해당함.



자료: OECD(2003). URL: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그림 11-3-2] 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비용(2003)

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영유아 보육과 보호(ECEC) 정책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아이와 모의 건강, 영아 사망률, 모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다(Catterti & Markowicz, 2004; Tanaka, 2005).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기본 방향은 ‘최소한 1세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이다. 이를 위해 12주에서 28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이후 1년에서 4

년까지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OECD 유럽국가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더 길고 휴가 중 대체 임금 지원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서의 복귀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휴직은 출생 후 중요한 시기동안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집에서 그들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선택을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에 아버지의 동참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육아휴직에 아버지도 동참하면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공정한 분담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주의경제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도 짧고 무급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대체로 출산 후 1년 이후에는 공적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기회는 3세 이상 유아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공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덴마크와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급여의 80~100%에 해당하는 대체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의 취업도 보장한다. 육아휴직 이후에는 공공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확실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기관서비스에 맡겨지는 영아는 거의 없다(나정 외, 2004).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영국은 출산은 유급으로, 육아는 무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법적으로 무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직장으로서의 복귀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재원 지원이 미미하다.

체코와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은 자녀가 3~4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 영아 양육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출산휴가 기간이 28주로 출산휴가 기간이 가장 길며 육아휴직도 자녀가 4세까지로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에 대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다.

〈표 II-3-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국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대체임금비율 ¹⁾	육아휴직	수당지급	추가휴가
호주	- ²⁾	-	12개월 (family-based)	무급	
오스트리아	16주	16주 동안 100%	30개월, 부부 함께 사용 시 36개월	매달 426유로, 저소득층 181 유로 추가	
벨기에	15주	첫 달은 82%, 이후는 75%	4세 전에 3개월 (시간제로 6개월)	+/- 매달 500유로	아버지 10일 휴가
캐나다	15주	55% (상한선)	35주 (자격에 따라 50주)	55%, 저소득층은 65%까지	
체코	28주	69%	4세까지	고정 비율	
덴마크	18주	대부분 100% (또는 실업 수당)	32주 (family-based)	100% 또는 실업수당	아버지 2주 휴가 (수입의 100%), 부모 각각에 13주(또는 26주) 휴가(실업 수당의 60%)
핀란드	18주	66%	6개월	66%	아버지 3주 휴가
프랑스	16주	84% (상한선)	3세까지	매달 485 유로, 수입에 따라 다름	아버지 14일 휴가
독일	15주	100%	3세	첫 6개월은 매달 300유로, 다음 1.5년은 수입별 차등, 3년째는 무급	
헝가리	24주	2년 동안은 70%, 이후는 고정 비율	36개월	보험 미가입자: 23200 HUF(2004) 보험 가입자: 24주 동안 임금의 70%, 3세까지(2004)	
아일랜드	15주	첫 14주 동안은 최고 70% (주당 232유로), 4주는 무급	6.5개월	무급	
멕시코	12주	100%	없음	-	
이탈리아	21주	80% (고용주 부담)	10개월	30% (고용주 부담)	

(표 계속)

국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대체임금비율 ¹⁾	육아휴직	수당지급	추가휴가
한국	3개월	100%	출산 휴가를 포함하여 1년	매달 500달러	
네덜란드	16주	100% (상한선)	부모 각각에 6개월간 무급 육아 휴직 부여, 그러나, 최소한 주당 20시간을 일 해야 함	무급	2~18주의 child care leave, 매달 430유로
노르웨이	육아휴직에 포함됨	-	43주 또는 53주(30일은 아버지가 사용)	53주 동안 80% 또는 42주 동안 100%(상한선)	
포르투갈	임금 100%의 16주 또는 80%의 20주	100% 또는 80%	3개월에서 4세까지	무급	모와 함께 5일 아버지 휴가 또는 모 대신 100% 지급되는 120일 휴가
스웨덴	육아휴직만 있음	80%	각각의 부모에게 240일	390일(80%), 90일은 매일 60SEK	아버지 휴가 10일(최고 80%), 아버지 30일의 육아휴직
영국	26주 동일한 고용주에게 26주 동안 고용되었다면 28주 추가	6주 동안은 90%, 20주 동안은 GBP 100 또는 26주 동안 임금의 90%	13주(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18주까지)	무급	아버지 휴가 1-2주(GBP 100 또는 임금의 90%)
미국	- ³⁾	-	50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에서 12주	무급, 직장 보장 ⁴⁾	

주: 1)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당은 사회보험이나 사회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달되며,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제공. 몇몇 국가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고용인이 직접 기부를 하기도 함.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육아휴직의 전체 비용이 GDP의 1%를 초과하지 않음(Kammerman, 2000).

2) 단지 17~38%의 어머니들이 직장의 동의 하에 출산휴가 받음.

3) 몇몇 주가 직장의 동의 하에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함. 5개 주는 유급 장애인 휴직을 제공 하며, 1977년 이후부터 임신과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4) 1993년에 가족과 질병휴가법에 의해 제공되었음. 임신기간이나 출산 시 또는 아플 때, 고용 주들은 고용인들이 가족 휴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자료: OECD(2006). *Start Strong II*.

또한, 그동안은 어머니 혼자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반면에, 최근에는 아버지를 자녀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를 위한 추가 휴가를 아버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있고, 일본은 출산휴가 14주 후 1년간 임금의 40% 지급한다.¹⁵⁾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출산율과의 관련성

일과 가정 병행을 위한 정책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핀란드, 독일, 일본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핀란드는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1970년대 1.5명이던 출산율이 2004년 1.8명으로 증가하여 EU 25개국 평균 출산율 1.5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여성인구 중 취업여성 비율로 EU 평균 55.8%인데 비해 65.6%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낸다. 이렇듯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한 핀란드의 비결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촉진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장려 보육지원정책으로 출산전·후 지원은 물론 출산후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3세까지 재택 육아를 하거나 또는 사설 보육기관에서 육아하는 3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자녀수당(Kindergeld)을 많이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의 1/4을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정부는 특히 3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국가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일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5년 1월 1일 3세 이하의 아동 보육을 위한 “보육 확대 법안”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방법은 2010년까지 23만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도 진행하였다. 2006년 2월부터는 연방정부에서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지거나 한 부모 가족일 경우 보육비의 2/3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15) URL: <http://childpolicyintl.org/issuebrief/issuebrief5.htm>

〈표 II-3-2〉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

국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합계출산율 (기준)	1.32 (2006)	1.13 (2006)	1.25 (2005)	2.05 (2005)	2.01 (2006)	1.36 (2004)	1.33 (2004)	1.75 (2004)	1.17 (2003)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english>.

200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2로 사상 최저치였던 2005년 1.26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출생자 수는 1,092,662명으로 전년대비 약 3만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출산율 증가 요인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 예로, 일본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자녀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07년 4월부터는 3세 미만 영아 자녀의 지급액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3세 미만 아동 중 첫째아와 둘째아에게는 5,000엔이 지급되었으나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10,000엔을 지급받게 되었다.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첫째와 둘째는 5,000엔, 셋째 이상은 10,000엔이며 3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000엔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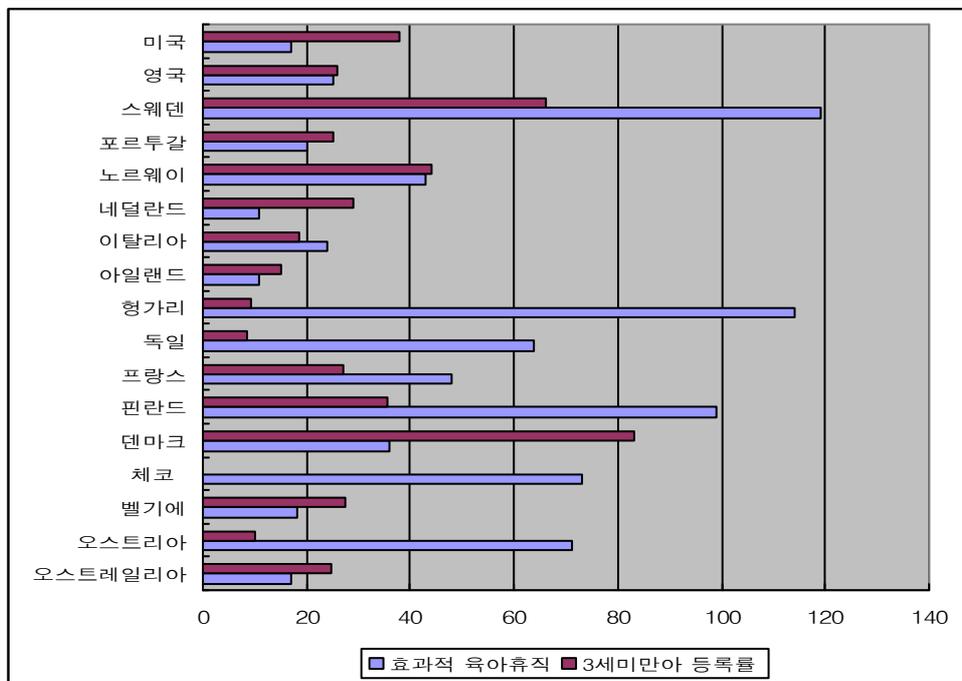
또한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반일근무제 도입 등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 육아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를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가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약 30만1천명이다. 단기간 근무는 ① 매일 4시간 5일 근무 ② 5시간 5일 근무 ③ 8시간 이틀과 4시간 하루 근무 ④ 8시간 사흘 근무 등 4가지 근무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단축근무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 임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반일근무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단축근무를 늘려가고 있지만, 반일근무를 허용하는 곳은 적은 편이다.

일본의 인사원이 2006년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4,6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 10월 기준으로 단축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43.4%이지만, 하루 절반 미만으로 근무를 줄여주는 기업은 4.2%에 그쳤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은 3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단축 또는 탄력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했다. 현재 민간 기업에선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아이비엠(IBM)과 소니 등은 육아 재택근무제를 운

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에 한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데 닛산자동차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3)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에 의한 국가 분류

[그림 III-3-3]은 각국의 영아에 대한 효과적 육아휴직과 3세 미만아의 보육 등록률 자료로, 육아휴직기간과 수당 수준을 이용하여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각국의 영아보육정책의 비교가 수월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두 가지 정책 모두 1, 2위를 차지한다. 덴마크는 기관 이용은 높으나 육아휴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편 헝가리는 육아휴직은 잘 되어 있으나 기관 이용은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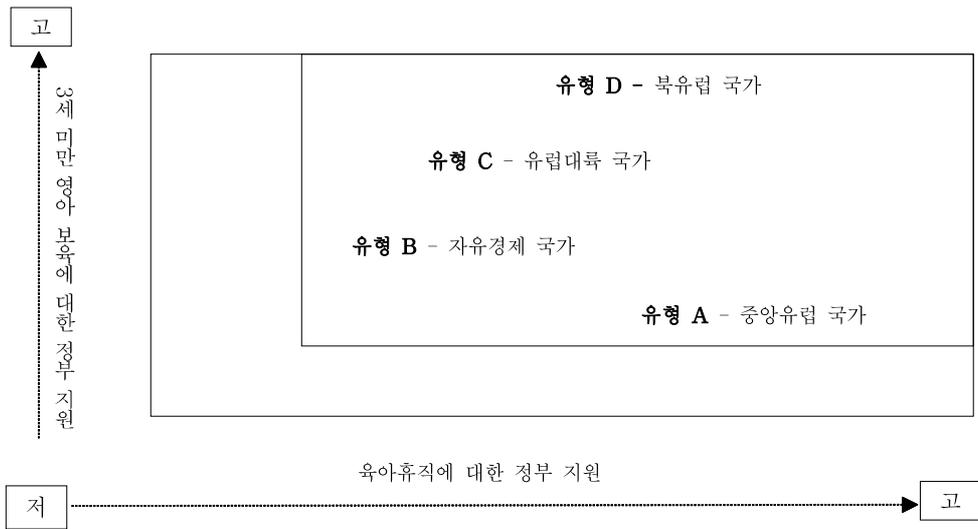
주: 효과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둔 지수임
 자료: OECD(2006). Start Strong II. 재구성

[그림 II-3-3] OECD 각국의 육아휴직 및 영아 보육기관 등록률

[그림 III-3-4]는 이러한 아동보육과 육아휴직에 따라 Bennett이 여러 국가들을 분류한 영아에 대한 정책유형이다.

유형A는 육아휴직은 잘 되어 있으나 영아 보육 지원은 미약한 국가들이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로, 3세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이 매우 중요하며,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유형B는 육아휴직제도 지원은 취약하고 영아 보육 지원은 중하 정도인 국가들이다. 육아휴직과 그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 한국, 영국을 제외한 자유경제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미국, 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같은 국가들이다. 이런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3세 미만 영아의 접근성은 약하며 비공식적 보육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위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 이후 급속도로 상황이 개선되어 유럽대륙국가들의 정책접근 유형과 유사해졌다.



자료: Bennett(2002), OECD Education Policy Analysis, Updated 2005, OECD(2006). Start StrongII. 재인용.

[그림 II-3-4]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정책 접근 유형

유형C는 육아휴직과 3세 미만 보육에 대한 지원이 보통 정도인 국가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은 가정보육 또는 기관 중심의 교육·보육기관에 중간 정도의 지원을 하며 여전히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으로 본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일 년 정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며 보육에 대한 공적재정 지원이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공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불충분하다. 보육 지원은 일차적으로 일하는 부모나 불리한 상황의 부모에게 지원된다. 벨기에나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D는 육아휴직기간도 길고 수당도 높으며 공적기관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이에 해당되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보육, 교육기관은 비영리 공공기관이며 가정보육도 국가 보육체계의 하나로 제도화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등록보육 이용과 육아휴직은 캐나다와 영국을 제외한 자유경제 국가에서 가장 미흡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아이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살핀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자녀양육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증가하여야 한다. 게다가 전통적인 비공식적 보육은 점차 유지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등과 같이 젊은 부모를 돕던 비공식 보육 인력이 여성의 취업 증가와 인식 변화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Ireland Background Report and Country Note, 2004).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은 비공식적 보육보다는 더 나은 질의 시설보육을 원한다. 가정보육이 충분해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 형태의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한다(Norway, 2005).

확실한 것은 국가들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3세 미만 영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변화된 국가들 중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은 육아휴직이 소개되거나 개선되었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가족중심의 업무 조성이 증가하였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ECEC의 공적 기반과 사적기반과의 협력이 소개되었고, 호주, 핀란드,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들은 초기 아동기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라. 현금 및 조세 지원

현금과 조세를 통한 자녀 양육 지원은 반드시 영아에 해당되는 지원은 아니지만

영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몇 나라의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는 아동수당이다. 수당은 그 성격이 보육 비용 지원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수당은 비기여, 보편적(demogrant)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한 인구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OECD 30개국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유럽의 15개국¹⁶⁾이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2개 국가는 고용과 연계시키고 있으며,¹⁷⁾ 13개 국가는 미도입 상태¹⁸⁾이다. 세계적으로는 조사된 175개 국가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25개국이다. 피고용자에만 지급하는 근로복지제도 도입국은 27개국이고, 이중 2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된다.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현금이전지출을 수반하는 재정지출 이외에 조세정책이 있다. 조세정책으로는 세율인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같은 정액세 감면 등이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의 체감에 대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아동수당이나 부가급여와 같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3-3>은 OECD 일부 국가들의 양육지원을 비교한 것이다.

-
- 16)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임.
- 17) 스위스는 연방 프로그램은 한 명이상의 아동을 부양하는 농업근로자나 소규모 자영농(가족수당) 또는 배우자(가사수당)에게, 주 프로그램은 비농업 취업자 중 1자녀 이상 부양자이며, 주 정부(칸톤)에 따라서는 농부를 포함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함. 고용자는 통상 아동수당 기금에 가입하고, 칸톤에 따라 고용자가 지급을 보증하며,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있음. 이탈리아는 취업자 또는 사회보험·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는 자 중 1명 이상의 아동 혹은 부양 가족이 있는 자에 지급함. 연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별도 제도에 의함.
- 18)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벨기에, 터키, 멕시코, 한국, 아이슬란드, 폴란드, 그리스임.

〈표 II-3-3〉 주요 국가의 자녀 양육지원 사례 비교

구 분	보육지원	세제 지원	아동수당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세미만 사회보장부 및 지방정부 관할 영유아 보육 -공립:정부부담(저소득층) -사립:수익자부담 보육시설 이용료의 70%를 세제에서 상환(맞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보전세제 (Working Tax Credit)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유인을 위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일정소득이하 유아녀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이하 아동 - 첫째:주당14.4파운드 (월10만원), - 둘째: 주당 9.6파운드 (월7만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정부부담, 부모는 약 25%정도 부담 가정보육비용 지원 유치원 보육은 무상이며 방학, 휴일 방과후는 보호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보전세제 (Prime pour l'Emploi)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환영수당(0~3세) : 월 160유로(22만원) 출산 보너스(자녀1인당) : 800유로(110만원) 가족수당 : 둘째 월 684프랑(13만원), 셋째 월 876프랑(17만원) -10~16세 월 192프랑 추가(4만원) -17세 이상 월 341프랑 추가(6만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세 아동의 유치원에 입학할 권리가 있으며, 재정은 부모가 약 16~20%정도 부담 양육비는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금공제 -부부에게는 최대 3,648유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수에 따라 비례 -세번째 자녀까지 매월 154유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녀는 매월 179유로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육비 차등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보전세제 (Family Tax Benefit)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이전 아동 지급 -출산지원금842달러(약72만원) -13세이하 최소 지급액 월 47달러(약 4만원) -13~15세 최대 지급액 월 257달러(약20만원) -16~18세 최대 지급액 월 47.3달러(약 4만원)

(표 계속)

구 분	보육지원	세제 지원	아동수당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이용하는 보육 형태, 보육시간, 아동수에 따라 보육비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보전세제 (Canada Child Tax Bene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 CTC로 전환하여 보편적 수당 형태 ▪ 일부 주 아동수당 바우처로 지급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저소득층(무상) ▪ 사립: 수익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유인을 위해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다만,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일정소득이하 유자녀 가정 지원 	미 실시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소득수준 차등지원 -공립: 수업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보전세제 (Family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수 차등 지원 ▪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C로 전환하여 보편적 수당 형태의 아동수당 제도 없음 ▪ 기존 수당은 첫째아 월 15만원, 둘째이상 13만원 수준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 3세미만아 최대 80%까지 세금공제 (1일 아동당 345 벨기에 프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보전세제 (In-Work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미만 보편적용 -첫째아 월57달러 -둘째아 월105달러 -셋째,넷째아 월157달러 ▪ 추가금(첫째자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2세 10달러추가 -12~16세 15달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를 가구 소득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국가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및 연금제도 개선 -아동부양공제 제공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까지 -둘째까지 월 5천엔(5만원), 셋째이하 월1만엔(10만원)

자료: OECD(2007),

4. 정책시사점

OECD 국가의 영아 보육서비스와 육아휴가제도, 현금 지원 등 자녀양육지원 정책 검토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영아보육 정책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이 모두 높은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 필수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율은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지원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유럽국가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더 길고 휴가 중 대체 임금 지원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휴직은 출생 후 중요한 시기 동안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탄력근무제, 충분한 육아휴직 수당, 아버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으로 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영아 양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대상자의 1/4 정도에 머물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매우 낮다. 육아휴직의 활성화, 남성 참여의 제도화 등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녀양육지원 정책임을 나타낸다.

셋째, 영아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원의 정도이다.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과 프랑스 등은 보육·교육을 공적체제로 확립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 부담을 줄였다. 즉, 충분한 보수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이후의 취업도 보장하고, 육아휴직 이후에는 공공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확실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우리나라는 공보육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질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등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설보육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내 보육에 대해서도 정책과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가정보육모에 의한 가정보육은 물론 아이 부모가 고용하여 아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보호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였다.

Ⅲ.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제도

영아를 포함한 여성의 자녀 양육지원은 그 동안 근로여성 모성보호와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출산휴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무급으로 도입되어 그 이후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연장으로 추가된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사회화, 육아휴직 수당 등 정책적으로 커다란 제도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는 부분적으로 가족친화적 고용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부 개정되어 또 다른 제도 발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편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990년대 후반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사업 등 국가 정책 추진에 힘입어 양적으로 크게 확충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동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치들이 제도화되어 단순한 양적 확충으로부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아 양육 현황을 살펴보고,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정책, 보육정책, 가정내 보육, 현금 지원 등 지원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영아 양육지원 현황

가. 영아 규모

통계청은 출생 이후 만 36개월 미만 영아의 수는 2007년 134만명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2010년에도 132만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III-1-1 참조).

이러한 영아의 규모는 최근에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감소한 결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표 III-1-1〉 연도별 연령별 추정 영유아 수

단위: %, 명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0	442,831	449,027	446,738	443,017	438,169
1	450,503	439,640	445,796	443,528	439,839
2	477,116	449,410	438,576	444,718	442,457
소계	1,370,450	1,338,077	1,331,110	1,331,263	1,320,465
3	491,176	476,281	448,625	437,813	443,947
4	528,586	490,314	475,449	447,843	437,053
5	590,020	527,610	489,413	474,578	447,025
소계	1,609,782	1,494,205	1,413,487	1,360,234	1,328,025
계	2,980,232	2,832,282	2,744,597	2,691,497	2,648,490

자료: 통계청(2006). 인구추계.

나. 영아모 취업 특성

M자형의 여성취업률 곡선이 나타내듯이 영아 모의 취업률은 낮다.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영아 모의 취업률¹⁹⁾은 최연소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26.8%, 유아인 경우는 42.6%로 최연소아동이 영유아인 모의 취업은 35.1%로 조사되었고,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교생인 모의 취업률은 51.6%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7.6%, 고학년은 55.5%로 차이를 보인다. 최연소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보다 잘 나타낸다(표 III-1-2 참조).

한편으로 전체 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아동이 영아인 경우 모는 25.8%, 유아의 모 38.1%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은 33.2%로 조사되었고,²⁰⁾ 초등학교생 모의 취업률은 47.4%로 전체 여성취업률²¹⁾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비율은 같은 방식을 택한 2002년 조사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2002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아동구분별로 영아의 모 23.8%, 유아의 모 37.9%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률은 31.7%로 조사되었고,²²⁾ 초등학교생의 모의 취업률은 48.7%이었다. 이 역시 아동연령별로 보면 아동 연령과 취업률이 비례함을 알 수 있다.

19) 학생은 미취업으로 분류하였음.

20) 영유아 모의 취업률 31.7%는 2000년 출산력 조사 자료를 분석한 영유아를 둔 모의 취업률 30.0%(서문희, 200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음.

21) 2004년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8%임(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2) 2000년 출산력 조사에서 영유아를 둔 모의 취업률은 30.0%(서문희, 2002)임.

〈표 III-1-2〉 아동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최연소아동 기준			전체	(수)
	취업	미취업	모부재 모름	취업	미취업	모부재 모름		
미취학	33.2	64.7	2.1	35.1	62.7	2.2	100.0	(2,962)
연령구분								
영아	25.8	73.8	0.5	26.8	72.9	0.3	100.0	(1,171)
유아	38.1	58.7	3.1	42.6	53.4	3.9	100.0	(1,791)
연령								
0세	20.4	79.6	-	20.2	79.8	-	100.0	(358)
1세	23.8	75.4	0.8	24.5	75.2	0.3	100.0	(391)
2세	32.2	67.3	0.5	35.9	63.5	0.6	100.0	(422)
3세	37.3	60.2	2.5	43.5	53.4	3.2	100.0	(442)
4세	35.3	61.1	3.6	40.1	54.7	5.2	100.0	(507)
5세	40.9	56.9	2.2	44.9	52.3	2.8	100.0	(492)
6세	39.4	56.0	4.6	43.1	52.8	4.1	100.0	(348)
초등학생	47.4	47.2	5.4	51.6	41.4	7.0	100.0	(3,450)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3〉 영아 모의 주된 미취업 이유

단위: %(명)

구분	일하고 싶지 않아	적당한 일자리없음	자녀맡길 곳 없음	자녀양육· 가사전념	주위의 반대	건강상 이유	기타	계(수)
전체	0.2	10.5	11.9	73.8	0.8	0.8	2.0	100.0(645)
연령								
만 0세	0.6	3.4	14.7	80.2	0.6	-	0.6	100.0(177)
만 1세	-	10.4	10.0	74.9	0.9	0.9	3.0	100.0(231)
만 2세	-	16.0	11.8	67.9	0.8	1.3	2.1	100.0(2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본 연구의 영아가 있는 가구조사 결과, 취업하지 않은 영아 모의 주된 미취업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 전념이 73.8%로 가장 많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11.9%이다(표 III-1-3 참조).

다.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1)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표 III-1-4>는 2004년 조사 결과로 영유아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모의 취업여부별 이용률을 나타낸다.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25.8%를 포함하여 28.5%가 기관을 이용하고 혈연 61.9%, 비혈연 9.6%로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취업모 영아 보육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의 경우는 취업모의 혈연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당수가 기관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중복 이용이지만, 36.8%로 미취업모 5.3%에 비하여 높다.

<표 III-1-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반일제이상 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일반 학원	0.3	0.1	-	0.2	15.1	13.8	11.8	14.3
기타	1.3	3.1	-	2.6	4.1	6.0	-	5.1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친인척	7.0	1.6	-	2.9	3.8	0.7	11.7	2.1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5> 취업모의 영아 실제 보육자

단위: %(명)

구분	부모님·친인척	보육시설	가사대리인	육아휴직 후 본인	기타	계(수)
전체	70.9	15.3	9.4	4.0	0.4	100.0(1,35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위의 <표 III-1-5>는 노동부가 직장여성의 영아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70.9%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키운다고 응답하여 부모님에 대한 보육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에 보낸다 15.3%, 가사대리인에게 맡긴다 9.4%, 육아 휴직하여 본인이 키운다 4.0%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배우자가 키운다 0.2%, 직장에 데리고 다닌다 0.1%, 밤에 출근하므로 낮에는 내가, 밤에는 배우자가 돌본다 0.1% 등이 제시되었다.

개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52.1%, 보육시설 등 기관과 중복 사용하는 비율이 47.9%로 개인 보육서비스의 단독 사용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는 영아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영아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독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보육시설 등과 중복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한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형태

단위: %(명)

구분	개인 보육서비스만 이용	보육시설 등 기관과 중복이용	계(수)	$\chi^2(df)$
전체	52.1	47.9	100.0(119)	
만 0세	79.3	20.7	100.0(29)	
만 1세	53.8	46.2	100.0(52)	16.4(2)**
만 2세	28.6	71.4	100.0(3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III-1-7>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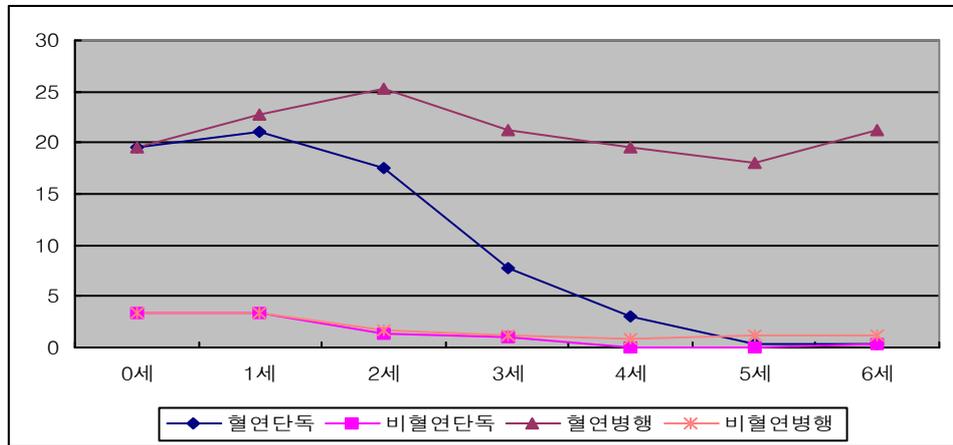
구분	영아	유아	소계
전체 보육대상아동(a)	1,171	1,791	2,962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b)	294	375	669
비율(b/a)	25.1	20.9	22.6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아동(c)	253	59	312
비율(c/a)	21.6	3.3	10.5
개인 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 병행 이용 아동(d)	40	316	356
비율(d/a)	3.4	17.6	12.0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영아는 대부분인 21.6%는 단독이용이고 3.4%는

기관과 병행 이용 영아이다. 이에 비하여 유아는 반대로 3.3%만이 단독 이용 유아이고 17.6%는 기관도 다니는 유아이다. 즉 개인서비스를 보완 서비스로 이용하는 유아와 달리 영아는 개별적 보육이 시설보육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III-1-1]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기관과 병행하는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2세 때부터 크게 떨어져서 3세 이상이 되면 이용률 자체도 급격하게 낮아지지만 대부분이 기관과의 병행이용이고 단독이용은 소수가 된다.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도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단독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그림 III-1-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 보육서비스 이용률 비교

2) 서비스유형별 이용 이유

아이를 가사대리인에 맡기는 이유로는 둘 다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6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가사대리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로는 보육시설보다 아이를 더 잘 봐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25.8%였으며,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4.7%에 그치고 있다(표 III-1-8 참조). 한편 <표 III-1-9>을 보면, 보육시설에 맡기는 이유로는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에 마땅한 가사대리인이 없어서, 가사대리인보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서가 각각 10.6%, 10.1%였으며, 비용이 낮아서가 4.3%이다(노동부, 2005).

〈표 III-1-8〉 취업모의 가사대리인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맡아줄 가족 없음	보육시설 선호	근처에 기관없음	계(수)
전체	69.5	25.8	4.7	100.0(12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표 III-1-9〉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맡아줄 가족 없음	가사대리인 없음	보육시설 선호	낮은 비용	계(수)
전체	73.9	10.6	10.1	4.3	100.0(20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 조사.

〈표 III-1-10〉을 살펴보면,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관이 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2.4%로 가장 높고,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없음 26.0%,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음 20.3%, 비용이 부담됨 11.0%,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 0.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기관이 멀다는 이유가 53.6%로 가장 높지만, 중소도시는 이와 달리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가 34.8%로 지역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1-10〉 기관 미이용자의 주된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질병·장애	기관이 멀	양육인있음	비용부담	기관불신	계(수)	$\chi^2(df)$
전체	0.2	42.4	20.3	11.0	26.0	100.0(516)	
연령							
만 0세	0.5	37.8	17.1	11.9	32.6	100.0(193)	
만 1세	-	51.1	20.6	13.3	15.0	100.0(180)	24.8(8)**
만 2세	-	37.8	24.5	7.0	30.8	100.0(143)	
모취업							
취업	-	30.0	7.1	38.6	24.3	100.0(70)	
미취업	0.2	44.5	22.2	6.7	26.3	100.0(445)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3) 선호하는 주 양육자

이처럼 영아보육에서 기관보다는 기관서비스를 선호하는 태도는 2004년 실태조사에 포함된 의견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육 제공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보면 0세인 영영아기는 조부모라는 응답이 취업모 72.4%, 미취업모 67.1%로 취업모가 5.3% 포인트가 높았고, 친인척은 취업모 11.2%, 미취업모 12.6%로 미취업모가 1.4% 포인트 높았다. 이외에는 7% 미만의 비율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1세아 역시 조부모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취업모 69.9%, 미취업모 64.2%로 취업모가 5.7% 포인트 높았으며, 친인척은 각각 11.5%, 13.5%로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양육자는 놀이방으로 취업모 7.3%, 미취업모 7.6%이다. 또한 만2세아도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모 특성별 부모 이외의 바람직한 영아 주 양육자(기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어린이집	1.9	1.5	-	2.6	1.8	-	8.7	8.4	3.2
놀이방	5.6	5.4	3.2	7.3	7.6	3.8	12.5	14.4	9.6
유치원	-	-	-	-	0.1	-	0.2	0.2	-
선교원	0.1	0.3	-	0.1	0.3	-	0.4	0.6	0.6
학원	-	-	-	-	-	-	-	-	-
조부모	72.4	67.1	78.2	69.9	64.2	78.2	59.4	53.6	72.6
친인척	11.2	12.6	6.4	11.5	13.5	6.4	11.2	12.3	5.7
탁아모 등 비혈연	4.0	6.3	3.2	4.5	6.8	3.8	4.6	5.9	3.2
방과후 프로그램	-	-	-	-	-	-	-	-	-
기타	0.3	0.2	-	0.3	0.1	-	0.3	0.1	-
없음(부모)	4.5	6.4	9.0	3.8	5.3	7.7	2.6	4.2	5.1
잘 모름	0.1	0.3	-	-	0.3	-	-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07)	(2,141)	(156)	(1,707)	(2,142)	(156)	(1,708)	(2,139)	(157)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자녀 대리 양육방법으로 0세아는

조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70.0%, 만1세아 61.7%, 만2세아 22.8%이고, 어린이집 등 기관은 각각 18.1%, 24.4%, 70.7%로 조사되었고, 비혈연인은 0세아와 만1세는 4% 수준이고 만2세는 1.0% 수준이다.

〈표 III-1-12〉 모취업여부별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어린이집 등 기관	이웃탁아모 등 비혈연인	잘 모름	계(수)
만 1세 미만 자녀						
전체	70.0	7.0	18.1	4.4	0.5	100.0(882)
취업	74.5	5.1	12.3	8.1	-	100.0(245)
미취업	68.3	7.8	20.2	3.1	0.6	100.0(643)
모부재	75.0	-	25.0	-	-	100.0(4)
만 1세 자녀						
전체	61.7	9.3	24.4	4.2	0.5	100.0(882)
취업	63.0	6.4	22.6	8.1	-	100.0(245)
미취업	61.1	10.4	25.0	2.8	0.6	100.0(643)
모부재	75.0	-	25.0	-	-	100.0(4)
만 2세 자녀						
전체	22.8	5.2	70.7	1.0	0.2	100.0(882)
취업	19.1	3.8	74.9	2.1	-	100.0(245)
미취업	24.1	5.8	69.2	0.6	0.3	100.0(643)
모부재	25.0	-	75.0	-	-	100.0(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라. 취약보육 대처 방법

영아를 둔 부모에게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아픈 자녀 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시간제 보육은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5%로 매우 높고, 그 이외는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5% 미만이다(표 III-1-13 참조).

취약보육 필요시 대처방안으로는 시간제 보육은 시설 이용이 59.8%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이외 야간보육, 아픈 자녀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은 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3〉 취약보육 필요성 정도

단위: %(명)

구분	상시	매우자주 (주2~3회)	비교적자주 (주 1~2회)	가끔 (월 1~2번)	매우 가끔 (년 1~2번)	없음	계(수)
시간제보육	48.5	10.0	9.4	25.1	5.1	1.9	100.0(882)
야간보육	4.3	3.9	7.8	43.1	30.0	10.9	100.0(882)
아픈 자녀 보육	3.6	0.7	2.7	18.8	61.6	12.6	100.0(882)
24시간 보육	1.4	0.7	1.0	10.1	63.6	23.2	100.0(882)
휴일보육	1.8	1.0	2.7	19.4	58.6	16.4	100.0(88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III-1-14〉 취약보육 필요시 대처방안

단위: %(명)

구분	시설이용	조부모·친인 척에 부탁	유아전문인 력파견업체	이웃 탁아모	부모가 해결	다른 자녀 가 돌봄	계(수)
시간제보육	59.8	25.9	2.7	3.2	7.7	0.7	100.0(865)
야간보육	32.5	40.6	3.2	6.8	15.8	1.1	100.0(785)
아픈 자녀 보육	8.8	44.3	5.1	8.4	32.5	0.9	100.0(770)
24시간 보육	8.7	52.4	5.6	7.5	24.7	1.0	100.0(676)
휴일보육	12.4	53.5	5.6	7.7	19.0	1.8	100.0(00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마. 개인 양육지원 비용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웃 탁아모, 베이비시터, 조부모 등 개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전혀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관 뿐 아니라 혈연 및 비혈연 등 개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논의되면서 본 조사에서 개인양육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김승권 2006)에 위하면 영유아 1인당 들어가는 총 비용은 영아 62만 9천원, 유아 74만 8천원으로 추정하였다. 가정에서 가정 공동 비용 중 자녀 1인에 소요되는 몫은 영아

32만 9천원, 유아 31만1천원으로 추정하였고²³⁾ 또한 자녀 1인당 들어가는 개인비용은 영아 30만원, 유아 43만 7천원으로 추정하였다. 사교육비가 영아는 65,000원이고 유아는 16만원이 되어 각각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표 III-1-15〉 영유아가구 공동 비용 1인 당 월 평균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 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사무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지출	계
0-2세	1,259	5.4	1.3	2.2	9.8	14.1	32.9
3-5세	1,506	5.2	1.0	2.2	9.1	13.5	31.1

자료: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16〉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 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계
0-2세	1,259	11.9	6.9	4.3	0.4	6.5	30.0
3-5세	1,506	12.7	3.8	2.3	8.9	16.0	43.7

자료: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영유아 1인당 들어가는 총 비용은 영아 62만 9천원, 유아 74만 8천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비용에는 보육시설 이용 비용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위한 학습지나 방문지도 등을 받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한글이 가장 많고 이외에도 미술, 음악, 수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표 III-1-17 참조).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김승권 외, 2006)에서는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 및 광열 수도비, 가구집기 및 사무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지출의 10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음. 이중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의 5개 항목은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조사하였고, 그 이외 5개 항목은 가구 당 총액을 조사하여 가족 수를 기준으로 분산한 것임.

<표 III-1-17> 학습지나 방문지도 이용 및 주요 내용

단위: %(명)

구분	실시	실시시 내용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구	기타
전체	19.8	5.8	3.9	1.9	1.0	12.6	57.3	3.9	1.0	41.7	3.9
만 0세	11.8	4.3	-	-	-	13.0	52.2	-	-	43.5	4.3
만 1세	19.9	2.8	5.6	2.8	-	5.6	47.2	2.8	-	52.8	-
만 2세	30.3	9.1	4.5	2.3	2.3	18.2	68.2	6.8	2.3	31.8	6.8
$\chi^2(df)$ (수)	18.0(2)** (521)	na (103)	na (103)	na (103)	na (103)	na (103)	3.9(2) (103)	na (103)	na (103)	3.6(2) (103)	na (10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그러므로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영유도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부모 대상 의견조사 결과, 영아 부모에게 가정내 양육비용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이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7.1%,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이었다(표 III-1-18 참조). 즉, 응답한 영아가 있는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이웃 탁아모, 베이비시터 등 개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가정내 양육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에 비하여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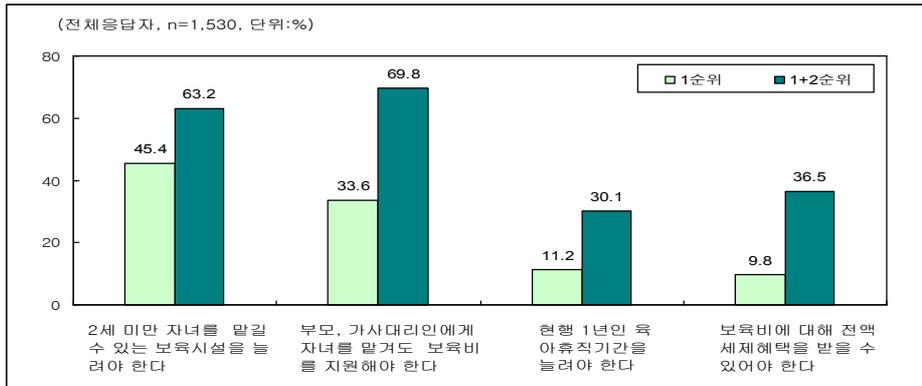
<표 III-1-18> 개인양육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양육 비용도 지원하여야한다	가정내 양육비용은 지원할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계
미취학아동	62.9	32.0	5.1	100.0(2,229)
영아	68.6	27.1	4.2	100.0(1,065)
유아	57.6	36.4	5.9	100.0(1,164)

자료: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그림 III-1-1>은 2005년도 노동부 조사 결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은 자녀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보육정책으로 부모나 가사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겨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33.6%로 영아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45.4%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1, 2순위를 합하여 보면 가사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겨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69.8%로 양육지원금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노동부(2005). 영아를 보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실태

[그림 III-1-2] 2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정책

한편, 정부가 취업여성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할 경우 월간 최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보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만원 미만 0.4%, 10~19만원 12.2%, 20~29만원 30.2%, 30~39만원 30.2%, 40만원 이상 26.8% 등 이다 (표 III-1-19 참조).

<표 III-1-19> 정부의 보육수당 지원 시 도움이 되는 최저 월평균 보육비용

단위: %(명)

구분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29만원	30~39만원	40만원~	모름/무응답	계(수)
비율	0.4	12.2	30.2	30.2	26.8	0.3	100.0(1,530)

자료: 노동부(2005). 영아를 보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실태.

바. 정보 제공 및 상담 제공

육아 관련 정보 취득 경로는 친구, 동료 및 육아관련 사이트가 주를 이루고 약 10% 미만이 집안 어른이다(표 II-1-20 참조). 이는 모의 취업이나 학력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비전문가를 통하여 경험에 기초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정확성 등 정보의 질적 수준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III-1-20〉 모 특성별 육아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친구나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전문 상담가	기타	혼자 해결	계(수)	$\chi^2(df)$
전체	9.0	43.5	40.1	2.2	5.2	-	100.0(882)	
모취업								
취업	11.9	37.4	44.7	2.1	3.8	-	100.0(235)	na
미취업	7.5	46.0	38.7	2.0	5.8	-	100.0(643)	
모부재	75.0	-	-	25.0	-	-	100.0(4)	
모학력								
고졸이하	10.4	50.0	31.3	2.1	6.3	-	100.0(336)	22.4(8)**
3년제	7.2	43.8	41.2	2.1	5.7	-	100.0(194)	
4년제	7.8	37.6	48.6	2.0	4.0	-	100.0(34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III-1-21〉 모 특성별 자녀 양육 관련 주된 상담자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친구나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전문 상담가	기타	혼자 해결	계(수)	$\chi^2(df)$
전체	16.2	54.3	18.0	5.4	1.7	4.3	100.0(882)	
모취업								
취업	21.3	48.1	21.7	4.3	1.3	3.4	100.0(235)	na
미취업	14.0	56.9	16.8	5.9	1.9	4.5	100.0(643)	
모부재	75.0					25.0	100.0(4)	
모학력								
고졸이하	17.6	58.0	11.9	5.7	2.4	4.5	100.0(336)	17.1(10)
3년제	17.5	52.1	20.6	5.2	1.0	3.6	100.0(194)	
4년제	13.5	52.6	22.7	5.5	1.4	4.3	100.0(34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또한 자녀 양육관련 문제의 주된 상담자는 친구와 동료가 54.3%로 주를 이루고 다음이 육아관련 사이트 18.0%, 집안 어른 16.2%의 순이다(표 III-1-21 참조).

육아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육아지원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하다(표 III-1-22 참조).

〈표 III-1-22〉 모 특성별 육아정보·상담제공 전문의 육아지원전문기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재로 충분해서 불필요	전문기관 필요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7.6	89.0	3.4	100.0(882)	
모취업					
취업	7.2	89.8	3.0	100.0(235)	na
미취업	7.8	89.0	3.3	100.0(643)	
모부재		50.0	50.0	100.0(4)	
모학력					
고졸이하	6.5	90.2	3.3	100.0(336)	
3년제	10.3	85.6	4.1	100.0(194)	3.7(4)
4년제	7.2	90.2	2.6	100.0(34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2. 영아 양육지원 제도

가.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 지원

1)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제72조에 근거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휴가 일수는 2001년에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현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²⁴⁾

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 급여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은 90일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액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하고, 대기업은 2007년 현재 최초 3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그리고 이후 6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전후휴가 급여를 개별기업이 부담하

24) 분만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연장하여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별 기업은 이러한 부담 때문에 여성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ILO 협약도 산전후휴가 시 임금을 보전하되 이 비용을 개별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48%의 여성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피 및 비정규직화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²⁵⁾의 경우에는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은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최고액으로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산전후휴가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로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고, 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의한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종료와 산전후휴가가 겹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속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추가 지원하고, 1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5)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사업은 100인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됨.

또한 2007년에는 정부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가 출산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청구할 수 없다.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양성 평등한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정하는 바를 보면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²⁶⁾ 이러한 현재 육아휴직 대상 1세 미만은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휴직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하여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²⁷⁾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가능하며, 휴직기간은 각 1년으로 재임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1년인데, 여교사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육아휴직기간이

26) 동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하는 조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임.

27) 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요건도 기존의 '신청 당시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양육 시'로 완화되었다. 자녀가 만 3세를 지나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가능하며, 분할사용 제한도 기존의 2회 분할에서 분할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보장으로 급여는 2001년 20만원부터 실시되어 2003년 30만원, 2004년 3월부터 4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 3월부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급여 지급 조건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²⁸⁾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방안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월 20~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07년 개정법에서는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andy(2000)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은 분리정책과 통합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리정책은 피부양자를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직장에서의 직무에 초점을 둔 정책이고 통합정책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구조의 개편까지 고려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분리정책 수준에서 이제 통합정책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서면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벌칙 조항을 두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저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 근로 한도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육아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우리나라는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본으로 직장보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의미와 한계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설치 및 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²⁹⁾,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9) 의무사업장의 범위는 199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음.

나) 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정책은 설치비 용자 및 무상지원, 인건비 무상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는 용자와 무상으로 구분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기금으로 5억원 한도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를 용자해 주고 있다. 이자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³⁰⁾ 용자 우선순위는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 III-2-1〉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지원종류	지원내용
설치비 용자	- 연리: 중소기업 및 사업주단체 2%, 대기업 2% • 최고 5억,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설치 무상지원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한도는 1억원, 단체의 경우 2억원. • 유구비품비는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 비용으로 최고 5천만원
운영비 무상지원	-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시설장은 아동 20명, 취사부는 아동 40명 기준
세제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7% 세액공제 -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 필요경비로 인정

자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무상지원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가 있다. 시설전환비는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 단체의 경우 2억원이다. 유구비품비는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고 5천만원이다.

운영비로는 199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자녀 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며³¹⁾, 지급액은 연도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07년 현재 고시금액은

30) 고용보험법 1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제조업 500인, 기타 100인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31)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50% 이상인

1인당 월 80만원이다. 교사로부터 시작하여 교사, 시설장, 취사부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이 여성가족부 야간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르는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당해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³²⁾ 지방세법 제272조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인정 손비 처리하도록 한다.³³⁾³⁴⁾ 이외 영사기와 촬영비 등 보육시설의 교재용 구입 기자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보육수당 지급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나. 영아 시설보육 지원

1) 중앙정부 정책

차등보육료 지원 이외에 영아보육 정책은 국공립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과 같은 시설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아보육 지원은 시설별 지원으로,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과 24개월 미만 영아반은 1개반을 운영할 경우에도 80%를 지원하고 도시지역 2세반 1반은 30%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32)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33) 이외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해 보육시설에서 보육비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34)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3호.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영아보육 양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확충3개년계획 기간 중인 1996년에 영아전담시설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아동 최소 규모는 18명이고, 지원은 시설장과 교사는 8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한다.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현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2005년부터 대체 지정하지 않는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을 책정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만 시설 정원 범위 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1996년 처음 도입 당시 영아 40명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원장과 소요인원의 인건비 70%를 지급하였으나, 1997년 100%로 상향되고, 이후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90%로 하향되었으며, 2005년에 80%로 다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는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3명까지만 지원되던 제도를 2002년 하반기부터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의 규모를 2002년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영아 18명, 3개반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연도별 영아전담시설수 지원율과 이용 영아 현황을 요약해 보면 <표 III-2-2>와 같다. 2002년 266개소에서 2004년 929개소로 증가했고, 2005년 883개소, 2006년에는 698개이다.³⁵⁾ 이용 영아는 2002년 8,072명, 2003년 18,668명, 2004년 23,361명, 2005년 26,301명의 영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표 III-2-2> 연도별 영아전담시설 지정 및 지원 현황

구 분	1996	1997~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규 모	영아40명 이상	영아30명 이상	영아30명 이상	영아30명 이상	영아20명 이상	영아20명 이상	영아18명 이상
인건비 지원율	70%	100%	90%	90%	90%	90%	80%
시설수	-	-	116	266	733	929	883
영아수	-	-	3,734	8,072	18,668	23,361	26,301

자료: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35) 인건비 미지원 시설도 포함된 수치임.

한편,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보육 지원은 2002년 하반기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월 40만원을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반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2002년부터,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아반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이후 2003년 모든 민간보육시설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는 시설별 40만원 지원에서 반별 지원으로 바뀌어,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영아반의 경우, 반별 현원이 3인 이상(2세는 5인)일 때, 반별 15만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에서 아동별 지원 원칙이 보고된 이후 시설별 지원이 부분 축소되면서 영아보육 지원도 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정을 중단하여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때 영아반은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영아 1인당 지원 금액은 0세반 영아 1인당 15만원으로 3명까지 지원되며, 1세반 또는 기존시설 0~1세반은 영아 1인당 9만원으로 5명까지 지원되며, 2세반은 영아 1인당 6만원으로 7명까지 지원되고, 반당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이전 반당 15만원의 지원에서 45만원까지의 지원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연도별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영아 지원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기준	10인 이상 영아보육 가정보육 시설	10인 이상 영아보육	영아 20명 이상	영아 18명 이상	반별 별도교사 배치	반별 별도교사 배치
지원대상	시설별	시설별	반별	아동별	아동별	아동별
지원액	월36만원 /시설	월36만원 /시설	월13만5천원/반	150천원~60천원/영아	249천원~69천원/영아	292천원~86천원/영아
예산	44억원	146억원 (추경56억 포함)	295억원	686억원	942억원	1356억원

주: 2007년부터 8개 조항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
 자료: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재구성

이러한 지원은 2006년 이후 기본보조금³⁶⁾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리된다. 2006년 새싹플랜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시설의 경우 영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전면 지원

하면서 보육료를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기본보조금의 지원수준은 표준보육비용의 80%선에서 결정하고, 3개년에 걸쳐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예산은 2005년 686억원에서 94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 영아수도 182천명에서 191천명으로, 지원단가도 만 0세아 15만원에서 24만 9천원, 만 1세아 9만원에서 10만 4천원, 만 2세아 6만원에서 6만 9천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2007년에는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의 지원은 1,356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0세 29만 2천원, 1세 13만 4천원, 2세 8만 6천원으로 상향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 지급에 8가지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총 정원 및 혼합반 운영비 지원 기준은 연령이 낮은 아동 기준 적용,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보고, e-보육에 의한 아동 및 교사관리와 보조금 신청, 2007년 인상분의 50% 이상을 교사 인건비에 사용 등으로 조건을 제시하여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추가 지원을 한다. 2007년도 각 지역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영아보육정책을 추가로 실시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

시·도 사업으로는 서울특별시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0세 영아 9명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 간호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아 영아 무상보육³⁷⁾을 실시하고 있다.

36)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육아지원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부담 수준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모든 아동의 보육비용과 부모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임. 기본보조금 제도는 아동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함으로써 보육시설들이 아동 유치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나 서비스 개선금의 형식이 강조되면서 시설별 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

37) 2008년부터 가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함.

〈표 III-2-4〉 시도 영아보육관련 특수사업

시도	항목	내용
서울시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0세아 반당 200천원/월, 1,2세아 반당 150천원/월
	- 0세아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 및 영아전담시설로서 0세아 9명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0세아 전담 간호사 1인 인건비지원
	- 셋째아 영아 무상보육	- 보육료 100% 지원
부산시	- 영아보육 환경개선비 지원	- 대 상 : 영아보육시설 5개소 - 지원내역 : 시설당 4,000천원 (시설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 영아반 교사 수당	- 월 5만원(장애아)
경기도	- 둘째 이상아 지원	- 만2세까지 보육료 50% 지원
	-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 수당	- 월 7만원(장애아)
전라남도	- 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자료: 여성가족부(2007). 지방자치단체 특수사업시책. 미발간.

〈표 III-2-5〉 시·군·구 영아보육관련 특수사업

종류	지역
영아 간식비 지원	서울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영유아),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영유아), 은평구, 서대문(영유아),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김포시(영유아) 안성시(영유아),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충청북도 전 시군(영유아) 전남 목포시 여수시 경북 안동시, 문경시(영유아), 상주시 경남 진주시, 남해시
영아반 운영비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영아 보육료 지원	경기도 안산시
아동수당	전라남도 정읍시(영유아), 무주군

자료: 여성가족부(2007). 지방자치단체 특수사업시책. 미발간.

부산광역시는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책정하였고, 경기도는 장애아와 더불어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 이상 영아를 만 2세까지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전라남도가 전담시설을 중심으로 교사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도이다

시·군·구 사업은 간식비 지원이 다수이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는 대부분의 지

역에서 간식비를 지원한다. 영아반을 별도로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영유아 전체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이외 서울시 일부 구에서 반 지원의 형태로 지원한다. 즉, 서울시 반당 지원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서초구는 2, 3세반, 강남구는 2세 아반을 추가로 지원하며 강동구는 전 영아를 아동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외 안산시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없는 영아에게 월 3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전라북도 정읍시와 무주군이 일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읍시는 영유아 전체, 무주군에서는 0~3세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현금 지원

1) 세제지원

<표 III-2-6>은 조세를 통한 육아가구 지원제도이다. 소득공제가 주를 이루고 세액공제는 2008년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III-2-6> 자녀 양육 가정 세제지원 제도

종류		현황
소득 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
		추가공제 -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다자녀공 제 - 20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은 추가 1인당 100만원 공제)
	특별 공제	교육비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의료비 - 자녀를 위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 초과금액 소득공제 (연 500만원 한도)		
보험료 - 자녀를 위한 보장성보험료 공제(연 100만원 한도)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10만원 비과세 - 200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휴가급여에 대해 비과세
세액 공제	근로장려세제	- '08년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실시(8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2007).

이 중에서 보육과 가장 밀접한 것이 교육비 공제이다. 현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현재 연간 1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2004년에는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포함하였다. 유아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조항을 두어 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은 이 법률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에 한차례 연기하여 현재 유효기간은 2009년 2월까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 지원방식으로 과표 기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과표 기준액별로 차이가 있다.

소득액공제제도는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현재 세율은 1천만원 이하는 9%, 1천~4천만원 이하는 18%, 4천~8천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양육비를 공제할 경우와 아닐 때의 세금의 차이는 과표기준액 1000만원이 7,425원, 8000만원일 경우에 12만 3천원의 차이가 난다. 둘째, 앞의 예에서 보듯이 면세계층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표기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셋째, 과표기준액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으로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균일하게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³⁸⁾

38) 외국의 경우 아동별 지원이 취약하거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영국에서 이 조세지원 방식을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 주는 보육료 아동별 보조금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 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는 다른 주와는 달리 아동별 보조금 지원 없이 세액공제제도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2) 수당 지원

가) 중앙정부 정책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자녀 양육수당은 없고, 농어민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영육수당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인데 전반적으로 대상은 물론 그 지원수준이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농어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현금 지원이다.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³⁹⁾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⁴⁰⁾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농어촌 일손돕기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일정 소득계층 이하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교육급여 및 양육비가 혼합된 형태로 지원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2001년부터 하루 우유값 500원을 적용하여 월 16,00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50,000원으로 증액되었다.⁴¹⁾ 수급 아동수는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2004년 17,000명, 2005년 21,000명, 2006년 31,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입양자녀 양육수당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아동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한 입양된 장애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으로

39)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 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음.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임.

40)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임.

41) 2004년 제49차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인상이 결정되었음.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등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방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III-2-7〉 지방자치단체 양육비 지원 현황 총괄표

구분	모든 아동 대상				
	구분 없음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첫째·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지원					
0~2개월		전남 구례군			
0~9개월					전북 완주군
0~1세	전남 강진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기도 안성시
0~2세	경북 안동시				충북 보은군
0~27개월			전남 구례군		
0~3세	전북 무주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인천광역시 8개구 2군, 강원도 횡성군
0~5세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충북 청주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녕군 경남 남해군 경남 김해시 전남 함평군 강원도 정선군
0~6세					
0~10세					
0~12세					
건강보험 및 의료비					
0~5세		전남 함평군			강원도 강릉시 경북 울진군
0~10세					광주광역시 5개구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표 III-2-8〉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양육비 지원 현황

지역	지원 대상	출생순위별 지급액	기간	실적 및 계획
모든 아동 대상				
전북 진안군	·군내 출생아	·첫째,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1년 ·셋째 이상: 3년	·'06: 신규 ·'07: 480명
전북 무주군	·출생시~만3세 이하 거주아동	·월 5만원	·3년	·'06: 2,657명 132,850천원
전북 순창군	·부모 주소가 모두 순창 거주자	·첫째·둘째: 축하금 50만원, 양육비 60만원 ·셋째야: 축하금 300만원, 양육비 180만원	·첫째·둘째: 1년 ·셋째: 3년	·'06: 131명/ 78,600천원 ·'07: 200명
전남 구례군	·군내 신생아	·첫째,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2개월 ·셋째 이상: 27개월	·'06: 158명 ·'07: 200명
전남 강진군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둔 출 산가정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이상: 월 35만원	·1년	·'06: 297명 452,020천원 ·'07: 260명
경북 영양군	·관내 출생아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5만원 ·셋째 이상: 월 10만원	·첫째, 둘째: 3년 ·셋째 이상: 5년	·'06: 97명 ·'07: 100명
경북 안동시	·관내 신생아	·첫째: 월 6만원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2년	·'06: 1,077명 ·'07: 1,955명
전남 함평군	·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10년	·'06: 신규 ·'07: 30명
경북 영천시	·2006.10.12 이후 1년 이상 영천시 에 거주 및 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첫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경과시 50만원 ·둘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경과시 70만원 ·셋째: 출생시 50만원 만1년경과시 100만원 13개월~24개월까지 월 10만원	·첫째, 둘째: 2회 일시적 지급 ·셋째: 3개월~24 개월	·'06: 79명/ 39,500천원 ·'07: 200명
둘째아 이상				
경북 울진군	·07.1월1일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10만원	·5년	·'06: 신규 ·'07: 200명
경북 경주시	·둘째, 셋째 출생아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1년	·'06: 신규 ·'07: 1,000명
셋째아 이상				
인천 광역시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	·5년	·'06: 46명 ·'07: 83명
경기도 안성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안성시 거주자	·50만원		·'06: 신규 ·'07: 168명
경기도 안성시	·2007.1월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1년	·'06: 신규 ·'07: 168명

(표 계속)

지역	지원 대상	출생순위별 지급액	기간	실적 및 계획
강원도 횡성군	·만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월 3만원	·5년	·'06: 310명 ·'07: 324명
강원도 정선군	·셋째 이후 출생 자녀	·연 300만원	·12년	·'06: 신규 ·'07: 47명
충북 청주시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월 15만원	·5년	·'06: 12,059명
충북 제천시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	·월 10만원	·5년	·'06: 신규 ·'07: 733명
충북 보은군	·2006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전 보은거 주	·1~12개월: 월 10만원 ·13~24개월: 월 15만원	·2년	·'06: 46명
전북 완주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월 10만원	·9개월	·'06: 신규 ·'07: 100명
경남 김해시	·세자녀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6년	·'06: 신규 444명 ·'07: 800명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	·월 5만원	·5년(취학전)	·'06: 4,478명 ·'07: 400명
경남 남해군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이전 부터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며 '07년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월 15만원	·5년	·'06: 신규 ·'07: 20명
경기도 안성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안성시 거주자	·50만원	·일시	·'06: 신규 ·'07: 168명
전남 여수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3,00만원	·일시	·'06: 320명 ·'07: 350명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표 III-2-9〉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관련 양육비 지원 현황

지역	사업명	지원 대상	지급액	기간	실적 및 계획
광주 광역시	출산장려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남아: 월 28,300원 ·여아: 월 26,850원	·10년	·'06: 신규 ·'07: 152명
강원도 강릉시	다자녀가정 의료비지원	·2007.1월 이후 3자녀출산 가 정	·월 72,000원 상당	·5년	·'06: 신규 ·'07: 510명
경북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7.1월1일 셋째아 이상 출생 아	·월 10만원	·5년(18세까지 보장 후 보험 금 8,000천원 학비로 사용)	·'06: 신규 ·'07: 40명
전북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출생아 생후 6개월이내/정읍 에 주소를 둔 자(부 또는 모) 의 자녀 중 입원아	·입원비 중 비급여 10만원이내 지급		·'06: 신규 ·'07: 100명
전남 함평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출생아 전원(타 지역에서 출 생하여 12개월 미만 전입자 포함지원)	·월 4만원	·5년간 납부 (10년 보장)	·'06: 239명 ·'07: 250명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대체로 지역 주민 출산 장려책이므로 현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지만 통장에 적립해 주는 지역도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대상을 선별한다. 출생순위와 연령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보면 <표 III-2-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체로 대다수의 지역이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5년이 가장 많다. 시·도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셋째아 이상아를 5년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경북 두 지역이고, 전남, 전북, 경북의 7개 지역이 전체 아동을 지원하는데, 전남 강진군, 경북 안동시, 전북 무주군은 3개 지역은 출생순위별 기간의 차이를 두지 않으나 전남 구례군, 전북 진안군 순창군, 경북 영양군은 4개 지역은 출생순위별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장 기간 지원하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만3세까지 지원하고 셋째아는 만5세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표 III-2-8>에서는 이러한 지원 양상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는데, 지원비용도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제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특이하게 지원하는 지역으로는 경북 영천시의 사례가 있다. 이곳에서는 첫째는 출생 시 50만원, 만 1년경과 시 50만원을, 둘째아는 출생 시 50만원, 만 1년경과 시 7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셋째 출생 시는 50만원, 만 1년경과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13개월~24개월까지는 월 10만씩 지급한다. 한편 전남 함평으로 출생신고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 시 통장으로 지급하는 체계이다. 여수에서는 일시불로 지원한다.

월 지원 비용은 3만원부터 2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순창군 셋째아 18만원, 안동시 20만원으로 최대이다.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지역이 가장 많다.

다음 <표 III-2-9>는 보험료나 의료비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경북 울진군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월 10만을 5년간 지원한 후에 18세 이후에 보험금을 학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라. 가정내 보육 지원

가정내 보육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 민간 비영리단체나 영리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가정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현재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0세~만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 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시간제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다.

이 사업의 특성은 비용이 저소득 가정(차상위 130%)의 비용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4000~5,000원이 기준으로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고, 이외 한 달에 최고 120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사업 총괄 감독자로 계획 수립, 사업 지침 개발·시달, 예산 지원,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중간 관리자 기능을 담당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 양성 및 파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사업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돌보미 및 이용회원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관리 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육아휴게소를 시범 운영한다.

한편, 지방정부의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보육 파견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내 양육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6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마. 정보 제공, 상담 등 지원

부분적으로 부모들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보센터를 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시·도와 일부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지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육아플라자를 들 수 있다. 육아플라자는 서울시가 일부 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 양육지원 사업이다. 육아플라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강동구 아동회관으로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010년까지 총 5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

침이다(서울특별시, 2007).

세 번째로는 육아휴게실을 들 수 있다. 육아휴게실은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3.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그리고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제도와 현황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법 개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육아휴직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전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정책은 시설보육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직접 지원과 같은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보육서비스나 비용 지원 이외에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보육서비스 제공만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핵가족 상태에서는 과거 가족이 담당하던 정보 제공, 상담, 심리적 지지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결여되게 마련이고, 이 역할을 사회가 담당하여야 한다. 부모의 다수가 친구나 동료와 같은 비공식 채널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위한 포괄적인 자녀양육 지원 기능을 공식적으로 사회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기존 보육이나 가족 관련 조직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영아 시설보육 실태

제4장에서는 영아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규모와 확충 추이를 살펴보고 영아 보육시설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운영, 재정,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이용 행태, 부모의 만족도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영아 보육시설 이용

제1절에서는 시설보육 이용 영아의 규모와 특성,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보육 대상 및 보육 영아 규모를 살펴보고, 보육영아의 특성을 소득계층과 어머니 취업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이유 등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이용 아동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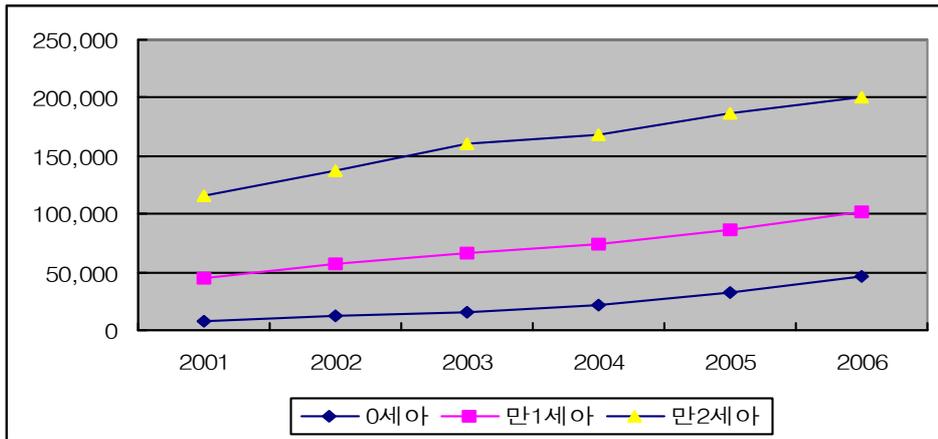
2006년 12월 현재 영아 보육시설 이용영아수는 0세아 46,351명, 1세아 102,473명, 만2세아 201,111명으로 모두 349,935명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2000	149,976	-	46,169	103,807
2001	168,575	7,887	45,342	115,346
2002	206,494	11,632	57,007	137,855
2003	241,565	14,686	66,907	159,972
2004	262,916	21,445	73,686	167,785
2005	305,555	32,065	86,123	187,367
2006	349,935	46,351	102,473	201,111

주: 2000년도 0세아는 만1세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그림 IV-1-1]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증가 추이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2000년도에 약 15만명이던 보육 영아수가 2005년에 30만명으로 5년만에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0세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1년도에 8천명 미만에 머물던 0세아의 수가 2005년에 약 4배로 증가하였고 2006년 현재는 2001년 대비 5.9배로 증가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을 각 연령 영아비율로 환산하면 0세아 10.5%, 1세아 22.7%, 2세아 42.2%로 영아 전체는 25.5%이다(표 IV-1-2 참조)

<표 IV-1-2> 각 세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비율

구분	단위: 명, %			
	0~만2세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2004				
인구수	1,476,239	481,264	480,140	514,835
보육영아수	262,916	21,445	73,686	167,785
비율	17.8	4.5	15.3	32.6
2006				
인구수	1,370,450	442,831	450,503	477,116
보육영아수	349,935	46,351	102,473	201,111
비율	25.5	10.5	22.7	42.2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통계청(2005). 인구추계.

지난 수년간 출산수준의 저하로 영아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영아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아 비율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보고된 2004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영아의 보육 이용률은 17.8%에서 25.5%로 7.7% 상승되었고, 연령별로는 0세아는 4.5%에서 10.5%, 만1세아는 15.3%에서 22.7%, 만2세아는 32.6%에서 42.2%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영아보육, 특히 0세아 수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약 9,000명 증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약 120,000명이 증가한 것은 2004년 영아 보육 지원금 확대, 기본보조금 지원, 둘째아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셋째아 보육료 추가 지원⁴²⁾ 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아동 특성

1) 저소득 가정 아동

<표 IV-1-3>과 <표 IV-1-4>는 보육료 지원아동수와 지원아동 비율을 나타낸다. 2006년 12월 현재 보육료 지원아동은 66만 6,64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4.1%이다. 영아는 22만 3,700명으로 보육 영아 대비 63.9%로 전체 아동비율과 별 차이가 없다.

<표 IV-1-3> 보육료 지원아동 수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총계
	0세	만1세	만2세	소계		
전체	27,262	68,238	128,200	223,700	442,943	666,643
차등지원						
소계	21,947	56,654	108,054	186,655	277,212	463,867
법정	2,028	4,724	8,632	15,384	40,262	55,646
2층	10,302	26,690	47,841	84,833	120,265	205,098
3층	5,099	13,047	25,945	44,091	58,591	102,682
4층	4,518	12,193	25,636	42,347	58,094	100,441
두자녀	5,315	11,584	20,146	37,045	26,700	63,745
만5세아	-	-	-	-	139,031	139,031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42) 서울시가 셋째아 보육료, 경기도가 둘째아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임.

〈표 IV-1-4〉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비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단위: %

구분	영아				유아	전체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소계		
전체	58.8	66.6	63.7	63.9	64.2	64.1
차등지원						
소계	47.3	55.3	53.7	53.3	40.2(56.4)	44.6
법정	4.4	4.6	4.3	4.4	5.8(8.2)	5.3
2층	22.2	26.0	23.8	24.2	17.4(24.5)	19.7
3층	11.0	12.7	12.9	12.6	8.5(11.9)	9.9
4층	9.7	11.9	12.7	12.1	8.4(11.8)	9.7
두자녀	11.5	11.3	10.0	10.6	3.9	6.1
만5세아	-	-	-	-	20.1(70.0)	13.4

주: ()는 유아 해당연령별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각 연령별로 지원 아동을 보면 0~2세 영아 중 저소득층 영아 비율은 53.3%로 만 5세를 제외한 유아 56.4%에 비하여 다소 낮다. 0~4세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법정 지원층은 영아의 비율이 유아보다 낮고, 그 이외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연령별로 보면 특히 0세아의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은 47.3%로 낮은 편이다. 특히 2층과 4층 지원아동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낮다. 이는 0세아 보육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취업모 지원 기능이 강하고, 취업모 가구의 소득이 홀벌이 가구 소득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아는 두자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비율이 유아보다 높아서 결과적으로 지원 아동 비율은 연령별로 유사하게 된다.

2) 취업모 영아

다음은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조사에서 조사된 보육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취업모 자녀 비율은 69.0%이고 연령별로는 0세아는 82.0%, 만1세아 75.7%, 만2세아 66.6%로 집계되었다(표 IV-1-5 참조).

정부 지원별 차이를 보면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 71.6%, 71.0%로 유사한 수준이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은 65.9%로 다소 비율이 낮다. 영아 연령별로는 0세아가 인건비 지원시설이 91.9%로 타 시설에 비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표 IV-1-5〉 지원형태별 취업모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9.0	27.6	82.0	31.0	75.7	31.6	66.6	29.5	(733)
인건비 지원	71.6	25.3	91.9	20.3	78.8	28.0	69.2	26.7	(304)
기본보조금 지원	65.9	27.5	75.2	34.3	72.8	33.0	63.6	30.5	(324)
미지원	71.0	33.1	77.6	37.8	75.4	37.2	68.0	34.3	(105)
F	3.7*		12.6**		2.3		2.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1-6〉 시설유형별 취업모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수)
전체	69.0	82.0	75.7	66.6	(733)
국공립	68.8	93.3	74.0	67.8	(112)
법인	66.4	86.0	74.0	64.0	(130)
민간개인	67.9	87.8	78.1	65.3	(276)
가정	72.2	74.5	75.0	69.4	(215)
F	24.5**	2.0	9.9**	55.3**	
전담	85.7	93.1	90.1	81.2	(102)
국공립	93.2	100.0	95.9	91.0	(9)
법인	79.0	84.6	82.0	75.7	(30)
민간개인	87.1	95.7	82.7	82.3	(53)
가정	91.7	100.0	95.8	83.5	(10)
F	9.1**	2.2	4.1**	9.5**	
일반	66.3	77.7	72.6	64.1	(631)
국공립	66.6	90.3	71.5	65.7	(103)
법인	62.6	88.1	70.6	60.5	(100)
민간개인	63.3	81.6	72.6	61.1	(223)
가정	71.3	72.8	73.8	68.7	(205)
F	22.2**	25.1**	9.5**	49.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 운영주체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72.2%로 다소 높고, 그 이외 4개 유형의 시설은 국공립시설이 다소 높지만 대체로 66~69% 수준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4개 운영주체별 시설 모두에서 영아전담시설의 취업모 비율이 일반보육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과 가정보육시설 중 전담시설은 취업모 비율이 각각

93.2%, 91.7%로 보고하였다(표 IV-1-6 참조).

그러나 종일반 영아의 비율은 영아의 경우도 평균 35.7%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0세아는 48.0%, 만1세아 40.9%, 만2세아 33.7%로 집계되었다(표 IV-1-7 참조).

〈표 IV-1-7〉 지원형태별 종일제 영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5.7	31.1	48.0	41.2	40.9	37.6	33.7	32.4	(733)
인건비	32.3	27.2	56.0	39.3	37.5	32.8	29.8	27.1	(304)
기본보조금	37.3	30.6	42.1	40.8	42.7	39.5	36.1	34.1	(324)
미지원	40.7	40.7	46.3	47.1	46.7	46.0	38.7	40.7	(105)
F	3.6*		4.6*		2.1		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1-8〉 시설유형별 종일제 영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수)
전체	35.7	48.0	40.9	33.7	(733)
국공립	26.6	39.7	31.8	25.4	(112)
법인	26.9	47.3	28.8	25.6	(130)
민간개인	34.9	54.0	44.8	32.9	(276)
가정	46.9	45.4	46.9	45.3	(215)
F	2.4	2.3	8.4**	2.9*	
전담	50.2	67.1	53.7	44.6	(102)
국공립	62.3	66.4	67.1	60.0	(9)
법인	39.9	60.7	41.3	35.5	(30)
민간개인	50.8	67.7	55.1	44.8	(53)
가정	66.8	83.3	71.1	58.4	(10)
F	1.7	1.0	4.7**	2.9*	
일반	33.4	40.6	38.1	31.9	(631)
국공립	23.5	27.8	27.8	22.3	(103)
법인	23.0	28.2	25.0	22.6	(100)
민간개인	31.1	43.3	40.9	29.9	(223)
가정	45.9	42.9	45.6	44.6	(10)
F	23.8**	3.6*	3.7*	1.6	2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정부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이용 영아 비율을 보면 0세는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비율이 5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기타 시설이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가장 낮다. 그러나 그 이상 연령대 아동은 인건비 지원시설이 종일제 이용 아동비율이 가장 낮다(표 IV-1-7 참조).

시설 운영주체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46.9%로 다소 높고, 민간이 34.9%이고 법인과 국공립 시설은 각각 26.9%이다. 그런데 전담과 일반시설의 차이는 뚜렷하다. 운영주체별 시설 모두에서 영아전담시설의 종일제 영아 비율이 일반보육시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보육시설 중 전담시설은 종일제 영아가 전체 영아의 66.8%이고 국공립시설이 62.3%이다. 이들 시설은 취업모 비율이 각각 93.2%, 91.7%로 보고한 시설이다. 한편 민간개인시설은 종일제 이용 아동비율이 50.8%이고 법인은 39.9%로 네 가지 유형의 전담시설 중 가장 낮다(표 IV-1-8 참조).

취업모 비율은 70% 정도가 되는데 비하여 종일제 보육영아 비율은 그 1/2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자녀의 종일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사실 영아 입장에서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아의 부모들 경우도 오후 3시 정도까지의 시설보육과 그 이후의 개별 돌봄 지원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선택하였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07).

다. 보육시설 이용 이유

현재 자녀가 해당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31.7%,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대리양육의 필요로 인한 경우가 30.5%로 높다. 그 외 전인발달 도모 18.0%, 사회성 발달 촉진 16.9%, 예체능 특기 교육이 0.5% 순이다.

영아 연령별로는 0세아는 46.7%가 모 취업에 의한 대리보육이 목적이고 이 비율은 영아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다음은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들어서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비율도 26.7%이고 그 이상 연령은 30% 수준이다. 사회성 및 전인 발달 비율은 연령과 더불어 이용 이유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들어서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모 취업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모 취업여부별로 보아도 취업모의 경우도 16.4%는 종일 보살피기 힘들어서 보육시

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영업, 무급종사 등 어머니의 직업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9〉 현재 해당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발달 도모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듦	예체능 특기교육	모취업으로 대리양육	사회성발달 촉진	기타	계(수)
전체	18.0	31.7	0.5	30.5	16.9	2.5	100.0(439)
연령							
0세	10.0	26.7	3.3	46.7	6.7	6.7	100.0(30)
1세	18.9	30.8	0.6	33.3	14.5	1.9	100.0(159)
2세	18.4	32.8	-	26.8	19.6	2.4	100.0(250)
모취업							
취업	4.4	16.4	-	72.1	5.5	1.6	100.0(183)
미취업	28.1	42.7	0.8	0.8	24.9	2.8	100.0(253)
모부재	-	33.3	-	-	33.3	33.3	100.0(3)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25.7	33.8	-	16.2	23.0	1.4	100.0(74)
151~200만원	29.3	34.8	1.1	9.8	21.7	3.3	100.0(92)
201~250만원	14.3	30.6	-	18.4	32.7	4.1	100.0(49)
251~300만원	16.7	43.1	-	26.4	11.1	2.8	100.0(72)
301~350만원	15.2	21.2	-	54.5	9.1	-	100.0(33)
351~400만원	11.4	29.5	-	47.7	9.1	2.3	100.0(44)
400~500만원	7.5	18.9	1.9	60.4	7.5	3.8	100.0(53)
501만원 이상	-	27.3	-	63.6	9.1	-	100.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인 발달 도모, 사회성 발달 촉진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취업으로 대리양육을 지정한 비율이 높다. 이는 모취업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 기관 이용 기간 및 시간

1) 이용 일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닌 평균 기간은 7.3 개월이고, 보육시설에 가장 오래 다닌

영아는 33개월 동안 다닌 영아도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기간이 길다(표 IV-1-10 참조).

〈표 IV-1-10〉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7.3	6.0	1	33	(439)
만 0세	5.3	3.9	1	26	(95)
만 1세	6.6	5.0	1	25	(154)
만 2세	9.0	7.1	1	33	(190)
F			14.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IV-1-11〉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일수

단위: %(명)

구분	월~토 매일	월~금 매일	일주일 3~4번	일주일 1~2번	필요할 때 가끔	월~일 매일	24시간	계(수)
전체	11.0	86.9	0.9	0.2	0.6	0.2	0.2	100.0(535)
연령								
만 0세	7.5	90.0	-	-	-	-	2.5	100.0(40)
만 1세	12.2	86.2	1.1	-	-	0.6	-	100.0(181)
만 2세	10.8	86.9	1.0	0.3	1.0	-	-	100.0(314)
모취업								
취업	13.7	85.2	-	-	0.5	0.5	-	100.0(183)
미취업	10.7	87.4	1.2	0.4	0.4	-	-	100.0(253)
모부재	-	33.3	33.3	-	-	-	33.3	100.0(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이용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86.9%로 거의 대부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11.0%, 그 외의 이용시간은 1%미만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0세아보다 1, 2세아의 비율이 높다. 0세아 7.5%, 1세아 12.2%, 2세아 10.8%이다. 이외 24시간 이용비율은 0세아가 높다(표 IV-1-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육시설에서도 토요일 운영이 평일과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평일 이용 시간

다음은 등원 및 퇴원시간을 파악하여 환산한 평일 이용시간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영아가 민간개인시설 이용 영아의 이용시간이 긴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고, 가정보육시설 이용 영아는 이용시간은 각 시간대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IV-1-12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가정시설이 가장 길어서 각각 평균 7시간 56분, 7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⁴³⁾

〈표 IV-1-12〉 보육시설유형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단체	민간	가정	전체
5시간까지	4.5	40.0	27.3	14.1	21.2	18.1
5~6시간까지	4.5	20.0	36.4	23.9	16.8	19.6
6~7시간까지	18.2	10.0	-	18.3	10.9	14.0
7~8시간까지	27.3	10.0	-	8.9	5.8	7.9
8~9시간까지	22.7	-	9.1	17.4	15.3	16.0
9~10시간까지	18.2	20.0	27.3	11.7	13.1	13.2
10~11시간까지	4.5	-	-	4.7	9.9	7.2
11시간 그 이상	-	-	-	0.9	6.9	4.0
계(수)	100.0(22)	100.0(10)	100.0(11)	100.0(213)	100.0(274)	100.0(530)
평균	7시간 56분	6시간 17분	7시간 14분	7시간 21분	7시간 52분	7시간 38분
표준편차	1시간 29분	2시간 6분	2시간 11분	1시간 53분	2시간 36분	2시간 18분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다음은 부모의 취업과 아동연령별로 나누어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취업모 자녀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38분, 미취업모 자녀는 평균 6시간 44분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다시 아동연령별로는 나누어 보면 취업모 자녀는 영아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는 시간이 길다. 0세아가 9시간 28분, 1세아 8시간 54분, 2세아 8시간 18분이다. 그러나 미취업모 자녀는 0세아의 경우 5시간 54분으로 1세아와 2세아 이용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은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IV-1-13 참조).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미취업모의 0세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다는 점이다.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기본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법인시설 이용시간이 가장 짧으나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료 수집이 필요함.

〈표 IV-1-13〉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전체
취업				
평균	9시간 28분	8시간 54분	8시간 18분	8시간 38분
표준편차	2시간 11분	2시간 6분	2시간 15분	2시간 13분
(수)	(22)	(76)	(112)	(210)
F			3.4*	
미취업				
평균	5시간 54분	6시간 53분	6시간 23분	6시간 44분
표준편차	1시간 33분	1시간 51분	1시간 38분	1시간 43분
(수)	(17)	(103)	(199)	(319)
F			2.5	
전체				
평균	8시간 19분	7시간 45분	7시간 17분	7시간 31분
표준편차	3시간 37분	2시간 11분	2시간 1분	2시간 15분
(수)	(40)	(181)	(311)	(532)
F			5.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모부재 아동 3명(1명은 24시간 보육)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3) 등퇴원 방법과 소요시간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시설 접근성을 보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영아가 59.7%이다. 정부 지원에 따른 차이는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표 IV-1-14 참조).

〈표 IV-1-14〉 지원형태별 차량이용 영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59.7	92.5	(733)	
인건비	62.2	86.0	(304)	0.4
기본보조금	56.3	78.0	(324)	
미지원	63.2	140.1	(1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1-15〉 시설유형별 차량이용 영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전담		일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59.7	(733)	46.4	(102)	61.9	(631)
국공립	44.8	(112)	7.9	(9)	48.0	(103)
법인	83.6	(130)	54.0	(30)	92.5	(100)
민간개인	79.2	(276)	51.8	(53)	85.7	(223)
가정	28.1	(215)	29.8	(10)	28.0	(205)
F	17.5**		23.2**		10.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이 28.1%로 가장 낮고 법인이 83.6%로 가장 높으며, 민간개인은 79.2%, 국공립 44.8%이다. 전반적으로는 일반보육시설에 비하여 전담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⁴⁴⁾. 특히 국공립 영아전담 시설의 차량이용 영아 비율은 7.9%에 불과하였고, 가정보육시설은 전담과 일반보육 시설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IV-1-15 참조).

마. 만족도

다음 <표 IV-1-16>은 현재 지불하는 보육료 대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73.6%로 가장 높고, 매우 만족은 16.6%, 불만족 9.8%로 전체적으로 만족비율이 높다.

영아 연령별로는 0세아보다는 1, 2세아의 매우 만족 비율이 높는데, 연령이 높아 지면서 불만족도 동시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고, 모가 부재인 경우 만족도는 매우 높다. 한편 모 학력별로도 별 차이가 없으며, 가구 소득은 만족도와 일관성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표 IV-1-16〉 부담하는 보육료 대비 보육서비스 만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계(수)
전체	16.6	73.6	9.8	100.0(439)
연령				
0세	10.0	90.0	-	100.0(30)
1세	17.0	75.5	7.5	100.0(159)
2세	17.2	70.4	12.4	100.0(250)
모취업				
취업	14.8	75.4	9.8	100.0(183)
미취업	17.8	72.3	9.9	100.0(253)
모부재	33.3	66.7	-	100.0(3)
모학력 ¹⁾				
고졸이하	16.6	73.7	9.4	100.0(175)
3년제	15.4	72.5	12.1	100.0(91)
4년제	17.1	74.1	8.8	100.0(170)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18.9	74.3	6.8	100.0(74)
151~200만원	15.2	75.0	9.8	100.0(92)
201~250만원	20.4	65.3	14.3	100.0(49)
251~300만원	19.4	72.2	8.3	100.0(72)
301~350만원	6.1	87.9	6.1	100.0(33)
351~400만원	13.6	79.5	6.8	100.0(44)
400~500만원	20.8	67.9	11.3	100.0(53)
501만원 이상	9.1	68.2	22.7	100.0(22)

주: 1)은 $\chi^2=0.8(4)$, 그 이외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불만족하는 경우, 제일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사항으로는 시설의 공간 배치가 20.0%로 가장 높고, 교재교구의 다양성, 보육과정의 체계성, 보육활동의 다양성이 모두 12.5%이고, 일상적 보호가 10.0%이다. 그 외 사항들은 10% 미만으로 낮다(표 IV-1-17 참조).

〈표 IV-1-17〉 불만족 시,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부문

단위: %(명)

구분	전체	만 0세	만 1세	만 2세
공간배치	20.0	-	15.4	28.6
교재교구 다양성	12.5	30.0	-	9.5
보육과정 체계성	12.5	20.0	15.4	4.8
보육활동 다양성	12.5	-	-	23.8
일상적 보호	10.0	10.0	-	14.3
긍정적 상호작용	2.5	10.0	-	-
실내 위생	7.5	-	7.7	9.5
실외 안전	-	10.0	15.4	-
건강관리	2.5	-	7.7	-
급간식	7.5	10.0	7.7	4.8
놀이감 안전관리	2.5	10.0	7.7	-
비상사태 대비시설	2.5	-	-	4.8
부모와의 의사소통	2.5	-	7.7	-
지역사회 연계	5.0	-	15.4	-
계(수)	100.0(44)	100.0(10)	100.0(13)	100.0(2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바. 요구도

전체적으로 영아보육에서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발달관련 프로그램이 46.2%로 가장 높고, 가족 같은 분위기 23.7%, 급간식 13.2% 순이다. 저렴한 비용, 이용시간 다양화, 부모대리 역할은 각각 6.6%, 6.2%, 2.7%로 낮다(표 IV-1-18 참조).

영아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발달관련 프로그램, 이용시간 다양화, 비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 급간식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에 응답 비율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IV-1-18〉 영아보육시설에 가장 바라는 점

단위: %(명)

구분	이용시간 다양화	발달관련 프로그램	가족같은 분위기	급간식	저렴한 비용	부모대리 역할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2	46.2	23.7	13.2	6.6	2.7	1.4	100.0(439)	
지역									
대도시	5.0	52.1	20.2	10.9	6.7	3.4	1.7	100.0(238)	10.8(6)
중소도시	7.5	39.3	27.9	15.9	6.5	2.0	1.0	100.0(201)	
연령									
0세	10.0	60.0	10.0	6.7	10.0	3.3	-	100.0(30)	
1세	7.5	53.5	19.5	10.7	5.0	3.1	0.6	100.0(159)	na
2세	4.8	40.0	28.0	15.6	7.2	2.4	2.0	100.0(250)	
모취업									
취업	8.2	43.7	21.3	12.0	8.7	4.4	1.6	100.0(183)	
미취업	4.0	48.6	25.7	14.2	4.7	1.6	1.2	100.0(253)	na
모부재	66.7	-	-	-	33.3	-	-	100.0(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2. 영아 보육시설 운영

제2절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 관점에서 영아 보육시설의 유형, 프로그램, 교사 처우, 운영관련 제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아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유형은 운영주체, 비용주체, 보육아동 연령 특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영유아보육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은 일곱 가지이다. <표 IV-2-1>은 각 유형별 보육영아 수를 나타내고, <표 IV-2-2>는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보육 아동 104만명 중 영아의 규모는 약 35만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대비 33.6%인데, 시설유형별로 보면 전체 보육 아동 대비 영아의 비율은 가정이 75.9%로 단연 우위이고 다음이 직장 31.1%, 부모협동 30.0%이며,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시설이 25~27% 수준으로 유사하다(표 IV-2-2 참조).

〈표 IV-2-1〉 보육시설유형별 보육 영아수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총계
	0세	만1세	만2세	소계		
총계	46,351	102,473	201,111	349,935	690,426	1,040,361
국공립	1,814	8,801	20,050	30,665	83,992	114,657
법인	2,241	8,395	20,544	31,180	89,371	120,551
법인외	1,038	3,945	9,873	14,856	43,952	58,808
민간개인	13,911	40,746	101,216	155,873	426,456	582,329
부모협동	18	92	262	372	866	1,238
가정	27,054	39,152	46,263	112,469	35,771	148,240
직장	275	1,342	2,903	4,520	10,018	14,538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표 IV-2-2〉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아동 대비 영아 비율

단위: %

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0세	4.5	1.6	1.9	1.8	2.4	1.5	18.3	1.9
만1세	9.8	7.7	7.0	6.7	7.0	7.4	26.4	9.2
만2세	19.3	17.5	17.0	16.8	17.4	21.2	31.2	20.0
영아전체	33.6	26.7	25.9	25.3	26.8	30.0	75.9	31.1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다음 <표 IV-2-3>은 시설유형별 보육 영아 분포를 나타낸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아 중 44.5%가 민간개인시설을 이용하고 32.1%가 가정시설을 이용하며 국공립과 법인은 약 9%의 영아가 이용한다.

〈표 IV-2-3〉 연령별 보육영아의 보육시설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총계
0세	3.9	4.8	2.2	30.0	0.0	58.4	0.6	100.0
만1세	8.6	8.2	3.8	39.8	0.1	38.2	1.3	100.0
만2세	10.0	10.2	4.9	50.3	0.1	23.0	1.4	100.0
영아전체	8.8	8.9	4.2	44.5	0.1	32.1	1.3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그런데 영아 연령별로 세분해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타 유형의 시설과는 다르게 영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0세아는 58.4%, 1세아 38.2%, 2세아 23.0%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반면에 다른 유형의 시설은 연령 증가와 함께 그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민간개인시설이 가정시설과 대비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영아 비율이 전체 아동 보육비용 1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공립시설의 영아보육 기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 위치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2) 정부지원 수준에 의한 분류

영아보육시설은 정부 재정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 기관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현재 대표적인 방식이 운영주체별 지원과 운영주체와는 무관한 영아 전담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개인이 설치한 시설에는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영아전담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정부가 인건비를 추가 또는 신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 기관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매우 다르므로, 아동 1인을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영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앞으로 증가될 예정이지만 2007년 현재는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시설은 인건비로 교사와 시설장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농어촌에 한하여 보육교사 1인 인건비 100%와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전담시설은 인건비로 교사와 시설장 인건비 80%,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농어촌인 경우 차량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2007년 현재 기본보조금으로 0세아 292,000원, 1세아 134,000원, 2세아 86,000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정부지원액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지원 기준을 0세아반 1개반, 1세아반 2개반, 2세아반 2개반 등 6개반 아동 27명을 정원으로 하는 도시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부 지원과 총 보육비용이 차이를 산출하였다. 산출 방식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을 포함한 인건비⁴⁵⁾를 원장과 취사부는 전체 아동수, 교사는 해당반 아동수로 나누어 합산하였다. 정부지원시설 원장은 10호봉, 교사와 취사부는 5호봉을 적용하였다.

〈표 IV-2-4〉 영아보육시설 지원형태별 보육비용 비교

단위: 원, %

구분	국공립(A)	전담	기본보조금 지원 민간(B)	B/A
0세아				
부모 보육료 기준액	361,000	361,000	361,000	
정부 기본보조	507,406	557,892	292,000	
계	868,406	918,892	653,000	75.2
1세아				
부모 보육료 기준액	317,000	317,000	317,000	
정부 기본보조	328,839	331,098	134,000	
계	645,839	648,098	451,000	69.8
2세아				
부모 보육료 기준액	262,000	262,000	262,000	
정부 기본보조	252,310	254,569	86,000	
계	514,310	516,569	348,000	67.7

주: 1) 아동 27명 기준, 시설장 10호봉, 교사, 취사부 5호봉 기준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하였음.

2) 정부 지원 농어촌은 시설은 더 높음

그 결과는 <표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아를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시설이 868,406원, 전담시설이 918,892원, 기본보조금을 받는 민간개인시설이 653,000원이다. 만1세아는 국공립시설이 645,839원, 전담시설이 648,098원, 민간개인시설이 451,000원이다. 만2세아는 국공립시설이 514,310원, 전담시설이 516,569원, 기본보조금을 받는 민간개인시설이 348,000원이다.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0세아 75.2%, 만1세아 69.8%, 만2세아 67.7%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유형간의 차이이다. 영아전담시설의 지원 방식을 일반 국공립시설 지원방식과 비교하여 보면 0세아는 약 5만원이 높게 산출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과 비교해서는 2007년 기준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민간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은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맞추어 간다고 할 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아전담보육시설로서 시설 유형과 무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

45)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해당 인건비의 16.51%가 추가됨.

한 의문이 제기된다.

두번째는 표준보육비용과의 비교이다. 2004년 말에 조세연구원(박기백 외, 2005)에서 제시한 0세아 표준 보육비용이 788,97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국공립보육시설 표준비용은 2005년 724,000원이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은 비용을 783,000원으로 추정하였고,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조세연구원의 단가는 853,195원이 된다.⁴⁶⁾ 이러한 비용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비용을 비교하면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과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비용은 두 기관이 제시한 단가보다 높다. 특히 영아전담보육시설의 단가가 높다. 연령별로는 만1세는 8~10만원, 만2세도 약 10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2-5〉 연령별 보육비용 비교(2005, 2007)

단위: 원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조세연구원 산출			
2005	788,973	524,938	403,333
(2007 추정)	(853,195)	(567,983)	(436,850)
여성가족부 조정			
2005	724,000	500,000	385,000
2007	783,000	541,000	417,000

주: ()는 여성부 조정 액수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추정한 것임.
자료: 여성부(2005) 내부자료.

3) 보육대상 영유아에 의한 분류

영아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은 일반 운영 주체에 의한 보육시설 유형과는 별도로 영아만 보육하는가, 아니면 일반 유아와 함께 보육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 운영 시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아 영아반과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영아만 보육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과거에 영아전담으로 지정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총 정원의 30%까지 유아를 보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46) 이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비용에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시설로 건축비를 보육비용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다소 과도하게 추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급간식비 등을 여성가족부 판단으로 다소 조정한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영아전담시설이 ‘영아와 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영아의 입장에서는 큰 아이들과 함께 양육되지 않으므로 일단 안전상의 위험이 적고, 소규모이므로 보다 개별적으로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행사가 적으므로 영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영아전용 교재나 교구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안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일반시설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담시설은 아동이 중간에 보육시설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한편 <표 IV-2-6>은 보육영유아 구분에 대한 시설장들의 의견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68.8%, 법인 61.5%, 민간개인 56.9%, 가정 30.2%의 순으로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시설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표 IV-2-6> 바람직한 영아 보육시설 형태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영아·유아 함께 보육	영아전담	영아중심 유아소수	계(수)	$\chi^2(df)$
전체					
국공립	68.8	22.3	8.9	100.0(112)	74.5(6)**
법인	61.5	23.1	15.4	100.0(130)	
민간개인	56.9	30.8	12.3	100.0(276)	
가정	30.2	36.3	33.5	100.0(215)	
전담					
국공립	44.4	44.4	11.1	100.0(9)	na
법인	6.7	50.0	43.3	100.0(30)	
민간개인	1.9	60.4	37.7	100.0(53)	
가정	-	80.0	20.0	100.0(10)	
일반					
국공립	70.9	20.4	8.7	100.0(103)	115.2(6)**
법인	78.0	15.0	7.0	100.0(100)	
민간개인	70.0	23.3	6.3	100.0(223)	
가정	31.7	34.1	34.1	100.0(2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na는 빈도수 분포가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영아전담시설과 일반시설의 시각 차이도 크다. 전담시설들은 국공립 44.4%, 법인 50.0%, 민간개인 60.4%, 가정 80.0%가 영아전담을 선호하고 그 이외에도 영아중심

시설이 유아 소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서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시설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다. 이는 현재 운영하는 시설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표 IV-2-7>은 현재 보육하는 아동 연령별 구분에 의한 시설장의 의견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대체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특성의 시설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현 형태별 바람직한 보육시설 형태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영아·유아 함께 보육	영아전담	영아중심 유아소수	계(수)	$\chi^2(df)$
전체	59.7	29.7	18.6	100.0(733)	
영아·유아 함께 보육	68.5	21.0	10.4	100.0(518)	227.9(2)**
영아전담시설	4.1	63.4	32.5	100.0(123)	
영아 중심, 유아 소수 보육	20.7	33.7	45.7	100.0(9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8>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명)

구분	영아 전담	영아 중심	영·유아 함께 보육	계(수)	$\chi^2(df)$
전체	45.8	25.7	28.5	100.0(882)	
연령					
만 0세	48.2	25.7	26.1	100.0(222)	6.9(4)
만 1세	44.0	29.7	26.3	100.0(327)	
만 2세	45.9	21.9	32.1	100.0(333)	
모취업					
취업	46.4	28.5	25.1	100.0(235)	na
미취업	45.9	24.7	29.4	100.0(643)	
모부재		25.0	75.0	100.0(4)	
모학력					
고졸이하	46.4	24.7	28.9	100.0(336)	3.9(4)
3년제	50.5	22.2	27.3	100.0(194)	
4년제	43.1	28.7	28.2	100.0(348)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표 IV-2-8>은 영아를 둔 부모들의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를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45.8%는 영아전담 시설을 선호하고 25.7%는 영아 중심 시설을 선호하며, 28.5%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다수가 영아 또는 영아 중심인 시설을 선호한다.

영아 연령별로는 만2세아가 영·유아 함께 보육하는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별 차이가 없고,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시설장과 부모의 의견을 볼 때, 보육영유아 구분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나. 프로그램과 서비스

1) 특별활동

<표 IV-2-9>는 영아가 있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아동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증가한다. 0세아의 경우는 교재교구 5.5%, 외국어 4.5%이고 이외 음악, 체육, 미술, 한글 등의 순인데, 만 1세가 되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만 2세가 되면 그 비율은 다시 2배 정도로 증가하여 교재교구 이용 54.3%, 외국어 43.9% 등이 된다(표 V-2-9 참조).

<표 IV-2-9> 연령별 활동별 특별활동 실시 보육시설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이용	기타	(수)
만 0세	1.9	3.0	3.6	0.6	-	1.9	4.5	5.5	3.0	(471)
만 1세	10.2	8.0	17.6	1.7	0.5	3.4	15.4	27.2	3.6	(784)
만 2세	20.7	14.7	37.2	5.6	1.9	7.4	43.9	54.3	4.4	(947)
만 3세	28.6	24.6	50.9	14.6	4.0	10.6	74.9	66.4	7.9	(756)
만 4세	33.0	36.6	59.8	19.8	5.5	12.2	86.9	63.9	13.7	(582)
만 5세	33.7	43.5	62.4	21.0	6.5	12.9	90.8	64.1	16.1	(490)

주: 아동연령 기준일이 3월 1일임.

자료: 이미화 외(2007).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개발센터. 재구성.

다음 <표 IV-2-10>은 부모조사 결과 영아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데 영아 전체는 프로그램별로 외국어 13.2%, 교재교구 12.1%로 각각 10%가

넘고, 이외 체육, 미술, 음악, 한글, 과학의 순이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항목별로 음악, 과학, 외국어 등에서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약간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⁴⁷⁾

〈표 IV-2-10〉 영아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구	기타
전체	6.6	4.6	7.3	2.7	1.1	3.9	13.2	0.2	12.1	0.5
모취업										
취업	6.6	7.7	6.6	4.9	1.1	3.3	15.8	-	13.7	0.5
미취업	6.7	2.4	7.9	1.2	1.2	4.3	11.5	0.4	11.1	0.4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4.1	1.4	8.1	1.4	1.4	2.7	9.5	1.4	6.8	-
151~200만원	7.7	1.1	8.7	1.1	1.1	2.2	10.9	-	10.9	-
201~250만원	10.2	-	2.0	-	-	2.0	8.2	-	8.2	2.0
251~300만원	6.9	8.3	9.7	4.2	1.4	5.6	16.7	-	16.7	-
301~350만원	-	6.1	-	9.1	-	-	18.2	-	9.1	-
351~400만원	11.4	13.6	9.1	2.3	-	4.5	13.6	-	22.7	-
400~500만원	5.7	5.7	9.4	3.8	3.8	7.5	17.0	-	11.3	1.9
501만원 이상	4.5	4.5	4.5	4.5	-	9.1	18.2	-	13.6	-
(수)	(438)	(439)	(439)	(439)	(439)	(439)	(439)	(439)	(439)	(439)

주: 아동연령 기준일이 6월 1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2) 취약보육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을 정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휴일보육을 제외하고는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가장 높고, 야간보육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이 실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다.

야간보육은 기본보조금 수령 시설이 21.9%로 가장 높고, 미지원시설이 가장 낮다. 24시간 보육 역시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4.0%, 미지원시설 2.9%이고 인건비 지원 시설은 1.6%이다. 시간제 보육도 같은 순서로 각각 11.7%, 8.6%, 6.3%이다, 한편 휴일보육은 미지원시설이 6.7%로 가장 높다(표 IV-2-11 참조).

시설유형 및 전담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네 가지 보육 모두 가정보육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27.0%의 가정보육시설이 야간보육을 하고

47) 시설조사와 부모조사의 연령 기준 시점이 시설조사 3월 1일, 부모조사 6월 1일로 다름.

17.7%가 시간제보육을 하며 7.0%가 휴일보육을 하고, 5.1%가 24시간 보육을 한다. 전담여부별로 살펴보면, 민간개인과 가정시설은 전담시설에서 네 가지 모두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으나, 국공립과 법인 시설은 서비스에 따라 다소 다르다(표 IV-2-12 참조).

〈표 IV-2-11〉 지원형태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야간보육	24시간보육	일시시간제보육	휴일보육	(수)
전체	17.7	2.9	9.0	4.5	(733)
인건비 지원	15.8	1.6	6.3	2.6	(304)
기본보조금 지원	21.9	4.0	11.7	5.6	(324)
미지원	10.5	2.9	8.6	6.7	(105)
$\chi^2(df)$	8.5(2)*	3.2(2)	5.8(2)	4.5(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12〉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야간보육	24시간보육	일시시간제보육	휴일보육	계(수)
전체					
국공립	10.7	-	1.8	-	100.0(112)
법인	13.8	0.8	4.6	2.3	100.0(130)
민간개인	15.2	3.3	7.2	5.4	100.0(276)
가정	27.0	5.1	17.7	7.0	100.0(215)
$\chi^2(df)$	18.9(3)**	9.4(3)*	30.9(3)**	10.4(3)*	
전담					
국공립	-	-	11.1	-	100.0(9)
법인	26.7	-	6.7	6.7	100.0(30)
민간개인	26.4	5.7	13.2	9.4	100.0(53)
가정	40.0	10.0	40.0	-	100.0(10)
$\chi^2(df)$	na	na	na	na	
일반					
국공립	11.7	-	1.0	-	100.0(103)
법인	10.0	1.0	4.0	1.0	100.0(100)
민간개인	12.6	2.7	5.8	4.5	100.0(223)
가정	26.3	4.9	16.6	7.3	100.0(205)
$\chi^2(df)$	21.8(3)**	7.7(3)*	30.2(3)**	12.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3) 개별 서비스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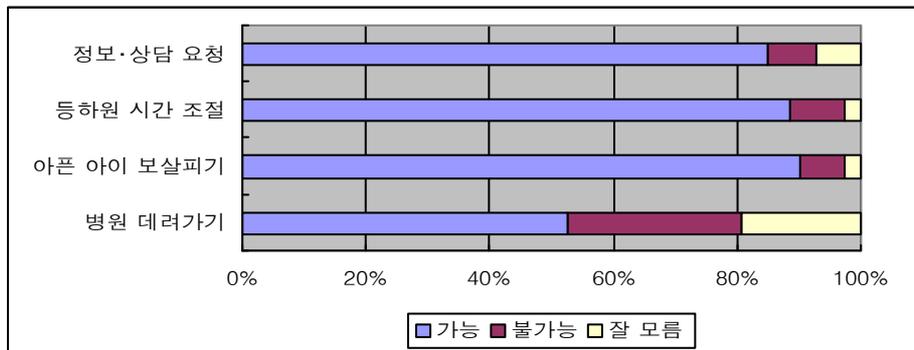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기대하는 병원 데려가기, 아픈 아이 보살피기, 등하원 시간 조절, 정보·상담 요청의 네 가지 종류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질문하였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보육시설에 개별서비스의 의뢰 가능성

단위: %(명)

구분	가능	불가능	잘 모름	계(수)
병원 데려가기	52.6	28.2	19.1	100.0(439)
아픈 아이 보살피기	90.2	7.1	2.7	100.0(439)
등하원 시간 조절	88.4	8.9	2.7	100.0(439)
정보·상담 요청	85.0	7.7	7.3	100.0(4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2-1] 보육시설에 개별서비스의 의뢰 가능성

개별서비스 중에 병원 데려가기가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를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6%로 불가능 28.2%에 비해 높고, 잘 모른다는 응답이 19.1%로 다소 높다. 이외 투약과 같은 아픈 아동을 보살피는 것이 가능하다는 90.2%로 매우 높고, 상황에 따른 등하원 시간 조절 88.4%, 육아 정보 요청 및 육아상담 의뢰는 85.0%로 대부분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가정보육시설은 병원

데려가기와 아동이 아플 때 보살피기에서 다른 시설보다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 국공립보육시설은 등하원 시간 조절과 정보 및 상담 제공에서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다(표 IV-2-14 참조). 모르겠다는 응답은 병원 데려가기가 가장 높아서 이것이 시설의 역할이어야 하는지 불분명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시설유형별 개별서비스 의뢰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가능	불가능	잘 모름	계(수)
병원 데려가기	52.6	28.2	19.1	100.0(437)
국공립	44.4	27.8	27.8	100.0(18)
사회복지법인	57.1	28.6	14.3	100.0(7)
기타법인·단체보육	33.3	55.6	11.1	100.0(9)
민간	47.6	30.6	21.8	100.0(170)
가정	57.5	25.8	16.7	100.0(233)
아픈 아이 보살피기	90.2	7.1	2.7	100.0(437)
국공립	83.3	11.1	5.6	100.0(18)
사회복지법인	85.7	14.3	-	100.0(7)
기타법인·단체보육	66.7	33.3	-	100.0(9)
민간	87.1	8.8	4.1	100.0(170)
가정	94.0	4.3	1.7	100.0(233)
등하원 시간 조절	88.4	8.9	2.7	100.0(437)
국공립	94.4	5.6	-	100.0(18)
사회복지법인	100.0	-	-	100.0(7)
기타법인·단체보육	77.8	22.2	-	100.0(9)
민간	87.1	10.6	2.4	100.0(170)
가정	88.8	7.7	3.4	100.0(233)
육아정보 및 상담	85.0	7.7	7.3	100.0(437)
국공립	100.0	-	-	100.0(18)
사회복지법인	85.7	14.3	-	100.0(7)
기타법인·단체보육	77.8	11.1	11.1	100.0(9)
민간	84.7	8.8	6.5	100.0(170)
가정	84.1	7.3	8.6	100.0(23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4) 서비스 수준

영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평가인증 지표 중 규정 준수를 제외한 14개 영역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시설장의 자체평가와 부모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된 14개 항목은 시설의 공간배치, 교재교구 및 장비 다양성과 충분성,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보육활동의 다양성, 유아의 일상적 보호, 교사와 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 실내 시설설비 위생상태, 실외 시설설비 안전상태, 건강 및 질병 관리, 급간식, 놀잇감 안전 관리, 비상상태 대비 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이다.

가) 시설장 평가

시설장이 인식하는 영아보육 서비스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유아의 일상적 보호, 급간식, 교사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우수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공간배치,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 실외 안전설비, 지역사회 연계에서 우수하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낮다(표 IV-2-15, 그림 IV-2-2 참조).

수준 5점 평가에서도 급간식이 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고, 지역사회 연계, 공간배치,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은 4점 미만으로 가장 점수가 낮다(표 IV-2-16 참조).

재정 지원형태별 차이를 보면 14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항목은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보육활동의 다양성, 건강 및 질병 관리, 급간식, 지역사회 연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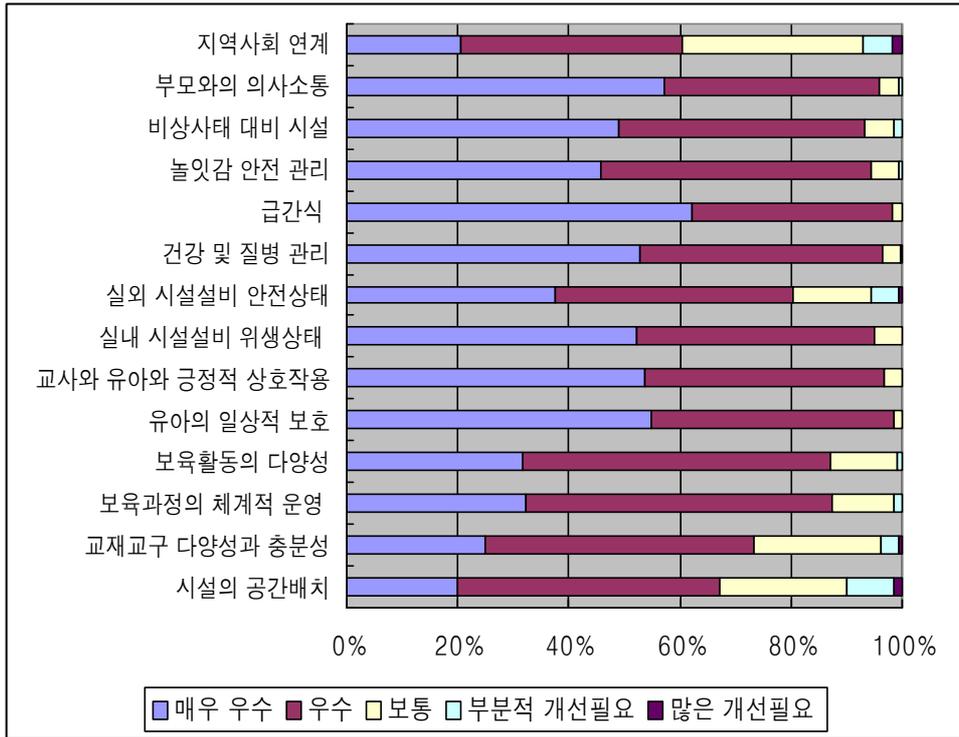
〈표 IV-2-15〉 지원형태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단위: 점(개소)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분개선필요	많은 개선필요	계(수)
시설의 공간배치	19.9	47.2	22.9	8.6	1.4	100.0(733)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	24.8	48.4	22.9	3.3	0.5	100.0(733)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32.3	55.0	11.3	1.4	-	100.0(733)
보육활동의 다양성	31.7	55.4	12.1	0.8	-	100.0(733)
유아의 일상적 보호	54.8	43.5	1.5	0.1	-	100.0(733)
교사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	53.6	43.1	3.1	0.1	-	100.0(733)
실내 시설설비 위생상태	52.1	42.8	4.9	0.1	-	100.0(733)
실외 시설설비 안전상태	37.5	42.7	14.2	4.8	0.7	100.0(557)
건강 및 질병 관리	52.8	43.8	3.0	0.4	-	100.0(733)
급간식	62.1	36.0	1.9	-	-	100.0(733)
놀잇감 안전 관리	45.6	48.8	5.0	0.5	-	100.0(733)
비상사태 대비 시설	49.0	44.2	5.2	1.5	0.1	100.0(733)
부모와의 의사소통	57.2	38.6	3.7	0.5	-	100.0(733)
지역사회 연계	20.6	39.8	32.5	5.3	1.8	100.0(733)

주: 빈도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그림 IV-2-2]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4가지 항목 모두 인건비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이 차이를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은 인건비 지원시설이 4.4점인데 비하여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은 4.0점, 미지원 시설은 4.1점이다. 보육활동의 다양성 역시 인건비 지원시설이 4.2점인데 비하여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은 각각 4.1점, 4.0점이다. 급간식은 인건비 지원시설이 4.7점인데 비하여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은 각각 4.5점이고, 지역사회 연계는 인건비 지원시설이 4.0점,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은 각각 3.5점이다(표 IV-2-16 참조).

〈표 IV-2-16〉 지원형태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설장 평가

단위: 점(개소)

구분	전체	인건비 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미지원	F
시설의 공간배치	3.8 (0.9)	3.8	3.8	3.7	0.4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	3.9 (0.8)	4.0	3.9	4.0	2.0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4.2 (0.7)	4.4	4.0	4.1	17.4**
보육활동의 다양성	4.2 (0.7)	4.3	4.1	4.0	11.2**
유아의 일상적 보호	4.5 (0.5)	4.5	4.5	4.5	0.2
교사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	4.5 (0.6)	4.5	4.5	4.6	1.9
실내 시설설비 위생상태	4.5 (0.6)	4.5	4.5	4.5	0.1
실외 시설설비 안전상태	4.1 (0.9)	4.1	4.1	4.2	0.4
건강 및 질병 관리	4.5 (0.6)	4.6	4.4	4.5	4.9**
급간식	4.6 (0.5)	4.7	4.5	4.5	13.9**
놀잇감 안전 관리	4.4 (0.6)	4.5	4.4	4.4	2.5
비상사태 대비 시설	4.5 (0.7)	4.5	4.4	4.4	1.1
부모와의 의사소통	4.5 (0.6)	4.5	4.6	4.5	1.2
지역사회 연계	3.7 (0.9)	4.0	3.5	3.5	32.4**
(수)	(733)	(304)	(324)	(105)	

주: ()는 표준편차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17〉과 〈표 IV-2-18〉은 전담여부별로 구분하여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시설 전체로 보면 14개 항목 중에서 시설 공간배치,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건강·질병 관리, 급간식, 비상사태 대비시설, 지역사회 연계의 6가지 분야에서 시설 유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국공립, 법인 시설들이 민간개인이나 특히 가정시설에 비하여 점수가 높다. 이는 앞의 표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다.

그러나 영아 전담여부를 나누어서 보면 일반 시설은 전체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전담시설들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담시설의 경우는 시설공간 배치, 교재교구 다양성, 일상적 보호, 실내설비 위생상태, 실외설비 안전 상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정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다른 전담시설에 비하여 점수가 높다. 이는 시설장 스스로의 평가로, 가정 영아전담보육시설장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표 IV-2-17〉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평가 5점 척도 I

단위: 점(개소)

구분	시설공간 배치	교재교구 다양성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일상적 보호	상호작용	실내설비 위생상태
전체	3.8	3.9	4.2	4.2	4.5	4.5	4.5
국공립	3.5	4.0	4.4	4.3	4.5	4.5	4.5
법인	3.9	4.0	4.4	4.4	4.5	4.4	4.5
민간개인	3.8	3.9	4.2	4.2	4.6	4.5	4.5
가정	3.7	3.9	4.0	4.0	4.5	4.6	4.5
F	4.1**	1.6	14.1**	12.4**	0.6	1.7	0.2
전담	4.1	4.0	4.4	4.3	4.7	4.6	4.6
국공립	4.2	4.4	4.7	4.6	4.9	4.8	5.0
법인	4.4	4.2	4.6	4.4	4.6	4.4	4.7
민간개인	3.9	3.8	4.3	4.2	4.6	4.6	4.4
가정	4.6	4.3	4.4	4.4	5.0	4.8	4.8
F	3.1*	3.0*	2.2	1.4	2.8*	1.7	4.8**
일반	3.7	3.9	4.2	4.2	4.5	4.5	4.5
국공립	3.5	4.0	4.4	4.3	4.5	4.4	4.5
법인	2.8	4.0	4.3	4.3	4.5	4.4	4.4
민간개인	3.8	4.0	4.2	4.2	4.6	4.5	4.5
가정	3.7	3.8	3.9	3.9	4.5	4.5	4.5
F	3.4*	1.3	12.8**	12.2**	0.8	1.5	0.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18〉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평가 5점 척도 II

단위: 점(개소)

구분	실외설비 안전상태	건강·질병 관리	급간식	놀잇감	비상사태 대비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
전체	4.1	4.5	4.6	4.4	4.4	4.5	3.7
국공립	4.1	4.9	4.8	4.5	4.4	4.5	4.2
법인	4.2	4.6	4.7	4.4	4.5	4.4	4.0
민간개인	4.1	4.5	4.6	4.4	4.5	4.5	3.8
가정	4.1	4.4	4.8	4.4	4.3	4.6	3.2
F	0.5	3.2*	6.3**	0.8	3.7*	2.4	51.1**
전담	4.1	4.6	4.8	4.6	4.6	4.6	3.9
국공립	4.5	4.9	5.0	5.0	4.9	5.0	4.4
법인	4.3	4.7	4.8	4.7	4.6	4.4	3.9
민간개인	3.7	4.5	4.7	4.5	4.5	4.6	3.8
가정	4.5	4.8	5.0	4.7	4.9	5.0	4.1
F	3.6*	1.6	2.0	2.4	2.1	3.4*	1.5

(표 계속)

구분	실외설비 안전상태	건강·질병 관리	급간식	놀잇감	비상사태 대비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
일반	4.1	4.5	4.6	4.4	4.4	4.5	3.7
국공립	4.1	4.6	4.8	4.4	4.3	4.5	4.1
법인	4.2	4.5	4.6	4.3	4.4	4.4	4.1
민간개인	4.2	4.5	4.5	4.4	4.5	4.5	3.9
가정	4.0	4.4	4.5	4.3	4.3	4.6	3.1
F	1.2	2.7*	5.8**	0.5	4.3**	2.0	55.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나) 부모의 평가

다음 <표 IV-2-19>는 부모조사 결과 현재 이용하는 시설의 서비스와 설비 수준에 대한 평가를 총괄한 결과이다. 조사 항목은 시설장 평가와 동일하게 총 1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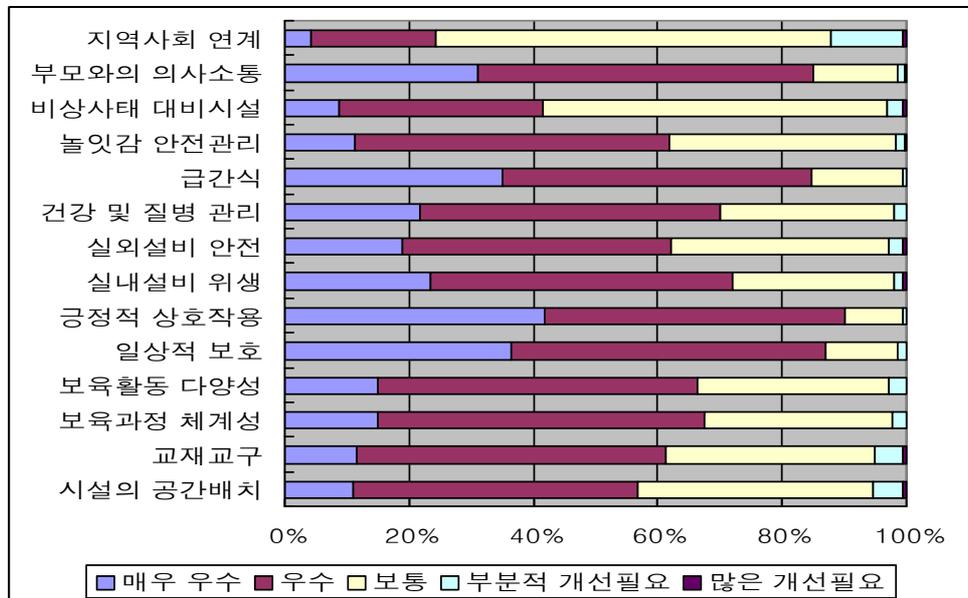
<표 IV-2-19> 이용시설의 서비스·설비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분적 개선필요	많은 개선필요	계(수)	5점 척도
시설의 공간배치	10.9	45.8	38.0	4.8	0.5	100.0(439)	3.6
교재 교구	11.6	49.7	33.7	4.6	0.5	100.0(439)	3.7
보육과정 체계성	15.0	52.6	30.1	2.3	-	100.0(439)	3.8
보육활동 다양성	15.0	51.3	31.0	2.7	-	100.0(439)	3.8
일상적 보호	36.3	50.7	11.6	1.4	-	100.0(438)	4.2
긍정적 상호작용	41.9	48.3	9.1	0.7	-	100.0(439)	4.3
실내설비 위생	23.5	48.5	26.2	1.4	0.5	100.0(439)	3.9
실외설비 안전	18.9	43.3	35.1	2.1	0.7	100.0(439)	3.8
건강 및 질병 관리	21.9	48.3	27.8	2.1	-	100.0(439)	3.9
급간식	35.1	49.7	14.6	0.7	-	100.0(439)	4.2
놀잇감 안전관리	11.2	50.8	36.4	1.4	0.2	100.0(439)	3.7
비상사태 대비시설	8.7	32.8	55.4	2.7	0.5	100.0(439)	3.5
부모와의 의사소통	31.2	53.8	13.7	1.1	0.2	100.0(439)	4.1
지역사회 연계	4.3	20.0	63.6	11.6	0.5	100.0(439)	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그 결과를 보면 비상사태 대비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항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와 설비 수준이 우수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이고,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서비스와 설비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우수하다는 응답은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41.9%로, 우수하다는 경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53.8%로 가장 높다. 매우 우수와 우수 비율의 총합이 가장 높은 항목은 유아의 일상적 보호가 87.0%로 가장 높다. 반면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지역사회 연계가 11.6%, 많은 개선 필요는 0.7%로 실외설비안전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3] 이용시설의 서비스·설비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이 부모조사 결과를 시설장 자체 평가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인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매우 우수, 우수 및 보통의 응답은 시설장과 부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장의 평가가 부모 평가보다 높아서 대체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임을 나타냈다.

5점 척도로 비교해 보면 시설장 조사에서는 공간배치,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 지역사회 연계가 4점 미만이고 그 이외는 모두 4점 이상이었다(표 IV-2-20 참조). 그러나 부모조사에서는 일상적 보호,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급간식, 부모와의 의

사소통 4개 항목이 4점 이상이고 그 이외는 모두 4점 미만이다(표 IV-2-19 참조).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교재교구 다양성,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일상적 보호 이외의 10개 항목은 유형간의 차이가 유의성을 나타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하여 다른 시설들이 대체로 점수가 낮고, 다른 유형의 시설들 간의 차이는 일관성이 없거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0〉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단위: 점(개소)

구분	시설공간 배치	교재교구 다양성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일상적 보호	상호작용	실내설비 위생상태
전체	3.6	3.7	3.8	3.8	4.2	4.3	3.9
국공립	3.9	4.0	4.2	4.2	4.7	4.8	4.7
사회복지법인	3.3	3.0	3.4	3.4	4.1	4.3	3.6
기타법인·단체보육	3.9	3.7	3.9	3.8	4.2	4.2	3.9
민간개인	3.7	3.7	3.8	3.8	4.2	4.3	3.9
가정	3.5	3.7	3.8	3.7	4.2	4.3	3.9
F	2.7*	2.3	2.3	2.3	2.3	3.0*	4.9**

구분	실외설비 안전상태	건강·질 병관리	급간식	놀잇감	비상사태 대비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
전체	3.8	3.9	4.2	3.7	3.5	4.1	3.2
국공립	4.3	4.4	4.7	4.2	4.1	4.7	3.6
사회복지법인	3.3	3.6	4.0	3.9	3.0	4.1	3.3
기타법인·단체보육	4.0	4.3	4.3	4.2	4.2	4.2	3.6
민간개인	3.7	3.8	4.0	3.6	3.4	4.1	3.1
가정	3.8	3.9	4.3	3.7	3.4	4.1	3.1
F	3.2*	3.5**	5.5**	3.8**	7.1**	2.8*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보육영아 연령별로는 교재교구의 다양성에서만 0세아에 비하여 1, 2세아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상호작용과 실내설비 위생상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항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IV-2-21, IV-2-22 참고).

〈표 IV-2-21〉 영아 연령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단위: 점(개소)

구분	시설공간 배치	교재교구 다양성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일상적 보호	상호작용	실내설비 위생상태
전체	3.6	3.7	3.8	3.8	4.2	4.3	3.9
만 0세	3.5	3.5	3.7	3.7	4.3	4.3	3.9
만 1세	3.6	3.7	3.8	3.8	4.2	4.3	3.9
만 2세	3.6	3.7	3.9	3.8	4.2	4.4	3.9
F	0.6	3.2*	2.5	1.3	0.3	0.9	0.0

구분	실외설비 안전상태	건강·질병관리	급간식	놀잇감	비상사태 대비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
전체	3.8	3.9	4.2	3.7	3.5	4.1	3.2
만 0세	3.8	3.8	4.2	3.6	3.4	4.1	3.2
만 1세	3.8	3.9	4.2	3.8	3.5	4.2	3.2
만 2세	3.8	3.9	4.2	3.7	3.5	4.1	3.1
F	0.1	0.5	0.3	0.9	1.1	0.1	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22〉 모의 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부모 평가 5점 척도

단위: 점(개소)

구분	시설공간 배치	교재교구 다양성	보육과정 체계성	보육활동 다양성	일상적 보호	상호작용	실내설비 위생상태
전체	3.6	3.7	3.8	3.8	4.2	4.3	3.9
취업	3.6	3.8	3.8	3.8	4.3	4.4	4.1
미취업	3.6	3.6	3.8	3.8	4.2	4.2	3.8
모부재	3.7	4.0	3.7	3.3	4.3	4.3	3.3
F	0.0	2.7	0.1	0.6	2.5	5.0**	5.1**

구분	실외설비 안전상태	건강·질병관리	급간식	놀잇감	비상사태 대비시설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연계
전체	3.8	3.9	4.2	3.7	3.5	4.1	3.2
취업	3.9	3.9	4.2	3.7	3.5	4.2	3.2
미취업	3.7	3.9	4.2	3.7	3.4	4.1	3.2
모부재	3.3	4.3	4.0	3.7	3.7	3.7	3.3
F	2.5	0.9	0.9	0.0	0.3	3.7*	0.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5) 최근에 서비스 질적 수준 변화

최근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변화에 대한 시설장이나 부모의 인식을 통하여 기본보조금 등 최근의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친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가) 시설장 인식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표 IV-2-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7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로 실내환경과 실외 안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8.2%, 52.2%로 다수이고, 그 이외 5개 항목에서는 약 1/3 정도가 변화가 없다고 하고 약 2/3 정도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급간식이 22.4%로 가장 높고 실외안전설비가 8.6%로 가장 낮다(표 IV-2-23 참조).

<표 IV-2-23> 보육서비스 개선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별 개선 없음	계(수)
교재교구가 다양하고 충분해졌음	17.2	48.9	33.8	100.0(325)
놀잇감이 많아졌음	14.4	53.4	32.2	100.0(326)
급간식의 질이 개선되었음(유기농 등)	22.4	41.1	36.5	100.0(326)
프로그램 등 보육활동이 다양해졌음	19.6	47.2	33.1	100.0(326)
교사가 아동을 보다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음	17.8	48.5	33.7	100.0(326)
실내 환경이 더 쾌적해졌음	18.2	33.6	48.2	100.0(325)
실외 안전 설비(장치) 등이 더 좋아졌음	8.6	39.2	52.2	100.0(2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2-24>는 시설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시설유형별로는 실외 안전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가정보육시설이 민간개인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실외 안전 설비도 마찬가지로 경향이다.

〈표 IV-2-2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시설장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별 개선 없음	계(수)	$\chi^2(df)$
교재교구					
전체	17.2	48.9	33.8	100.0(325)	
민간개인	10.7	46.7	42.6	100.0(169)	17.2(2)**
가정	24.4	51.3	24.4	100.0(157)	
놀잇감					
전체	14.4	53.4	32.2	100.0(326)	
민간개인	8.9	47.9	43.2	100.0(169)	22.6(2)**
가정	20.4	59.2	20.4	100.0(157)	
급간식					
전체	22.4	41.1	36.5	100.0(326)	
민간개인	16.0	38.5	45.6	100.0(169)	14.9(2)**
가정	29.3	43.9	26.8	100.0(157)	
프로그램					
전체	19.6	47.2	33.1	100.0(326)	
민간개인	10.7	47.3	42.0	100.0(169)	22.8(2)**
가정					
상호작용					
전체	17.8	48.5	33.7	100.0(326)	
민간개인	11.2	46.7	42.0	100.0(169)	15.8(2)**
가정	24.8	50.3	24.8	100.0(157)	
가정	29.3	47.1	23.6	100.0(157)	
실내환경					
전체	18.2	33.6	48.2	100.0(326)	
민간개인	13.1	45.2	31.7	100.0(169)	13.1(2)**
가정	23.6	52.2	24.2	100.0(157)	
실외안전설비					
전체	8.2	37.3	49.5	100.0(220)	
민간개인	6.9	38.2	55.0	100.0(131)	1.8(2)
가정	10.1	36.0	41.6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나) 부모 인식

〈표 IV-2-25〉는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기본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응답한 부모에게 앞에서와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50%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있다는 비율이 14.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보육활동의 다양성 11.9%, 급간식 10.0%의 순으로 10% 이상이고, 가장 변화가

적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실외 안전설비로 개선없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21% 정도만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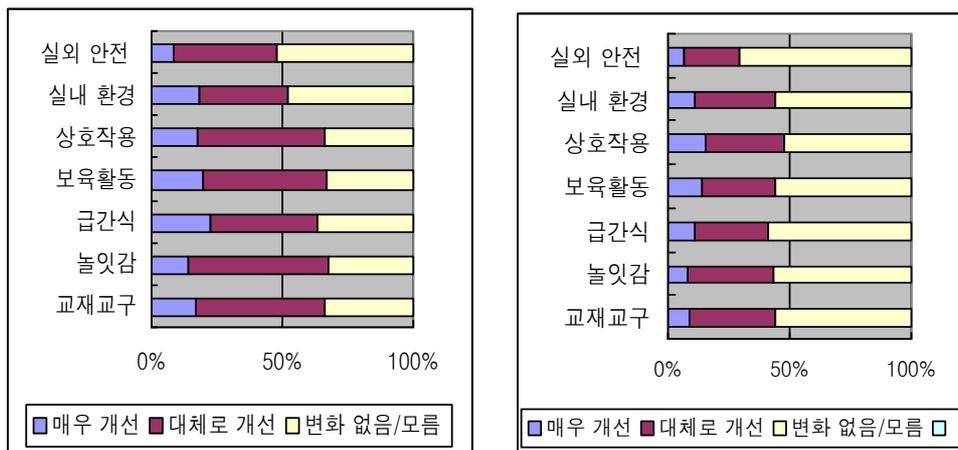
〈표 IV-2-25〉 최근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개선 없음	모르겠음	계(수)
교재교구	7.8	33.9	33.9	24.5	100.0(319)
놀잇감	7.2	34.2	34.5	24.1	100.0(319)
급간식	10.0	28.8	38.9	22.3	100.0(319)
보육활동 다양화	11.9	29.5	36.4	22.3	100.0(319)
긍정적 상호작용	14.1	29.2	37.0	19.7	100.0(319)
실내환경	9.7	33.5	34.5	22.3	100.0(319)
실외 안전설비	6.3	21.3	45.1	27.3	100.0(3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이러한 부모의 응답 비율을 시설장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IV-2-4>에서 오른쪽 그림은 시설장 응답결과이고 왼쪽 그림은 부모 응답결과인데,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시설장에 비하여 부모가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고 변화 없음 또는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설장은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긍정적 응답이 50%를 넘으나 부모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50%를 넘는 문항은 하나도 없다.



[그림 IV-2-4] 최근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 변화: 시설장과 부모 비교

다음 <표 IV-2-26>은 부모조사에서 나타난 최근 보육시설의 서비스와 보육환경의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영아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IV-2-26> 영아 연령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개선 없음	모르겠음	계(수)	$\chi^2(df)$
교재교구						
전체	7.8	33.9	33.9	24.5	100.0(319)	
만 0세	6.6	23.7	42.1	27.6	100.0(76)	16.8(6)*
만 1세	1.9	40.7	33.3	24.1	100.0(108)	
만 2세	13.3	34.1	29.6	23.0	100.0(135)	
놀잇감						
전체	7.2	34.2	34.5	24.1	100.0(319)	
만 0세	3.9	27.6	42.1	26.3	100.0(76)	8.7(6)
만 1세	4.6	36.1	35.2	24.1	100.0(108)	
만 2세	11.1	36.3	29.6	23.0	100.0(135)	
급간식						
전체	10.0	28.8	38.9	22.3	100.0(319)	
만 0세	13.2	22.4	43.4	21.1	100.0(76)	3.9(6)
만 1세	7.4	29.6	39.8	23.1	100.0(108)	
만 2세	10.4	31.9	35.6	22.2	100.0(135)	
프로그램						
전체	11.9	29.5	36.4	22.3	100.0(319)	
만 0세	7.9	22.4	42.1	27.6	100.0(76)	14.0(6)*
만 1세	6.5	36.1	36.1	21.3	100.0(108)	
만 2세	18.5	28.1	33.3	20.0	100.0(135)	
상호작용						
전체	14.1	29.2	37.0	19.7	100.0(319)	
만 0세	10.5	15.8	48.7	25.0	100.0(76)	15.6(6)*
만 1세	11.1	35.2	37.0	16.7	100.0(108)	
만 2세	18.5	31.9	30.4	19.3	100.0(135)	
실내환경						
전체	9.7	33.5	34.5	22.3	100.0(319)	
만 0세	6.6	23.7	38.2	31.6	100.0(76)	9.7(6)
만 1세	8.3	38.9	34.3	18.5	100.0(108)	
만 2세	12.6	34.8	32.6	20.0	100.0(135)	
실외안전설비						
전체	6.3	21.3	45.1	27.3	100.0(319)	
만 0세	6.6	15.8	40.8	36.8	100.0(76)	6.8(6)
만 1세	4.6	21.3	50.0	24.1	100.0(108)	
만 2세	7.4	24.4	43.7	24.4	100.0(13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만2세아 부모가 매우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개선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낮다. 교재교구, 프로그램, 상호작용의 영아연령별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IV-2-26 참고).

〈표 IV-2-27〉 취업여부별 보육서비스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개선	대체로 개선	개선 없음	모르겠음	계(수)
교재교구					
전체	7.8	33.9	33.9	24.5	100.0(319)
취업	8.6	39.1	33.6	18.8	100.0(128)
미취업	7.4	30.7	34.4	27.5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놀잇감					
전체	7.2	34.2	34.5	24.1	100.0(319)
취업	9.4	43.0	30.5	17.2	100.0(128)
미취업	5.8	28.6	37.6	28.0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급간식					
전체	10.0	28.8	38.9	22.3	100.0(319)
취업	10.9	34.4	37.5	17.2	100.0(128)
미취업	9.5	25.4	40.2	24.9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프로그램					
전체	11.9	29.5	36.4	22.3	100.0(319)
취업	14.1	32.0	37.5	16.4	100.0(128)
미취업	10.6	28.0	36.0	25.4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상호작용					
전체	14.1	29.2	37.0	19.7	100.0(319)
취업	18.0	32.8	33.6	15.6	100.0(128)
미취업	11.6	27.0	39.7	21.7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실내환경					
전체	9.7	33.5	34.5	22.3	100.0(319)
취업	11.7	35.9	33.6	18.8	100.0(128)
미취업	8.5	32.3	35.4	23.8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실외안전설비					
전체	6.3	21.3	45.1	27.3	100.0(319)
취업	8.6	24.2	45.3	21.9	100.0(128)
미취업	4.8	19.6	45.5	30.2	100.0(189)
모부재	-	-	-	100.0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표 IV-2-27 참고).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시설장 조사에서 가정보육시설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쪽으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부모들이 시설유형간의 차이나 최근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 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1) 교사 특성

교사의 처우 수준과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전에 교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부 지원형태별로는 인건비 지원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기타 시설의 순으로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고, 2급과 3급 교사의 비율이 낮다. 교사의 처우가 운영상태와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지원형태별 보육교사 자격 분포

구분	1급	2급	3급	계(수)	$\chi^2(df)$
전체	41.5	44.2	14.3	100.0(733)	
인건비 지원	50.2	36.2	13.6	100.0(304)	60.5(4)**
기본보조금 지원	24.1	60.3	15.5	100.0(324)	
미지원	8.9	73.3	17.8	100.0(1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운영주체별로 국공립 91.1%, 법인 86.2%, 민간개인과 가정시설이 61~62% 수준이다. 각 운영주체별로 전담시설의 1급 보육교사 비율은 국공립시설이 절대 수는 많지 않지만 100.0%로 조사되었고 법인과 민간개인이 73% 수준으로 유사하고 가정은 60.0% 수준으로 일반시설과 동일하다.

동일한 운영주체별로 전담과 일반시설이 차이를 보면 국공립과 민간개인은 전담시설에서 1급 교사 비율이 높지만 법인은 전담시설이 오히려 16% 포인트 이상 낮고, 가정시설은 전담시설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표 IV-2-29 참조).

〈표 IV-2-29〉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분포

단위: %(개소)

구분	1급	2급	3급	계(수)	$\chi^2(df)$
전체					
국공립	91.1	8.0	0.9	100.0(112)	62.6(6)**
법인	86.2	13.1	0.8	100.0(130)	
민간개인	60.5	29.3	10.1	100.0(276)	
가정	61.9	31.2	7.0	100.0(215)	
전담					
국공립	100.0	-	-	100.0(9)	na
법인	73.3	26.7	-	100.0(30)	
민간개인	73.6	22.6	3.8	100.0(53)	
가정	60.0	40.0	-	100.0(10)	
일반					
국공립	90.3	8.7	1.0	100.0(103)	64.7(6)**
법인	90.0	9.0	1.0	100.0(100)	
민간개인	57.4	30.9	11.7	100.0(223)	
가정	62.0	30.7	7.3	100.0(2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2) 교사 급여 및 수당

다음 <표 IV-2-30>은 각 시설에서 가장 어린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급여와 경력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2-30〉 지원형태별 교사 급여 및 경력

단위: 만원, 개월(개소)

구분	급여		경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0	32.7	60.3	51.8	(733)
인건비 지원	148.3	25.3	73.4	55.2	(304)
기본보조금 지원	95.8	21.0	45.9	43.7	(324)
미지원	88.7	26.6	53.7	53.7	(105)
F	270.5**		24.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교사의 급여는 지원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다.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이 평균 148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본보조금 수령 시설이 96만원 정도로 인건비 지원시설의 64.6%이며, 미지원시설은 89만원으로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약 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경력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담과 일반시설로 나누어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아전담시설의 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하여 경력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여서 전체는 국공립 157만원, 법인 144만원, 민간개인 101만원, 가정 93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각 시설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전담과 일반시설의 차이는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각각 40만원, 50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정시설은 일반 보육시설의 교사 평균 경력이 5년 정도로 전담시설 교사 경력 3년 7개월보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50만원이 낮게 나타났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시설유형별 교사 급여 및 경력

단위: 천원, 개월(개소)

구분	급여			경력			(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1,070	1,397	1,031	60	48	62	(733)
국공립	1,570	1,613	1,564	87	83	87	(112)
법인	1,443	1,360	1,531	78	50	86	(130)
민간개인	1,009	1,362	964	41	42	41	(276)
가정	927	1,416	915	61	43	62	(215)
F		138.0**			3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한편 <표 IV-2-32>는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급여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시설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차이가 있다는 시설은 4~6%에 불과하였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비율이 인건비 지원과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이 각각 38.2%, 34.0%로 유사한 수준이고 그 이외 시설이 12.4%로 상대적으로 낮다. 초과 근무가 없다는 비율은 지급한다는 비율과 반비례하여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어려운 시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IV-2-33 참조).

〈표 IV-2-32〉 지원형태별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 급여 차이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차이 없음	영아보육교사 급여가 높음	유아반 없음/무응답	계(수)	$\chi^2(df)$
전체	79.0	2.9	21.6	100.0(733)	
지원형태별					
인건비	73.9	4.5	21.6	100.0(304)	
기본보조금	73.0	4.3	22.7	100.0(324)	2.2(4)
미지원	73.1	5.2	18.1	100.0(105)	
시설유형별					
국공립	87.5	5.4	7.1	100.0(112)	
법인	86.9	3.8	9.2	100.0(130)	65.8(6)**
민간개인	75.4	6.1	19.6	100.0(276)	
가정	57.2	3.7	39.1	100.0(21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33〉 지원형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초과근무 안함	계(수)	$\chi^2(df)$
전체	32.6	31.7	35.7	100.0(733)	
인건비 지원	38.2	38.8	23.0	100.0(304)	
기본보조금 지원	34.0	25.3	40.7	100.0(324)	54.8(4)**
미지원	12.4	30.5	57.1	100.0(1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 차이는 국공립시설과 그 이외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비율이 국공립시설이 53.6%이고, 그 이외 시설은 26~32% 수준이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법인시설이 43.1%로 가장 높고 그 이외는 모두 약 29% 수준이다. 한편 국공립시설 17.0%, 법인 27.7%, 민간개인 44.2%, 가정 39.5%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IV-2-34 참조).

영아전담시설과 일반시설의 차이는 전담시설은 국공립시설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시설에 비하여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그 이외 시설은 상당수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시설에 비하여 그 비율은 오히려 높다. 이는 전담시설 교사의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34〉 시설유형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초과근무 안함	계(수)	$\chi^2(df)$
전체					
국공립	53.6	29.5	17.0	100.0(112)	45.1(6)**
법인	29.2	43.1	27.7	100.0(130)	
민간개인	26.4	29.3	44.2	100.0(276)	
가정	31.6	28.8	39.5	100.0(215)	
전담					
국공립	77.8	-	22.2	100.0(9)	na
법인	26.7	56.7	16.7	100.0(30)	
민간개인	32.1	43.4	24.5	100.0(53)	
가정	10.0	60.0	30.0	100.0(10)	
일반					
국공립	51.5	32.0	16.5	100.0(103)	40.8(6)**
법인	30.0	39.0	31.0	100.0(100)	
민간개인	25.1	26.0	48.9	100.0(223)	
가정	32.7	27.3	40.0	100.0(2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3) 대체교사

한편으로 <표 IV-2-35>는 보수교육, 출산휴가, 일반휴가 시에 대체교사를 고용하는 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정부 지원형태별로 차이를 보면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을수록 비해당 비율은 감소하지만, 대체교사 채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지원에 따라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출산휴가로 그런 사례가 없는 비해당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고 지원형태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건비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간의 격차 역시 크다.

〈표 IV-2-35〉 지원형태별 대체교사 고용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수교육			출산휴가			일반휴가			계(수)
	미고용	고용	비해당	미고용	고용	비해당	미고용	고용	비해당	
전체	25.0	27.0	48.0	10.0	26.3	63.7	40.2	7.4	52.4	(733)
인건비 지원	27.6	30.6	41.8	12.8	45.7	41.4	47.7	7.9	44.4	(304)
기본보조금 지원	24.7	26.2	49.1	7.4	14.8	77.8	37.7	8.0	54.3	(324)
미지원	18.1	19.0	62.9	9.5	5.7	84.8	26.7	3.8	69.5	(105)
$\chi^2(df)$	14.2(4)**			122.4(4)**			21.4(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은 출산휴가, 보수교육, 일반휴가의 순으로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이 높고 가정과 민간개인시설은 보수교육 시가 출산휴가 보다 고용비율이 더 높다. 이는 비해당이 높기 때문이다.

〈표 IV-2-36〉 시설유형별 대체교사 고용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수교육			출산휴가			휴가			계(수)
	미고용	고용	비해당	미고용	고용	비해당	미고용	고용	비해당	
전체										
국공립	26.8	35.7	37.5	11.6	59.8	28.6	55.4	10.7	33.9	100.0(112)
법인	29.2	23.8	46.9	13.1	40.0	46.9	49.2	5.4	45.4	100.0(130)
민간개인	26.1	27.2	46.7	8.3	17.8	73.9	41.3	5.4	53.3	100.0(276)
가정	20.0	24.2	55.8	9.3	11.6	79.1	25.6	9.3	65.1	100.0(215)
$\chi^2(df)$	13.0(6)*			124.6(6)**			40.6(6)**			
전담										
국공립	33.3	33.3	33.3	11.1	55.6	33.3	-	33.3	66.7	100.0(9)
법인	16.7	26.7	56.7	10.0	33.3	56.7	23.3	13.3	63.3	100.0(30)
민간개인	24.5	34.0	41.5	13.2	30.2	56.6	28.3	9.4	62.3	100.0(53)
가정	30.0	50.0	20.0	20.0	50.0	30.0	40.0	10.0	50.0	100.0(10)
$\chi^2(df)$	na			na			na			
일반										
국공립	26.2	35.9	37.9	11.7	60.2	28.2	60.2	8.7	31.1	100.0(103)
법인	33.0	23.0	44.0	14.0	42.0	44.0	57.0	3.0	40.0	100.0(100)
민간개인	26.5	25.6	48.0	7.2	14.8	78.0	44.4	4.5	51.1	100.0(223)
가정	19.5	22.9	57.6	8.8	9.8	81.5	24.9	9.3	65.9	100.0(205)
$\chi^2(df)$	21.8(3)*			137.6(6)**			53.4(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보수교육 시에는 전체적으로 상당수의 시설에서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은 시설유형별로 최저 법인 23.8%, 최고 국공립 35.7%이다. 전담시설과 일반시설의 차이는 가정보육시설이 더 크다. 이는 일반가정 시설의 규모가 작아서 타 교사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출산휴가의 경우는 시설유형 간의 격차가 크다. 비해당이라는 응답이 가정과 민간은 79.1%, 73.9%로 매우 높고 법인이 46.9%, 국공립 28.6%이다. 즉 민간개인과 가정시설에서 교사의 출산 허용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도 전담시설에 비해서 일반시설이 매우 높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반 휴가 역시 방학 등을 이용하여 대체교사가 필요한 시간을 만들지 않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비해당이라는 응답은 민간개인, 가정은 각각 53.3%, 65.1%이고, 법인과 국공립도 각각 45.4%, 33.9%로 비율이 낮지 않다. 전담여부별로는 가정을 제외한 3개 유형의 시설에서 모두 고용한다는 비율이 일반보육시설보다 높다. 영아전담 국공립시설이 특히 33.3%로 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고용 비율이 가장 높다.

라. 운영 관련 제도 실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 운영위원회의 실시 상태를 알아보았다.

1) 평가인증

먼저 평가인증은 정부 지원형태별로 보면 조사 시점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인건비 지원시설 63.8%로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19.6%, 그 이외 시설 6.7%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인건비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 간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표 IV-2-37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개인보육시설과 일반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전담보육시설이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특히 조사된 가정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이미 모두 평가인증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38 참조).

〈표 IV-2-37〉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단위: %(개소)

구분	2005년 받음	2006년 받음	평가 진행중	2007년 신청예정	2008년 신청예정	신청계 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4.4	14.5	14.9	10.9	23.3	19.6	12.4	100.0(733)
인건비 지원	9.9	28.6	25.3	11.8	15.5	5.3	3.6	100.0(304)
기본보조금 지원	.6	5.6	8.0	11.1	29.6	27.5	17.6	100.0(324)
미지원	-	1.0	5.7	7.6	26.7	37.1	21.9	100.0(105)
$\chi^2(df)$					255.1(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38〉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단위: %(개소)

구분	2005년 받음	2006년 받음	평가 진행중	2007년 신청 예정	2008년 신청 예정	신청 계획 없음	잘 모르 겠음	계(수)	$\chi^2(df)$
전체									
국공립	8.0	34.8	24.1	13.4	14.3	3.6	1.8	100.0(112)	201.5(18)**
법인	9.2	23.1	30.0	13.1	17.7	3.8	3.1	100.0(130)	
민간개인	2.5	8.0	11.2	8.7	27.2	27.5	14.9	100.0(276)	
가정	1.9	7.0	5.6	11.2	26.5	27.4	20.5	100.0(215)	
전담									
국공립	33.3	44.4	11.1	11.1	-	-	-	100.0(9)	na
법인	16.7	30.0	33.3	10.0	10.0	-	-	100.0(30)	
민간개인	11.3	26.4	18.9	7.5	15.1	13.2	7.5	100.0(53)	
가정	30.0	50.0	10.0	-	-	-	10.0	100.0(10)	
일반									
국공립	5.8	34.0	25.2	13.6	15.5	3.9	1.9	100.0(103)	210.3(18)**
법인	7.0	21.0	29.0	14.0	20.0	5.0	4.0	100.0(100)	
민간개인	0.4	3.6	9.4	9.0	30.0	30.9	16.6	100.0(223)	
가정	0.5	4.9	5.4	11.7	27.8	28.8	21.0	100.0(2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평가인증제도의 참여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의 55.2%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1.9%는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힘들어함을 알 수 있는데, 지원 형태별로 인건비, 기본보조금, 미지원의 순으로 힘들다는 비율이 낮다(표 IV-2-39 참조).

〈표 IV-2-39〉 지원유형별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어렵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55.2	31.9	12.9	100.0(692)	52.0(4)**
인건비 지원	40.8	39.5	19.7	100.0(299)	
기본보조금 지원	63.6	27.8	8.6	100.0(302)	
미지원	74.7	20.9	4.4	100.0(9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2) 재무회계 규칙 준수

다음으로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는 정부 지원형태별로 보면 익숙하게 잘 관리한다는 비율이 인건비 지원 시설 67.8%로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28.7%, 그 이외 시설 27.6%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인건비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표 IV-2-40〉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상태

단위: %(개소)

구분	익숙하게 관리	매우 불편	외부 도움 받아 관리	사용하지 않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4.7	34.9	13.1	6.7	.5	100.0(733)	132.9(8)**
인건비 지원	67.8	23.4	7.2	.7	1.0	100.0(304)	
기본보조금 지원	28.7	41.4	19.4	10.5		100.0(324)	
미지원	27.6	48.6	10.5	12.4	1.0	100.0(1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41〉은 시설유형 및 전담여부별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나타내는데, 전담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의 차이는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전담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에 비하여 익숙하게 잘 관리한다는 비율이 낮은 반면에 개인민간보육시설은 전담보육시설이 익숙하게 관리한다는 비율이 높다. 한편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비율이 법인 9.2%, 가정과 민간개인시설이 각각 16.7%이다. 특히 가정 전담시설 중 40%가 외부 도움을 받아서 재무회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익숙하게 관리	매우 불편	외부 도움 받아 관리	사용하지 않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국공립	84.8	11.6	1.8	0.9	0.9	100.0(112)	
법인	64.6	24.6	9.2	-	1.5	100.0(130)	154.8(12)**
민간개인	26.1	47.8	16.7	9.1	0.4	100.0(276)	
가정	35.8	36.7	16.7	10.7	-	100.0(215)	
전담							
국공립	77.8	11.1	-	-	11.1	100.0(9)	
법인	53.3	33.3	10.0	-	3.3	100.0(30)	na
민간개인	47.2	43.4	7.5	1.9	-	100.0(53)	
가정	30.0	30.0	40.0	-	-	100.0(10)	
일반							
국공립	85.4	11.7	1.9	1.0	-	100.0(103)	
법인	68.0	22.0	9.0	-	1.0	100.0(100)	156.4(12)**
민간개인	21.1	48.9	18.8	10.8	0.4	100.0(223)	
가정	36.1	37.1	15.6	11.2	-	100.0(2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그런데 재무회계규칙 준수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5.7%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지원시설보다는 미지원시설에서 어렵다는 응답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IV-2-42 참조).

〈표 IV-2-42〉 지원형태별 재무회계 규칙 준수의 어려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어려움	대체로 어려움	어렵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23.5	30.8	45.7	100.0(715)	
인건비 지원	10.6	22.2	67.2	100.0(302)	
기본보조금 지원	33.1	35.4	31.5	100.0(314)	104.2(4)**
미지원	32.3	42.4	25.3	100.0(9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다음 <표 IV-2-43>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를 나타낸다.

<표 IV-2-43> 지원형태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구성하였으나 운영 미약	구성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28.8	32.6	38.6	100.0(730)	318.0(4)**
인건비 지원	52.3	46.4	1.3	100.0(302)	
기본보조금 지원	12.7	24.7	62.7	100.0(324)	
미지원	10.6	17.3	72.1	100.0(104)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2-44>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구성하였으나 운영 미약	구성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전체	28.8	32.6	38.6	100.0(730)	360.6(6)**
국공립	60.9	37.3	1.8	100.0(110)	
법인	54.6	45.4	-	100.0(130)	
민간개인	23.3	40.4	36.4	100.0(275)	
가정	3.7	12.6	83.7	100.0(215)	
전담					
전체	45.1	52.9	2.0	100.0(102)	14.4(6)*
국공립	88.9	11.1	-	100.0(9)	
법인	56.7	43.3	-	100.0(30)	
민간개인	35.8	60.4	3.8	100.0(53)	
가정	20.0	80.0	-	100.0(10)	
일반					
전체	26.1	29.3	44.6	100.0(628)	331.1(6)**
국공립	58.4	39.6	2.0	100.0(101)	
법인	54.0	46.0	-	100.0(100)	
민간개인	20.3	35.6	44.1	100.0(222)	
가정	2.9	9.3	87.8	100.0(205)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1을, *는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부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은 62.7%, 미지원시설은 71.4%로 매우 높다. 단순한 구성뿐 아니라 이를 잘 운영한다는 비율은 인건비 지원시설 52.0%,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12.7%, 미지원 시설 10.6%로 인건비 지원시설과 그 이외 시설 간에 차이가 있다.

전담시설 여부별로는 법인시설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그 이외 유형의 시설에서는 모두 전담시설의 긍정적 운영 비율이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국공립과 법인시설이 유사하고 민간개인이 이에 미치지 못하며 가정시설은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유형간의 차이는 영아전담시설 여부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표 IV-2-44 참조).

3. 보육비용 지원

제3절에서는 보육료와 정부 재정 지원,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의견 등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보육료

현재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 상한선이 되고 있다. 16개 시·도 전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가로 정부 지원 단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3-1〉 지원형태별 연령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1	28	356	28	257	25	(733)
인건비 지원	357	24	309	31	254	27	(304)
기본보조금 지원	356	31	314	19	261	18	(324)
미지원	356	24	312	40	247	36	(105)
F	0.1		2.1		1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3-2〉 시설유형별 연령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전담	일반	
전체	356	360	355	311	317	310	257	263	256	(733)
국공립	348	361	344	303	317	302	249	262	247	(112)
법인	359	359	358	309	316	306	254	262	252	(130)
민간개인	355	361	350	312	317	310	258	264	257	(276)
가정	358	361	358	316	317	316	260	262	260	(215)
F		1.6			5.0**			5.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실제 보육시설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는 정부 지원형태나 시설유형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사 결과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보면 만2세아의 경우 미지원시설이 타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료가 다소 낮다(표 IV-3-1 참조).

또한 시설유형별로는 만1세아와 만2세아가 민간개인과 가정이 다소 높은 경향이 다(표 IV-3-2 참조).

다음으로 <표 IV-3-3>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보육료이다. 보육료 미지원 영아 보육료를 통하여 보육시설에서 수납하고 있는 기준 보육료와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보면 보육료 기준은 시설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0, 1세아는 다소 낮고 만2세아는 다소 높다.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3〉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보육료

단위: 천원(명)

구분	미지원 아동보육료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2.7	55.6	(201)	170.4	123.7	(733)
만 0세	325.8	69.9	(8)	163.2	127.2	(304)
만 1세	300.5	59.7	(61)	165.6	129.6	(324)
만 2세	271.9	49.5	(132)	177.9	117.2	(105)
F		8.6**			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3-4〉 연령별 지난 3개월 간 부모부담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활동(지불 영아)			특별활동 이외(지불 영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5	15.8	(106)	15.8	12.1	(201)
만 0세	30.0	12.7	(2)	12.7	6.4	(3)
만 1세	27.8	16.1	(30)	16.1	13.3	(57)
만 2세	33.1	15.8	(74)	15.8	11.8	(141)
F		1.1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한편, 특별활동이나 이외 부담하는 비용은 비용 지불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활동 비용 31,500원, 이외 비용 15,800원이다(표 IV-3-4 참조).

나. 정부의 재정 지원

1) 수입 중 정부 지원

〈표 IV-3-5〉는 보육시설의 총 수입 중 차등보육료,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비율을 나타낸다. 인건비 지원시설이 평균 67.3%이고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이 58.3%이며, 미지원 시설은 48.0%로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5〉 지원형태별 정부 지원금 비율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60.1	23.1	(733)	
인건비 지원	67.3	15.7	(304)	
기본보조금 지원	58.3	23.4	(324)	32.8**
미지원	48.0	32.0	(1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시설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일반 가정시설의 경우도 평균 56.0%를 기록하고 있다(표 IV-3-5 참조).

〈표 IV-3-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입 중 정부지원금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전담	일반
전체	60.6	74.0	58.4
국공립	64.8	70.6	63.8
법인	66.6	75.9	63.8
민간개인	59.0	73.8	56.0
가정	56.7	72.5	56.0
F	6.7(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2) 기본보조금의 유용성

다음은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형태인 기본보조금에 대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IV-3-7〉 시설유형 및 지역별 기본보조금 중 교사급여 인상분

단위: 천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F
전체	65.2	49.1	300	(326)	
시설유형					
민간개인	65.9	48.1	300	(169)	0.7
가정	64.5	50.1	200	(157)	
지역					
대도시	50.5	35.5	200	(125)	
중소도시	77.8	56.3	300	(160)	11.9**
읍면	61.0	41.9	150	(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표 IV-3-7〉은 기본보조금으로 인상된 교사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평균 65,200원으로 시설유형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대값은 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대도시 50,500원, 중소도시 77,800원, 읍면 61,000원으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2007년도 상승분의 50%를 교사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65,000원은 이러한 지침이 반영된 결과이다.48)

다음은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이후 보조교사, 취사부, 기타인력 등 보육인력에 충원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기본보조금의 지원으로 교사 인건비 이외 시설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표 IV-3-8>을 보면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중 35.0%는 기본보조금 지원 이후 인력을 충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교사 13.9%, 취사부 14.2%, 기타 10.5%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는 가정보육시설이 41.4%로 민간개인시설 29.0%보다 높은데, 인력별로는 보조교사와 취사부는 가정보육시설에서, 기타 인력은 민간개인보육시설에서 충원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이 영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인력을 충원하였다는 비율이 매우 낮다.

<표 IV-3-8> 시설유형 및 지역별 영아 기본보조금 수령 이후 보육인력 충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충원 있음	보조교사	취사부	기타 인력	(수)
전체	35.0	13.9	14.2	10.5	(325)
시설유형					
민간개인	29.0	11.3	7.7	11.3	(169)
가정	41.4	16.7	21.2	9.6	(157)
$\chi^2(df)$	5.5(1)*	1.9(1)	11.9(1)	0.2(1)	
지역					
대도시	36.0	15.3	15.3	12.9	(125)
중소도시	38.7	15.1	13.8	10.1	(160)
읍면	17.1	4.9	12.2	4.9	(41)
$\chi^2(df)$	6.8(2)*	3.2(2)	0.3(2)	2.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다. 보육료 및 재정 지원 관련 인식 및 의견

1) 기본보조금에 대한 부모 인식

<표 IV-3-9>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받는 지에 관한 부모의 인지 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용하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경우

48)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는 2007년에 0세 249천원에서 292천원, 1세 104천원에서 134천원, 2세 69천원에서 86천원으로 증가함. 0세아 43천원, 1세아 3만원, 2세아 17천원으로 반당 증가액은 각각 129천원, 150천원, 119천원임.

는 64.7%,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0.9%로 총 65.6%의 부모가 지급 여부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영아 연령별로는 영아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받는다는 비율이 높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낮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없고, 모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안다는 비율이 낮고 모른다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르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표 IV-3-9〉 이용 시설의 기본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부모 인지

단위: %(명)

구분	지원받고 있음	지원받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64.7	0.9	34.4	100.0(439)
연령				
만 0세	74.7	1.1	24.2	100.0(95)
만 1세	66.2	-	33.8	100.0(154)
만 2세	58.4	1.6	40.0	100.0(190)
모취업				
취업	65.6	0.5	33.9	100.0(183)
미취업	64.4	1.2	34.4	100.0(253)
모부재	33.3	-	66.7	100.0(3)
모학력				
고졸이하	71.4	-	28.6	100.0(175)
전문대졸	69.2	-	30.8	100.0(91)
4년제 이상	55.9	2.4	41.8	100.0(170)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68.9	1.4	29.7	100.0(74)
151~200만원	64.1	1.1	34.8	100.0(92)
201~250만원	67.3	-	32.7	100.0(49)
251~300만원	61.1	2.8	36.1	100.0(72)
301~350만원	69.7	-	30.3	100.0(33)
351~400만원	72.7	-	27.3	100.0(44)
400~500만원	56.6	-	43.4	100.0(53)
501만원 이상	54.5	-	45.5	100.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금액의 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지원받는 금액을 대략 알고 있다는 경우가 44.3%,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5%로 전혀 모름 21.3%에 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0 참조).

영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연령이 낮을수록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고 모르겠다는 비율은 낮아진다. 기본보조금 인지여부와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거의 없다. 모의 학력별로는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비율이 전문대 졸업이 가장 높은 변형된 컵 모양을 나타내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액을 정확하게 안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인데,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가 200~400만원인 가구보다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표 IV-3-10〉 기본보조금 지원 받는 경우, 비용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금액을 정확히 앎	대략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수)	$\chi^2(df)$
전체	34.5	44.3	21.3	100.0(287)	
연령					
만 0세	37.5	43.1	19.4	100.0(72)	3.8(4)
만 1세	37.3	46.1	16.7	100.0(102)	
만 2세	30.1	43.4	26.5	100.0(113)	
모취업					
취업	34.2	45.8	20.0	100.0(120)	
미취업	34.3	43.4	22.3	100.0(166)	na
모부재	100.0	-	-	100.0(1)	
모학력					
고졸 이하	37.0	40.2	22.8	100.0(127)	
전문대졸	47.7	36.9	15.4	100.0(65)	13.6(4)**
4년제 이상	21.3	55.3	23.4	100.0(94)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37.3	39.2	23.5	100.0(51)	
151~200만원	41.0	37.7	21.3	100.0(61)	
201~250만원	36.4	48.5	15.2	100.0(33)	
251~300만원	45.5	40.9	13.6	100.0(44)	26.0(14)*
301~350만원	39.1	47.8	13.0	100.0(23)	
351~400만원	28.1	59.4	12.5	100.0(32)	
400~500만원	16.1	45.2	38.7	100.0(31)	
501만원 이상	-	50.0	50.0	100.0(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2) 보육료 자율화 관련 의견

본 조사에서는 시설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자율화 시설 운영 및 이용 의견을 질문하였다.

먼저 시설장에게는 ‘보육시설 중에 ①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 ②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 ③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 상한선 이하를 받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 IV-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개인시설의 72.7%, 가정시설의 86.9%가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겠다고 응답하였고, 민간개인시설의 20.0%, 가정 시설의 8.3%가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율화하겠다는 응답은 현재 민간시설은 영아 기본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에 비하여 안 받고 있는 시설들의 비율이 약 2배 정도이지만 가정보육시설은 차이가 없다.

<표 IV-3-11> 시설유형 및 기본보조금 지원여부별 보육시설 운영 방향

단위: %(개소)

구분	기본보조금 받고 상한선 지킴	기본보조금 안 받고 보육료 자율화	기본보조금 안 받고 상한선 이하	잘 모르겠음	계(수)
민간개인					
전체	72.7	20.0	2.7	4.5	100.0(220)
지원	78.9	16.3	0.0	4.8	100.0(166)
미지원	53.7	31.5	11.1	3.7	100.0(54)
가정					
전체	86.9	8.3	2.9	1.9	100.0(206)
지원	88.5	8.3	1.3	1.9	100.0(157)
미지원	81.6	8.2	8.2	2.0	100.0(49)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3-12>는 부모조사에서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보육시설 중에 기본보조금을 받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90.9%로 대부분이었다.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따라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2.7%,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이하를 받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2.5%로 이는 잘 모르겠다 3.9%보다 낮은 수치이다. 영아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자율화 시설 이용 희망 비율이 다소 높고, 모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율화 시설 이용 희망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에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9%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부모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에 대한 이용 의사가 매우 낮아서, 시설장 의사와는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IV-3-12〉 앞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명)

구분	보육료 상한선 지키는 시설	보육료 자율화 시설	보육료상한선 이하인 시설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90.9	2.7	2.5	3.9	100.0(439)
연령					
만 0세	91.6	2.1	2.1	4.2	100.0(95)
만 1세	90.9	1.9	2.6	4.5	100.0(154)
만 2세	90.5	3.7	2.6	3.2	100.0(190)
모취업					
취업	91.8	3.8	2.2	2.2	100.0(183)
미취업	90.5	2.0	2.4	5.1	100.0(253)
모부재	66.7	-	33.3	-	100.0(3)
모학력					
고졸이하	90.3	1.1	2.9	5.7	100.0(175)
3년제	90.1	2.2	2.2	5.5	100.0(91)
4년제	92.4	4.7	1.8	1.2	100.0(170)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87.8	1.4	5.4	5.4	100.0(74)
151~200만원	93.5	-	2.2	4.3	100.0(92)
201~250만원	95.9	2.0	2.0	-	100.0(49)
251~300만원	90.3	4.2	1.4	4.2	100.0(72)
301~350만원	90.9	-	-	9.1	100.0(33)
351~400만원	95.5	-	-	4.5	100.0(44)
400~500만원	86.8	9.4	3.8	-	100.0(53)
501만원 이상	81.8	9.1	4.5	4.5	100.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IV-3-13〉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83.3	43.1	20	150	(12)	
만 0세	125.0	35.4	100	150	(2)	1.3
만 1세	66.7	28.9	50	100	(3)	
만 2세	78.6	46.7	20	150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한편, 만약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현재보다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 금액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8만 3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영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아 125,000원, 1세아 66,000원, 2세아 78,600원으로 0세아가 가장 많은 액수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3 참조).

이러한 의견은 유아 기본보조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3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 중 83.1%가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6.4%만이 가격이 자율화된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영아의 경우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유아도 추가로 더 부담이 가능하다는 금액은 75,000원 정도로 2세아 부모의 응답과 유사하였다.⁴⁹⁾

4. 정책시사점

보육시설 운영과 이용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이용 영아 특성과 이용행태를 보면 이용 시간 이원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조사에서 조사된 보육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은 69.0%이고 연령별로는 0세아는 82.0%, 만1세아 75.7%, 만2세아 66.6%로 집계되었다. 취업모 비율은 70% 정도인데 비하여 종일제 보육영아 비율은 그 1/2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

49)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은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의견은 대전 서구 26.5%, 평택시 35.2%, 해남군 8.3%로 부모 의견과는 크게 달랐다.

모라고 하여도 모두 종일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사실 아동 입장에서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용 이유에서도 0세아는 취업모 대리 양육 비율이 높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둘째, 영아와 유아 보육의 형태를 규제하거나 통일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보육시설의 보육시설 유형에서 시설장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형의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영아를 둔 부모들의 45.8%는 영아전담 시설, 25.7%는 영아 중심 시설, 28.5%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설장과 부모의 의견을 보면 보육영유아 구분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셋째, 보육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별활동과 취약보육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높아, 0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도 실시되고 있고, 특히 외국어를 한다는 비율이 13.2%로 가장 높다. 이러한 활동이 영아 발달과 부모 부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아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은 매우 낮고, 개별적 서비스 의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취약보육이 영아에 한정된 요구는 아니지만 보육시설이 다양한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의 투명성 등과 계속 연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차이로 보육비용에 차이가 있다.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0세아 75.2%, 만1세아 69.8%, 만2세아 67.7% 수준의 비용으로 아동을 보육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시설 교사의 64% 수준이고,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섯째, 미취업모 0세아 자녀의 짧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을 감안할 때 영아보육은 기본보조금 등 지원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여섯째,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인증, 운영위원회 운영, 재무회계규칙 등의 실시 비율이 낮아서 정부의 비용지원과 시설 운영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일곱째,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이 기본보조금 지원 시설인지를 인지하는 비율이 낮아,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덟째,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의 차이가 크다. 시설장의 20.0%가 자율화 시설로의 운영을 찬성하지만 부모들은 단지 2.7%만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육료 자율화 제도 도입 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들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아홉째,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최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시설장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최근 서비스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7개 항목 중 긍정적 응답이 50% 이상인 항목은 시설장은 6개였으나 부모 응답에서는 없었다. 즉, 기본보조금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하여 시설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는 낮다.

V. 가정내 보육 실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⁵⁰⁾가 사회 주요 이슈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정내 보육(in-home care) 제공자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어 왔다. 비혈연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이웃, 기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게 된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민간 비영리단체나 영리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가정내 육아지원에 관심을 갖고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제도권 보육정책은 아니지만, 엄연하게 아동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 비영리 및 영리 부분의 베이비시터 소개와 교육 등 가정내 보육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요구를 파악하며, 또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부모를 위한 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

제1절에서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와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 등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가정내 보육서비스 유형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체계로 정부가 실시하는 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비영리 및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아이돌보미, 보육도우

50)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유럽국가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넓게 정의될 수 있음(전병유 외, 2003). 이는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소극적인 빈곤자에 대한 급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급증하는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생산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음.

미,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등 지역사회 내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 배출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교육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중심적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평생능력개발 사업 중 하나로 주부 및 준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가정내 보육제공자 프로그램이다.⁵¹⁾ 이는 2주 과정으로 육아 돌보는 이 프로그램과 4주 과정의 영유아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노동부 지원으로 23개 지부에서 훈련기관을 추천받아 훈련비를 지원한다.

주부 및 준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우선고용직종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및 가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된다.⁵²⁾ 프로그램은 간병인, 산후조리사, 독서지도사, 가사보조원, 경비원, 미용보조원, 개호복지사 등 매우 다양하다. 2007년에는 135개 기관에 훈련을 위탁하고 있다.

육아돌보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관에서 위탁교육하고 있고, 1인당 64,000원이 지원된다. 교육대상은 심신이 양호하고 근로능력을 갖춘 주부 및 준고령자이다. 영유아생활지도는 실업자, 주부 및 준·고령자 등으로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이들 교육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표 V-1-1>과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훈련기관이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된다.

이 두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인원은 2007년 현재 육아 돌보는 이 430명, 영유아 생활지도사 227명이다. 2006년 실적은 다음 <표 V-1-2>와 같다. 산업인력공단 지원을 받는 교육 이외에도 단체별로 많은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고, 개인 베이비시터

51) 2주 과정의 산모와 신생아 돌보는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그 대상이 협소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함.

52) 실시 근거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서 실업자, 영세농어민 등에게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에서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노동부장관은 1개월이내 단기훈련 실시·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는 법 조항을 두고 있음.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 업체에서의 교육은 초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V-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 교육 현황

구분	육아 돌보는 이	영유아 생활지도
시간	(2주, 40시간)	(4주, 80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 육아돌보는 이의 필요성과 전망 ○ 육아돌보는 이의 역할과 자세 ○ 아동의 성장발달 이론 ○ 실무분야 ○ 아동의 건강관리 ○ 총체적 실습 ○ 자율편성(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 영유아 생활지도의 개념 및 목표 ○ 영유아 발달의 특징 ○ 영유아 문제행동의 관련 요인 ○ 효율적인 영유아 생활지도의 전략 ○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 영유아의 자아존중감 ○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 영유아의 공격성 ○ 영유아의 성교육 ○ 자율편성(20% 이내)
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육아카데미 등
인원 (2007)	430명	227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표 V-1-2〉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 교육 실적(2006)

단위: 명, %

구분	입교(A)	수료(B)	취업(C)	수료율(B/A)	취업률(C/A)
육아 돌보는 이	431	416	385	96.5	89.3
영유아 생활지도	324	305	257	94.1	79.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가) 사업 수행 및 관리

앞에서도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0세~만 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는 시간제 사업으로 월 120시간 이용이 원칙이다.

이 사업의 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사업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돌보미 및 이용회원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담당자 교육, 사업관리 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 양성 및 파견,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기관에 시달한 지도 및 감독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활동일지를 기간 내 제출 받아 보관하고, 매 격주마다 도우미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 가정의 의견을 청취, 도우미 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시 이를 반영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가정에 전화로, 연말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자원 봉사자, 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돌봄 현장 파견 및 점검, 면접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

2007년도 예산은 39억 5천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70%로 26억원이고, 지방비는 30%로 13억 5천만원이 지방비이다.

나) 아이돌보미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다. 돌보미 교육 시간은 일반이 40시간이며⁵³⁾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이다. 교육 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고,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 수당을

53) 교육내용은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발달의 원리이해, 영·유아 교육방법(동화구연, 미술 지도, 음악지도, 언어지도),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 지역사회네트워킹 및 사례실습, 가족지원 사례 면접실습, 육아상담 사례실습, MBTI를 통한 성격유형의 이해,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스타일,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의 역할과 기본업무 및 방문예절, 자녀의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자녀의 건강관리지원, 자녀의 식습관 지도방법, 부모교육: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 부모상담 기법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관리 사례토의, 아동 문제 행동과 육아지원 기술 사례 토의 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로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다.

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나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 받는 경우에 돌보미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이용 비용

부모가 부담하는 이용 비용은 저소득 가정(차상위 130%)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3시간까지 시간당 5,000원이며 그 이후는 4,000원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표 V-1-3〉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 간	아동 1명		아동 2명		비 고
	차상위 30%	일반	차상위130%	일반	
기본 2시간	2,000	10,000	3,000	15,000	▶ 회원 회비: 없음 ▶ 토, 일, 공휴일은 심야 시간(오후 9시 ~ 오전 8시) 요금 적용
기본 3시간	3,000	15,000	4,500	22,500	
추가시간당	1,000	4,000	1,500	6,000	
심야시간당	1,500	5,000	2,500	7,500	

라)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지침

아이돌보미는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 가정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며,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준수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이다. 지속적 서비스의 경우 활동일지는 7일 단위로 하고, 일시적인 서비스의 경우 3일 이내에 직접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센터 실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아이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돌보미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 사업 실적

2007년 사업실적은 7월 현재 누계가 건수로 2,389가정, 17,89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용 가정 중 45.3%가 차상위 이하 가구이고, 서비스 건별로는 57.8%가 저소득층의 저렴형 서비스이다.

〈표 V-1-4〉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및 연계 건수(2007. 7)

단위: 건

월별	신청 가정			신청 건수			연계 가정			연계 건수		
	저렴형	기본형	계	저렴형	기본형	계	저렴형	기본형	계	저렴형	기본형	계
누계	1,163	1,653	2,846	10,693	8,127	18,820	1,083	1,306	2,389	10,348	7,548	17,896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상반기 아이돌보미 사업실적.

3)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가) 사업 수행 및 관리

경기도가 2008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숙련된 전문보육교사를 영세아 가정에 파견하여 1:1로 영세아를 보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 유형을 '전담기관 관리 운영'과, '기존 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나누고 있다. 전담기관은 도내에 산재한 9개 보육정보센터를 말하며 기존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희망한 시설 중 시장군수가 선정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보육정보센터에는 사업관리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사업 참여 시설장에게는 월 30만원의 관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 예산은 총 5억9천180만8천원이다.

보육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세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의 정서를 고려하여 24개월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제·자매 중 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나) 가정보육교사 자격, 교육, 근무조건

가정보육교사의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주어진다. 도·시·군 보육정보센터는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를 선발하여 가정보육

교사 전문과정 40시간 교육 실시 후⁵⁴⁾ 현장에 배치한다. 경기도는 2008년에 370명을 예상하고 있다.

교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사에 대하여 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용 부모는 영세아의 상해 및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보육장소는 영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와 교사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 서도 가능하다. 보육시간 역시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용 비용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4) YMCA 아가야 사업

가정내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하거나 이용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는 매우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업인 아가야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업은 공간보육 참여자는 3년 기한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SK가 지원한다. 그러나 별도 베이비시터에 대한 지원은 없다.

가) 사업수행체계

YMCA에서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과 아가야사업을 통하여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과 아이들 사업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가야사업은 시간제 보육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에 베이비시터 파견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에 지원센터가 있고 전국 YMCA 16개 개소에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시간제 보육을 하고 동시에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한다. 파견사업 서비스는 영유아의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 안내시터, 방학과 노는 토요일 등에 체험활동 도우미 시터,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공기관 등 행사 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기관 파견 시터,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시터 등 다양하다.

54) 영아전문교육과정 교육 기 이수자는 제외함.

나)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베이비시터 참여자로서의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여성, 한부모, 실직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 여성, 30~40대 고졸 여성이다. 공간보육 참여자는 80시간의 교육을 하지만⁵⁵⁾, 일반 베이비시터 교육은 단기교육이다.

일반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회비를 사용한다. 회비는 월수입에 따라 다른데, 월수입 20만원 미만은 월 회비가 없고,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월 1만원, 월수입 50만원~90만원은 월 2만원, 월수입 90만원 이상은 월 회비 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가야에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care)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약관에 베이비시터 자격 상실 조항을 두어 베이비시터 정기모임(월1회)에 연속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베이비시터가 이용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제반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 불응하였을 경우, 약관에 있는 의무와 복무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로 재교육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와 태도가 불량할 경우, 베이비시터가 고객과 예약 약속을 해놓고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베이비시터의 승인절차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부모가 지불하는 이용 비용은 일반 베이비시터는 3%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이비시터의 수당이 된다. 한편 공간보육 참여자가 과건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 중 20~30%의 별도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다) 이용 비용

이용 비용은 아동수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에 16,000원이고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외 중일, 1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서비스별 비용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YMCA 스포츠센터 이용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55)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과정교육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표 V-1-5〉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

단위: 원

구분	시간	요금	비고
1명	기본 3시간	1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은 심야시간 적용 (심야 오후 10시~오전 8시) ▪ 일, 공휴일 휴무 ▪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 ▪ 할증요금 : 평일 아침 9시 이전, 저녁9시 이후 / 토요일 6시 이후 ▪ 일요공휴일-시간당(1명) 1,000원 추가 ▪ 교통비 : 아침 8시 이전 3,000원 밤11시 이후 5,000원 밤12시 이후 10,000원
	추가시간당	5,000	
	심야시간당	6,000	
	평일 8시간	41,000	
	1박	73,000	
쌍둥이	기본 3시간	19,000	
	추가시간당	6,000	
	심야시간당	7,000	
	평일 8시간	49,000	
	1박	83,000	
3명	기본 3시간	22,000	
	추가시간당	7,000	
	심야시간당	9,000	
	평일 8시간	57,000	
	1박	98,000	
월급제	월-금(오전9시~오후6시)	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아이 1명당 100,000 ▪ 추가 쌍둥이 1명당 150,000
	월-토(오전9시~오후6시)	1,000,000	

라) 활동 및 지침

베이비시터 약관을 정하여 아가야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약관 제5조 베이비시터의 의무와 복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가정에 방문할 경우 아가야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시작 1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베이비시터 섭외 시 결정된 금액 외에 팁이나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면접을 보거나 시터로 활동하는 동안 센터에 대한 불평이나 이용금액에 대한 불평을 하여서는 안 되며, 베이비시터는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센터 및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근무 중 무단이탈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마) 책임과 의무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

는다.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으로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센터도 도우미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바) 사업 실적

2006년 8월부터 실시한 전국 16개 아가야에서 2007년 9월까지 추진한 사업 실적은 유료 이용인원은 공간보육 30,711명, 파견보육 6,275명이다. 공간보육은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무료 이용자가 5,023명이다.

5)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가) 사업수행체계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은 실직여성을 보육도우미로 교육하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보육부담 경감으로 간접적인 소득지원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어 저소득 135 가구에 무료 가정보육사가 파견된다.

보육도우미 파견가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영아보육서비스와 야간보육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전자는 영아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 귀가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사업에는 파견에 그치지 않고 수혜가구와 1:1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등 지역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나)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보육도우미는 실직여성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훈련생 모집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만 첨부하면 된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신입교육시간은 80시간 교육, 1박 2일의 24시간 MBTI 교육, 현장실습 40시간으로 총 144시간이다.⁵⁶⁾

월 1회 보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월례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도우미 급여는 2007년에 영아보육도우미의 경우 시간급 3,503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28,759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674,710이 실 수령액에 된다. 야간도우미는 시급 5,300원으로 최대 6시간을 일하면 699,600원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개 보험료를 제하면 실 수령액이 651,072원이 된다.

쌍둥이, 연년생 등 중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1명 추가될 경우 월 1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아이 한명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와 간단한 보살핌이 필요한 큰 아이가 추가될 경우 월 5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시간은 영아보육도우미는 오전 8시 이후 하루 8~11시간⁵⁷⁾, 야간보육도우미는 4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영아보육도우미는 3대 보험에 가입하고, 야간보육도우미는 희망자에 한해 3대 보험에 가입한다. 보육도우미에 대해 기관에서 단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배상의 범위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하여 아이가 다쳤을 경우 적용되도록 한다.

영아보육도우미는 월 1회 유급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차휴가 시 대체인력 마련은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 지급은 없다. 병가, 경조사 휴가는 유급휴가로 하고 단체에서는 수혜자에게 대체인력을 파견한다.

56) 교육 내용은 인간관계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이해, 영유아기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이해, 영유아 놀이지도(언어, 음율 지도), 돌봄노동 사회화와 조직화의 필요성, 직업인의 자세,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과의 대화법, 문제 행동에 따른 이해와 대응, 방과후 아동지도 및 학습, 생활지도 프로그램 짜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종이접기, 풍선아트 동화구연 등), MBTI를 통한 자존감 향상 훈련,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돌봄,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만들기 및 식단 짜기,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부모교육훈련, 빈곤가정에 대한 이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사회(아동)복지의 역사, 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 등임.

57)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급에서 제외함.

다) 이용 비용

보육도우미 이용은 무료이다. 보육도우미 수당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라) 활동 및 지침

보육도우미 기본 활동은 아이 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돌봄은 우유나 이유식 먹이기, 목욕과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잠재우기 등이며, 건강 돌봄은 젓병 소독, 병원 또는 보건소 가기, 약 먹이기, 예방접종하기 등이고, 정서 돌봄은 음악, 동화책 읽어주기, 연령별 놀이지도, 언어발달 지도 등이고 이외에 아기용품정리와 아기 옷 빨래가 포함된다.

보육도우미는 매일 가정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 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마) 사업 성과

6개 사업 지역에서 조사된 132명의 도우미 중 영아보육도우미 이용이 60명, 야간보육도우미 이용이 72명이었다. 이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영아보육도우미와 야간보육도우미 파견 이후에 성과에 대하여 부모와 보육도우미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을 보면 부모와 도우미 모두 도우미 파견 이후 아동의 식습관, 건강, 성격 밝아짐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아동 치료 및 초등학교 성적 개선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1-6〉 보육도우미 파견이후 아동 변화

단위: %(명)

구분	도우미평가				부모평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계(수)
식습관	57.8	39.8	2.4	100.0(127)	51.9	45.0	3.1	100.0(129)
건강	56.3	38.3	5.5	100.0(128)	54.3	41.9	3.9	100.0(129)
성격 밝아짐	65.9	31.8	2.4	100.0(129)	65.1	31.8	3.1	100.0(129)
치료	57.1	28.6	14.3	100.0(21)	60.0	26.7	13.3	100.0(30)
성적 향상	40.5	45.9	13.5	100.0(37)	28.6	42.9	28.6	100.0(35)

자료: 서문희 외(2007). 저소득층 대인보육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미발간).

한편 보육도우미는 도우미 활동 이후 전문 가정보육사로서의 자부심, 일의 즐거움, 행복감 증대, 가정 화목 증대의 4가지 요인으로 개인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정보육사로 자부심이 생겼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53.9%이다.

〈표 V-1-7〉 보육도우미 활동 이후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계(수)
자부심	53.9	43.0	1.6	1.5	100.0(128)
일의 즐거움	48.8	48.8	2.4	-	100.0(127)
행복감 증대	50.4	44.9	2.4	2.4	100.0(127)
가정 화목	38.6	51.2	2.4	7.9	100.0(127)

자료: 서문희 외(2007). 저소득층 대인보육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미발간)

6) 영리 유형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종의 벤처기업의 한 유형으로 가정내 보육인 제도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영리사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 베이비시터 파견 업체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베이비시터 소개업을 하는 업체는 104개소이고,⁵⁸⁾ 이 중 업체 업무 중 베이비시터업의 비중이 10% 이상인 업체는 93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들 회사는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 교육과정, 베이비시터와 아동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없고, 시터를 근로자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확보되고 있지 않다. 베이비시터에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소득공제 등 간접적 조세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서 저출산대책의 관점에서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 베이비시터 회사 법적 근거

근로와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베이비시터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용자

58) 인터넷에서 검색된 업체는 모두 192개소였으나 이중 상당수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

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베이비시터 파견업과 관련된 현행 법규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을 들 수 있다.

현행 법규상 방문탁아 회사 설립자는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⁵⁹⁾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방문탁아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베이비시터 소개업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문탁아 사업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키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⁶⁰⁾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 받게 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개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⁶¹⁾ 조건을 갖추고 신청서, 사업자 및 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된다. 법인이 사업소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는 사업소마다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9)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를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사업자는 개인, 법인 등에 모두 적용됨.

60) 직업안정법에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음.

61)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 2인 역시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사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직업상담원은 사업소마다 1명을 두어야 함.

〈표 V-1-8〉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사업자 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계(수)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57.0	43.0	37.6	62.4	100.0(93)
본사	100.0	-	71.4	28.6	100.0(14)
가맹점	44.3	55.7	28.6	71.4	100.0(70)
단독	88.9	11.1	55.6	44.4	100.0(9)
$\chi^2(df)$	18.9(2)*		10.5(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1-8〉은 파악된 93개 베이비시터 회사들의 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를 나타낸다. 조사된 업체 본사 중 100.0%, 가맹점 중 44.3%, 단독업체는 88.9%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본사 중 71.4%, 가맹점 중에서는 28.6%만이 유료 직업 소개업으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1-5 참조).

또한 법 제22조에서는 금지조항은 두어 직업소개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⁶²⁾

직업소개 대상으로 법 제21조의3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베이비시터 소개업을 하는 경우 18세 미만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서비스 유형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시간제 베이비시터 전문업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홈 아웃 소싱 성격의 포괄적인 인력 파견을 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일반 탁아 이외에도 장애아동 탁아, 소풍 및 탐방탁아, 간호탁아 등이 있고, 장소도 아동의 가정뿐 아니라 호텔 및 콘도로 시터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한 백화점이나 공연장, 운전연습장

62)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직업안정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등에서 고객에 대한 부가적 서비스로 마련된 탁아놀이방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 사업으로 생일파티, 장난감 파티 등의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아동조기 영어교육방법의 일환으로 영어시터에 의한 탁아가 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오피어와 같이 영어권의 외국인을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서 아동을 돌보면서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몇 업체에서는 자녀관찰 시스템을 개발하여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베이비시터 업체의 서비스는 예약제를 원칙으로 제공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설립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업체 중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가 상당수이다. 현재 베이비시터 업체간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다) 베이비시터 자격, 교육 및 근무조건

베이비시터의 정해진 자격 조건은 없다.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정도이다. 건강진단서를 월 2회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베이비시터 교육은 회사마다 다른데 최소 3시간에서 최장 40시간까지 업체별로 편차가 크다(표 V-1-9 참조).

〈표 V-1-9〉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14.0	9.4	3	40	(93)	1.0
본사	16.5	10.8	4	40	(14)	
가맹점	13.9	9.0	3	40	(70)	
단독	10.9	9.8	3	35	(9)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베이비시터는 회사 소개로 개인이 고용하는 형태의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용료 중 대체로 10%를 제한 금액이 베이비시터의 수입이 된다.⁶³⁾

63)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하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아동 상해보험 범위에서만 회사가 책임지고 그 이외는 모두 베이비시터의 책임이다. 회사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다.

라) 이용 및 비용

시터 비용은 이용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시간제는 대부분이 최소 3~4시간 당 기본요금을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추가 요금을 받고 있으며, 아동수, 보육시간 등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증이 적용된다.

베이비시터 회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소 이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최소 4,000원에서 최대 8,300원 정도를 받고 있어 평균 6,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 이후에는 시간당 평균 5,000원이 추가된다.

〈표 V-1-10〉 베이비시터 최소 이용시간의 시간당 요금 평균

단위: 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6,147.0	657.9	4,000	8,330	(93)	
본사	6,370.2	853.4	5,000	8,330	(14)	2.4
가맹점	6,111.9	564.6	5,000	7,330	(70)	
단독	5,916.7	889.8	4,000	6,670	(9)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마) 활동 지침

대부분의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활동 시 유의사항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 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 가정에 방문할 경우 업무시작 1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베이비시터 섭외 시 결정된 금액 외에 팁이나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베이비시터는 근무 중 무단이탈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드려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전화 무분별한 사용 금지, 부모 허락 없는 아동 동반 외출, 아이 혼자두기 금지, 판매 알선 행위 금지 등이다.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1997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업 요금을 기준으로 베이비시터에 적용하여 요금은 지급임금의 10%이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바) 책임과 의무

대부분 베이비시터 회사에서는 베이비시터 약관과 부모 회원 약관을 두고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 약관 내용은 주로 회원 가입비 및 시터 비용, 부모의 의무 및 이용규칙, 업체의 책임을 담고 있고 회사에 따라서 항변권, 분쟁 시 처리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약관으로 의무 사항은 몇 가지 정하고 있다. 위임사항 및 업무관리, 근무 시 준수사항, 자격상실, 서비스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 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의 특성

1) 특성

그러면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베이비시터 회사나 비영리단체에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베이비시터 연령을 보면 최소 21세 최대 60세로 연령의 폭은 매우 크지만 평균이 44.7세로 40대에 집중되어 있다(표 V-1-11 참조).⁶⁴⁾

〈표 V-1-11〉 조사된 베이비시터 연령

단위: 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44.7	8.4	21	60	(364)	
비영리	43.1	6.2	28	58	(94)	5.1*
영리	45.3	9.1	21	60	(27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64)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연령도 40대 43.4%, 50대 이상 38.8%로 대부분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V-1-12〉 회사 등록 베이비시터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

단위: %(명)

구분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미혼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0.9	8.6	3.5	6.1	5.6	6.0	(93)
본사	87.9	13.6	7.4	12.9	4.6	5.8	(14)
가맹점	91.2	7.6	2.7	3.5	6.1	6.2	(70)
단독	92.8	5.7	3.9	4.2	3.3	4.3	(9)
F	1.1		3.7		1.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또한 베이비시터는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시터의 연령이 대부분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채용 시 육아 경험 여부가 중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V-1-12 참조).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도 참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중 78.2%가 자녀 양육경험이 있고 그 이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베이비시터 회사에 등록된 시터의 학력은 87.4%가 고졸이상이며 대학 입학 이상이 33.6%이다. YMCA 아가야와 영리 회사의 차이는 YMCA 베이비시터가 다소 학력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V-1-13 참조).

〈표 V-1-13〉 베이비시터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중퇴)졸	4년제		계(수)	$\chi^2(df)$
				대학(중퇴)졸	이상		
전체	12.6	53.8	18.6	15.0	100.0(381)		
비영리	9.3	54.6	22.2	13.9	100.0(108)	2.5(3)	
영리	13.9	53.5	17.2	15.4	100.0(273)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셋째로 베이비시터로 활동 중인 인력의 자격을 보면, 이들의 학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 반하여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등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약 20% 정도 된다. 시터회사 조사와 베이비시터 조사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리 및 비영리 등 소개 주체별 차이도 거의 없다(표 V-1-14 참조).

또한 베이비시터에 등록된 시터 중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2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표 V-1-15 참조).

〈표 V-1-14〉 조사된 베이비시터 보육 관련 자격

단위: %(명)

구분	없음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기타	계(수)
전체	79.9	13.8	2.6	1.3	1.3	0.5	0.5	100.0(378)
비영리	79.2	18.9	0.9	-	0.9	-	-	100.0(106)
영리	80.1	11.8	3.3	1.8	1.5	0.7	0.7	100.0(2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1-15〉 회사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의 공공기관 자격 관련 교육 경험자 비율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0.6	25.9	0	100	(93)	
본사	37.5	34.4	0	100	(14)	4.1*
지점	18.4	23.6	0	90	(70)	
직업소개소	11.4	18.5	0	6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 시터 활동 및 만족도

베이비시터 회사 및 비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베이비시터로서의 활동 경력은 최소 1개월에서 120개월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평균 21.3개월이다. 비영리 기관과 영리회사간 소속 베이비시터의 활동 경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의 베이비시터는 활동경력이 평균 24.6개월임에 반해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평균 11.7개월의 활동경력으로 1년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최대 활동경력에 있어서도 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는 72개월에 불과해 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와 약 4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베이비시터가 영리기관의 사업으로서 역사가 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V-1-16 참조).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기 이전의 직업에 관한 문항에서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경우가 31.6%이며, 보육교사·학습지 교사, 이외 아동양육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5%에 불과해 약 70%의 베이비시터가 현 베이비시터 업무에서의 경력이 아동양육 관련한 유일한 경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17 참조).

〈표 V-1-16〉 베이비시터 활동 경력

단위: 개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1.3	17.6	1	120	(364)	
비영리	11.7	10.4	1	72	(94)	41.1**
영리	24.6	18.4	1	120	(27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1-17〉 베이비시터 이전 직업

단위: %(명)

구분	가사도우미	학습지교사	보육교사	이외 아동양육에 관련된 직업	아동양육과 무관한 직업	없음	계(수)	$\chi^2(df)$
전체	4.2	5.8	11.8	12.9	33.7	31.6	100.0(380)	
비영리	1.9	2.8	13.1	16.8	32.7	32.7	100.0(107)	6.3(5)
영리	5.1	7.0	11.4	11.4	34.1	31.1	100.0(273)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53.5%,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6.5%이었다. 영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와 비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간에 차이가 있어 비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가 요금을 좀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V-1-18 참조).

〈표 V-1-18〉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베이비시터 의견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53.5	46.5	100.0(274)	
비영리	63.4	36.6	100.0(101)	5.4(1)*
영리	49.8	50.2	100.0(27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요금의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이용 요금 수준은 시간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으로 편차가 큰 편이었고 평균적으로 약 7,000원을 시간당 적정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인식하는 시간당 적정 수당과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아이돌보미도 수당으로는 시간당 7,000원을 지정한 비율이 39.7%로 가장 많았다(표 V-1-19 참조).

〈표 V-1-19〉 시간당 적절 요금에 대한 베이비시터 의견

단위: %(명), 원

구분	30,000	4,000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8,000	10,000	모름	계(수)	평균
베이비시터													
전체	0.6	0.6	8.0	0.6	35.1	2.3	26.4	1.7	10.3	14.4	-	100.0(174)	6,971.3
영리	2.7	-	8.1	-	21.6	2.7	51.4	2.7	8.1	2.7	-	100.0(37)	6,675.7
비영리	-	0.7	8.0	0.7	38.7	2.2	19.7	1.5	10.9	17.5	-	100.0(137)	7,051.1
아이돌보미	-	4.5	24.6	-	24.6	-	39.7	-	-	-	6.6	100.0(17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현재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한 활동의 만족도 및 이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불만족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 등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비영리 기관 소속과 영리 사업체 소속의 베이비시터에 차이가 있어 영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표 V-1-20 참조).

〈표 V-1-20〉 베이비시터 활동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수)	$\chi^2(df)$
전체	10.2	41.3	43.6	4.7	0.3	100.0(383)	
비영리	6.5	36.1	50.0	6.5	0.9	100.0(108)	8.0(4)
영리	11.6	43.3	41.1	4.0	-	100.0(275)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구체적으로 흥미나 적성에 맞아서가 베이비시터 업무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밖에 시간활용, 보람이 다음 순위를 보였다(표 V-1-21 참조).

반면 불만족하는 경우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이유이며, 불규칙한 근무, 식사문제, 잡무 요구, 부모로 인한 불편 등이 불만족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베이비시터 소속 기관의 유형별로 만족 이유와 불만족의 이유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리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 흥미나 적성에 맞거나 시간 활용 면에서 좋은 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점에 만족의 이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비영리 기관 소속의 베이비시터는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 뿐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 및 자기계발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영리 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는 업무 성격 자체로부터 주로 만족을 얻고 있는데 반해 비영

리기관 소속 베이비시터는 업무 자체 이외에도 소속된 기관으로부터도 자부심과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V-1-21 참조).

〈표 V-1-21〉 베이비시터의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만족			구분	불만족		
	전체	비영리	영리		전체	비영리	영리
흥미적성	35.3	29.6	39.0	낮은 급여	38.2	21.4	43.9
시간활용	19.1	7.4	26.8	불규칙한 근무	16.4	21.4	14.6
보람	11.8	-	19.5	잡무요구	9.1	14.3	7.3
보수교육	2.9	-	4.9	부모 불편	5.5	7.1	4.9
근무시간 유동적	7.4	11.1	4.9	식사문제	12.7	-	17.1
기관신뢰도	7.4	18.5	-	기타	18.2	35.7	12.2
자기계발	7.4	18.5	-	계(수)	100.0(55)	100.0(14)	100.0(41)
기타	8.8	14.8	4.9				
계(수)	100.0(68)	100.0(27)	100.0(4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불만족의 이유에서 영리업체 소속 베이비시터는 대체로 낮은 급여에 불만이 집중되어 있고 식사문제나 근무의 불규칙성이나 잡무, 부모로 인한 불편 등의 사유는 현저히 낮게 나타남에 반해 비영리 기관 소속 베이비시터는 낮은 급여 뿐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도 같은 수준의 불만 사유가 되고 있고 이외 잡무나 부모로 인한 불편 등도 비교적 크게 느끼고 있는 등 소속 기관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가.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본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에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서는 친조부모 47.1%, 외조부모 37.8% 순으로 높고, 나머지 친인척이 아닌 대리양육인의 이용비율은 10%로 조사되었다.

영아 연령으로 구분해 보면 0세아는 이웃 탁아모나 시터의 비율이 다소 높고, 비혈연을 이용하는 부모는 모두 취업모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시터나 이웃 탁아모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V-2-1〉 연령별 가정에서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가정부, 파출부	파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웃 탁아모 등	계(수)
전체	47.1	37.8	4.2	-	2.5	8.4	100.0(119)
연령							
만 0세	43.3	40.0	3.3	-	3.3	10.0	100.0(30)
만 1세	51.9	35.2	3.7	-	1.9	7.4	100.0(54)
만 2세	42.9	40.0	5.7	-	2.9	8.6	100.0(35)
모취업							
취업	49.0	33.7	4.8	-	2.9	9.6	100.0(104)
미취업	16.7	83.3	-	-	-	-	100.0(12)
모부재	100.0	-	-	-	-	-	100.0(3)
모학력							
고졸이하	42.9	50.0	3.6	-	-	3.6	100.0(28)
3년제대학	52.4	42.9	-	-	-	4.8	100.0(21)
4년제대학	44.8	32.8	6.0	-	4.5	11.9	100.0(67)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66.7	22.2	-	-	-	11.1	100.0(9)
151~200만원	20.0	80.0	-	-	-	-	100.0(5)
201~250만원	33.3	66.7	-	-	-	-	100.0(6)
251~300만원	43.8	50.0	-	-	-	6.3	100.0(16)
301~350만원	38.5	46.2	7.7	-	-	7.7	100.0(13)
351~400만원	35.0	50.0	5.0	-	-	10.0	100.0(20)
400~500만원	53.3	26.7	3.3	-	3.3	13.3	100.0(30)
501만원 이상	60.0	15.0	10.0	-	10.0	5.0	100.0(2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결과이다. 2004년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는 9.6%이었고 전체 아동으로는 약 3% 수준이었다. 또한 노동부가 2005년에 영아를 둔 직장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가사대리인’은 9.4%로 나타났다.

최근의 유사한 조사 자료로는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⁶⁵⁾ 자료가 있다. <표 V-2-2>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의 개인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전체 영아 중 혈연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부모 22.9%, 기타 친인척 3.7%, 탁아모 등 비혈연이 1.5%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2005년 자료는 앞에서 제시한 2004년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65)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3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 시기는 6월 19-28일 10일간임.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2〉 사회통계조사 결과 개인 보육서비스 아동 비율

단위: %, 명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영아 전체
조부모	22.2	25.0	21.4	22.9
기타 가족 친인척	4.5	3.5	3.3	3.7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수)	1.3 (713)	2.3 (925)	1.0 (889)	1.5 (2,527)

자료: 통계청(2005). 2005년 사회통계조사 원자료.

〈표 V-2-3〉 미취학 이용 영아의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기관 미이용 아동		기관 이용 아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5	25.3	37.5	25.4	(93)
본사	56.9	32.2	43.1	32.2	(14)
가맹점	61.2	24.5	38.8	24.5	(70)
단독	80.0	10.0	18.9	9.9	(9)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다음은 서비스 중복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영아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이러한 서비스만 이용하는 영아도 있고 기관과 함께 이용하는 영아도 있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고에서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미취학 영아 중 37.5% 가량만이 기관을 이용하며 62.5% 정도는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동이었다(표 V-2-3 참조).

나. 이용 이유

〈표 V-2-4〉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장 주된 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영아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 36.7%,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43.2%로 주를 이루었다. 영아의 모가 유아 모에 비하여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한편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즉 집안 일로 바쁘거나 평소 자녀를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몸이 불편할 때는 각각 6.2%, 5.8%, 4.0% 정도로 낮게 응답되었다.

〈표 V-2-4〉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몸이 불편할 때	집안일로 바쁠 때	취미, 등 외출 등 사회활동 때문에	평소 돌보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0	6.2	39.4	5.8	38.7	5.8	100.0(274)	
3세 미만	2.9	4.3	36.7	5.8	43.2	7.2	100.0(139)	4.6(5)
3세 이상	5.3	7.6	41.7	6.1	34.8	4.5	100.0(132)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2-5〉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야근, 출장 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개인 활동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 때	집안 행사 시	무응답	계(수)
비율	41.5	15.3	14.2	11.2	4.4	13.4	100.0(32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시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는 이용하는 부모들의 이용 이유로 야근과 출장 시가 41.5%로 가장 많고 이외 아이가 아플 때, 양육자의 개인 활동,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 때, 집안행사 시 등이다(표 V-2-5 참조). 이 같은 결과를 베이비시터 이용 이유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시간제에 한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베이비시터보다는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자녀 돌봄의 요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는 응답과 집중적인 보육을 원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제 보육시설이 주변에 없다는 응답과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V-2-6 참조).

〈표 V-2-6〉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제 보육시설 없음	아이의 부적응	보육시설 불신	집에서 돌보기 위하여	집중적 보육을 위하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8.6	9.1	6.5	45.7	21.0	9.1	100.0(186)	
3세 미만	2.3	6.9	4.6	52.9	25.3	8.0	100.0(87)	12.5(5)*
3세 이상	14.3	10.2	8.2	39.8	17.3	10.2	100.0(98)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이용 시간

조부모나 비혈연 등 개인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평일에 일정하게 돌본다는 비율이 90.8%로 대부분이고, 필요 시 간헐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는 9.2%로 낮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는 거의 없다.

조부모나 비혈연 자녀를 돌보는 경우 평균 1주일 동안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68시간까지 평균 52.5시간을 돌본다고 산출하였다. 중소도시는 51.2시간으로 대도시 53.2시간에 비해 약간 짧으나 큰 차이는 없다.

〈표 V-2-7〉 조부모나 비혈연이 자녀를 돌보는 형태

단위: %(명)

구분	평일 일정하게	필요 시 간헐적으로	계(수)
전체	90.8	9.2	100.0(119)
만 0세	96.7	3.3	100.0(29)
만 1세	94.4	5.6	100.0(54)
만 2세	80.0	20.0	100.0(3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V-2-8〉 조부모나 비혈연이 평균 1주일 자녀를 돌보는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52.5	33.4	10	168	(118)	
만 0세	72.2	43.8	18	144	(29)	8.0**
만 1세	47.4	26.9	10	120	(54)	
만 2세	43.4	25.3	10	3	(3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라. 비용

다음 <표 V-2-9>는 본 연구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지불을 하는 지 여부와 지불하는 경우 그 액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63.9%, 지불 안 함 32.8%, 비정기적 지불이 3.4% 순으로 대도시에서는 72.0%의 높은 비율로 정기적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7%로 높아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50.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불하는 경우, 지불하는 액수는 월평균 40만 300원으로 최소 7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타난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평균 지불 액수의 차이는 약 8천원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

<표 V-2-9> 대리보육인 비용 지불 형태

단위: %, 천원(명)

구분	지불여부 및 형태				지불 시 지불액수				
	정기적 지불	비정기적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63.9	3.4	32.8	100.0(119)	400.3	222.5	75	1000	(80)
만 0세	66.7	6.7	26.7	100.0(30)	380.9	213.3	100	1000	(22)
만 1세	70.4	1.9	27.8	100.0(54)	387.1	227.5	75	1000	(39)
만 2세	51.4	2.9	45.7	100.0(35)	450.0	226.7	100	1000	(19)
F	na						0.6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표 V-2-10> 대리보육인 비용 지불 형태

단위: %,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400.3	222.5	75	1000	(80)	9.3**
친조부모	338.6	172.9	75	800	(33)	
외조부모	347.7	175.9	100	900	(31)	
친인척	666.7	305.5	400	1000	(3)	
파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866.7	152.8	700	1000	(3)	
이웃탁아모 등	547.0	235.7	120	1000	(1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개인 보육서비스 제공자별 차이를 보면 조부모는 평균 34만원 정도이고 친인척은 67만원 수준이며 베이비시터와 같은 파견도우미는 87만원, 이웃 탁아모는 55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동부(2005)가 조사한 영아를 보육하는 직장여성의 경우 아이를 본인이 키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육을 부탁하는 경우 월평균 보육비용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482,000원, 가사대리인에게는 659,000원, 보육시설에는 327,000원이다. 아이를 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에는 0원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월평균 보육비용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가사대리인의 경우에는 최저 40만원 이상이었다. 2007년 본 조사에 비하여 부모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소 높게 산출되었다.

마. 만족도

<표 V-2-11>은 2007년도 조사 자료로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인데, 전반적인 만족도 외에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시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88.6%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 정도였다. 한편 불만족스럽다는 경우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2-11>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계(수)
전체	46.2	42.4	11.4	100.0(273)
3세 미만	48.6	39.9	11.6	100.0(138)
3세 이상	44.3	44.3	11.5	100.0(131)

주: 불만족은 보기를 주었으나 응답이 없었음.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표 V-2-12>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문성				성실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계(수)
전체	36.4	59.2	4.4	100.0(272)	49.1	49.1	1.8	100.0(271)
3세 미만	39.9	55.1	5.1	100.0(138)	50.4	47.4	2.2	100.0(137)
3세 이상	32.3	63.8	3.8	100.0(131)	48.5	50.0	1.5	100.0(13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보다 다소 높다. 대체로 유아보다는 영아 부모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V-2-12 참조).

바.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제도화 관련 의견

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정보육서비스 인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로 높았고, 필요하지 않다 16.4%, 잘 모르겠다 10.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필요하다 76.6%, 필요하지 않다 19.3%, 잘 모르겠다 4.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즉, 응답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표 V-2-13 참조).

〈표 V-2-13〉 연도별 영아 부모의 가정파견 보육도우미 제도의 필요도

단위: %(가구)

구분	필요	불필요	잘 모름	계(수)
2007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73.2	16.4	10.3	100.0(882)
2004 가정보육교사	76.6	19.3	4.1	100.0(1,0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서문희 외(2004). 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V-2-14〉는 2007년 조사 결과를 아동과 부모 특성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아동연령과 모 취업은 통계적 유의도가 없고,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유의하다. 모의 학력별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 65.8%, 3년제 대학 72.2%, 4년제 대학 81.3%의 순으로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하에서는 다소 혼선을 보이거나 그 이상에서는 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V-2-14〉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 제도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필요함	불필요함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73.2	16.4	10.3	100.0(882)	
연령					
만 0세	75.7	13.1	11.3	100.0(222)	3.4(4)
만 1세	72.2	16.8	11.0	100.0(327)	
만 2세	72.7	18.3	9.0	100.0(333)	

(표 계속)

구분	필요함	불필요함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모취업					
취업	73.2	14.5	12.3	100.0(235)	
미취업	73.4	17.3	9.3	100.0(643)	na
모부재	50.0	-	50.0	100.0(4)	
모학력					
고졸이하	65.8	22.6	11.6	100.0(336)	
3년제	72.2	18.6	9.3	100.0(194)	25.3(4)**
4년제	81.3	9.5	9.2	100.0(348)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71.2	11.9	16.9	100.0(118)	
151~200만원	68.9	17.2	13.9	100.0(209)	
201~250만원	76.7	18.6	4.7	100.0(129)	
251~300만원	71.7	21.4	6.9	100.0(173)	27.0(14)*
301~350만원	79.5	12.3	8.2	100.0(73)	
351~400만원	66.7	19.4	13.9	100.0(72)	
400~500만원	82.7	10.7	6.7	100.0(75)	
501만원 이상	81.8	9.1	9.1	100.0(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결과임.

3. 정책시사점

가정내 영아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관리하거나 제도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관 보육서비스 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모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단체에서 가정내 보육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리회사에서의 사업도 별도로 실시된다. 그러나 모두 각 사업주체별로 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비영리 기관의 사업이나 영리 기관이나 모두 도우미로 활동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보육내용, 사후관리 등이 개별 조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일정수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적 가정내 보육제도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를 확대하여 이들 사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공부분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셋째, 가정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고,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없다.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관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욕구를 가진 수요자가 상당수이다. 부모들도 기관 미이용 아동의 비용 지원 요구가 높다. 따라서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나아가서는 직접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VI.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실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1990년대까지는 근로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21세기 들어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출산율이 1.16명까지 저하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제도화된 법 규정, 여성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의 지원의지, 여성근로자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로 사용가능한 지원제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7장에서는 기존 자료와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자료⁶⁶⁾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일반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의 보육 지원, 탄력적 근무제도에 한정하여 제도 실시 현황과 근로자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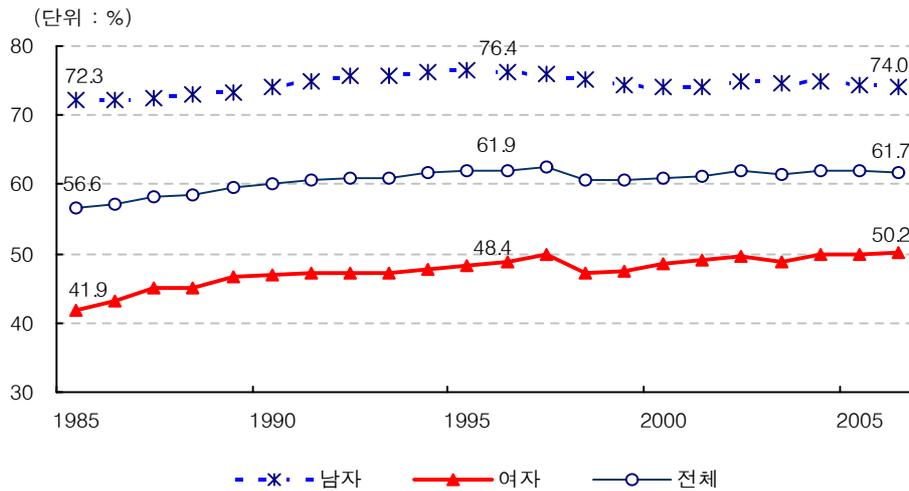
1. 여성근로자 현황

가. 여성근로자 규모 및 특성

지난 20여년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절대규모는 커졌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까지도 50% 내외에 불과하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85년 600만명에서 2006년 1,000만명 수준으로 절대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2006년 50.2%로 약 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남성 경제활동인구

66)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온라인조사와 가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조사에 309명, 가구조사에 237명이 응답하여 총 조사대상은 546명이다. 조사 대상은 일하는 여성이다. 남성들도 육아에 관한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2006년말 기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현황 등을 볼 때 남성근로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설문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임.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적특정을 지역별, 회사규모별, 학력별, 연령대별, 자녀수, 자녀나이 등을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거주, 30대, 월평균 200만원 이하, 4년제 대학졸, 100인 이하 기업, 상용직,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부록 참조).

는 1985년 약 900만명에서 2006년에는 1,400만명으로 증가해 남성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20%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V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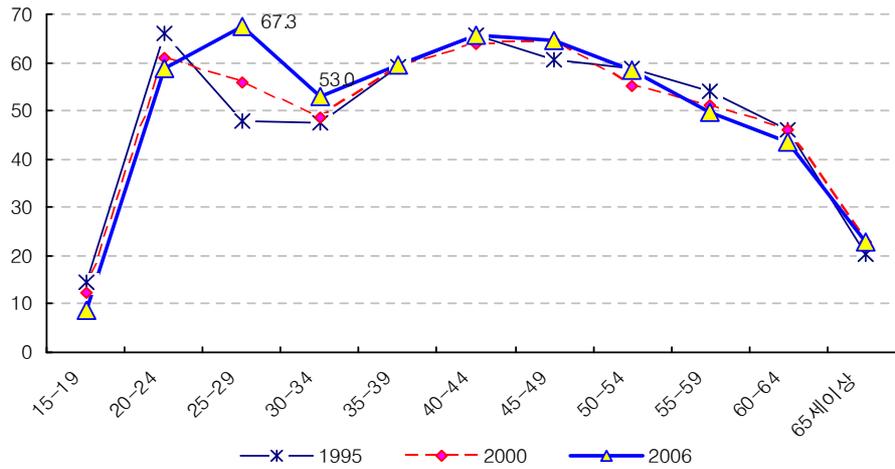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VI-1-1]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한편, 출산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200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이 2000년 26.5세에서 2005년 27.7세로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04년 이후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 이하 저연령층과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VI-1-2 참조).

1985년에서 2005년 사이 여성 취업자 수는 약 370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비임금 근로자는 20년 동안 30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증가한데 비해 임금근로자는 280만명에서 639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비율은 동기간 동안 48%에서 6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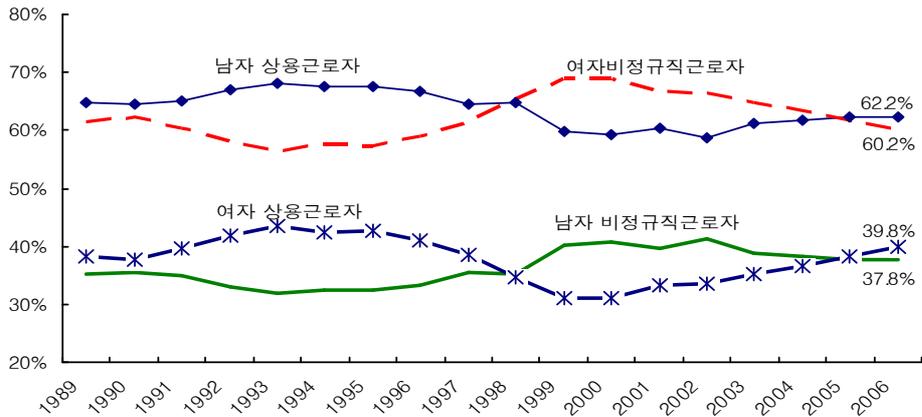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VI-1-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한편 최근에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2006년말 기준 남성근로자는 62.2%의 상용근로자와 37.8%의 비정규직⁶⁷⁾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여성근로자는 39.8%가 상용근로자이고 60.2%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2006년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31.9%에 불과하지만, 임시직 중 56.6%, 일용직 47.6%가 여성 비율로, 여성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 여성근로자는 20대 후반에 상용근로자 비율이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 M자형을 보이게 되는데,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재진입할 경우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지연(2007)은 8년간의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8년 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간에 이동이 없이 한 가지 지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비율이 73%에 이르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는 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상당히 분절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여성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림 VI-1-3, 표 VI-1-1 참조).

67)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임(장지연, 2007).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그림 VI-1-3] 성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추이

<표 VI-1-1>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6		
	취업자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전체	7,376	100.0	-	8,267	100.0	-	8,769	100.0	-	9,706	100.0	-
비임금근로자												
소계	3,185	43.2		3,343	40.4		3,372	38.5		3,134	32.3	
자영업자전체	1,382	18.7		1,600	19.4		1,683	19.2		1,828	18.8	
고용주	199	2.7	-	276	3.3	-	263	3.0	-	335	3.4	-
자영자	1,183	16.0		1,324	16.0		1,421	16.2		1,494	15.4	
무급가족종사자	1,804	24.5		1,743	21.1		1,688	19.2		1,306	13.5	
임금 근로자												
소계	4,190	56.8	100.0	4,924	59.6	100.0	5,397	61.5	100.0	6,573	67.5	100.0
상시근로자 전체	3,236	43.9	77.2	4,110	49.7	83.5	4,175	47.6	77.4	5,525	56.9	84.1
상용근로자	1,577	21.4	37.6	2,107	25.5	42.8	1,679	19.1	31.1	2,616	26.9	39.8
임시근로자	1,659	22.5	39.6	2,003	24.2	40.7	2,496	28.5	46.2	2,909	30.0	44.3
일용근로자	954	12.9	22.8	814	9.8	16.5	1,222	13.9	22.6	1,048	10.8	15.9

자료: 통계청(각 연도).

비정규직에 머문 근로자의 경우 근로빈곤층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낮다는 것은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규모 및 비율도 낮은 상태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체 조합원 80만명 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16% 수준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비중이 낮다. 또한 전체 남성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피보험 근로자의 비중은 40.0%이지만 여성 피보험 근로자의 비중은 29.2%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 및 선진국 여성에 비해 낮으며, 특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어려움으로 경력의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낮은 조합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 등으로 노동조합이나 고용보험 등에 의해 근로자로서 보호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자녀양육 관련 애로 및 요구도

1)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들이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양육이 45.7%, 소득변화로 인한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우려도 43.8%를 차지했다. 두 가지 가장 큰 요인 외에 본인의 경력관리나 사회생활 참여 욕구 등은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2 참조).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여성근로자 568명 중 퇴직자가 324명에 이르며, 이들 중 80% 이상이 노동시장 복귀에 긍정적이었는데,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복귀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의 90% 이상이 육아문제로 조사되었다(표 VI-1-3 참조).

〈표 VI-1-2〉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구분	소득변화	자녀양육	본인의 경력관리	사회활동 참여 욕구	기타	합계
전체	43.8	45.7	3.8	6.0	0.8	100.0(530)
19인 이하	42.0	45.5	5.1	5.7	1.7	100.0(176)
20~49인 이하	39.2	49.6	3.2	7.2	0.8	100.0(125)
50~299인 이하	46.8	44.7	3.2	5.3	-	100.0(94)
300인 이상	49.6	42.5	3.5	4.4	-	100.0(11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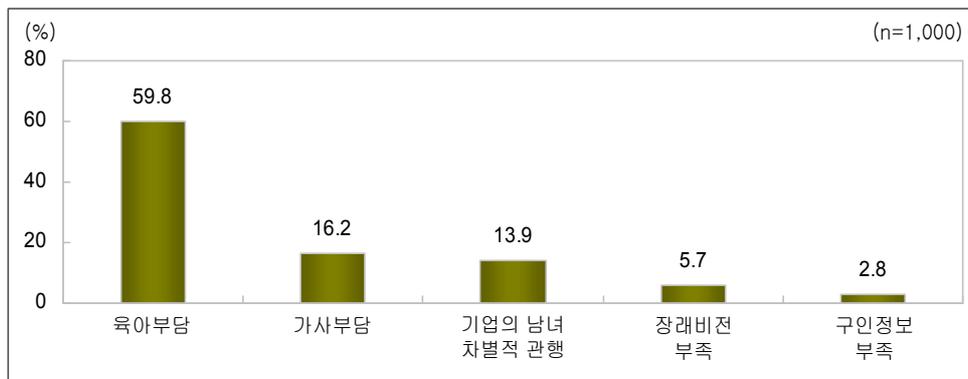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1-3〉 노동시장 복귀 시 장애요인

단위: %

구분	육아문제	가사노동	가족의 반대	기타	계
비율	92.5	6.0	1.5	-	100.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 인식 조사.

[그림 VI-1-4]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

2007년 노동부 조사에서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육아 부담이 59.8%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자 67.9%, 30대 67.2%, 가정주부 71.2% 등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욱 높았다. 그 다음 가사부담 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 13.9%, 장래비전 부족 5.7% 등의 순이었다.

여성 근로자가 하루 평균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3~5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시간 이상 육아를 한다는 비율도 32.5%로 육아시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일일 평균 육아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합계
비율	5.7	8.8	15.5	18.6	18.8	11.2	5.9	1.8	13.6	100.0 (5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영아 대리양육을 위한 요구

〈표 VI-1-5〉는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3세 미만 영아를 대리 양육할 경우, 가장 바라는 바를 나타낸다. 3세 미만 영아를 대리 양육 시 가장 바라는 점은 양호한 보육환경이 49.4%로 가장 높았고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21.9%, 교육서비스 제공 16.7%,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11.3% 등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차이는 일관성이 없다.

〈표 VI-1-5〉 취업으로 인한 영아 대리양육 시 바라는 사항

단위: %(명)

구분	이용시간 다양화	양호한 보육환경	저렴한 비용	교육서비스 제공	기타	합계	$\chi^2(df)$
전체	21.9	49.4	11.3	16.7	0.7	100.0(539)	
19인 이하	21.3	44.4	15.7	17.4	1.1	100.0(178)	
20~49인 이하	20.8	56.8	6.4	16.0	-	100.0(125)	13.0(12)
50~299인 이하	22.3	47.9	14.9	13.8	1.1	100.0(94)	
300인 이상	24.3	47.8	7.8	19.1	0.9	100.0(1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3)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

한편 정부의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국공립시설 등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24.5%였다. 또한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최종 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파악이 미흡하다는 응답도 17.7%였으며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

답은 11.3%였다.

사업장 규모별 차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양육비 지원의 미흡, 부모 요구 파악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다소 높고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서비스 관리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시설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표 VI-1-6 참조).

〈표 VI-1-6〉 정부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지원미흡	시설 부족	기업 지원부족	관리 미흡	부모요구 파악미흡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4.5	27.0	11.3	17.7	18.0	1.5	100.0(538)	
19인 이하	27.5	24.7	6.2	16.9	22.5	2.2	100.0(178)	
20~49인 이하	24.8	26.4	15.2	14.4	17.6	1.6	100.0(125)	22.0(15)
50~299인 이하	22.6	28.0	10.8	22.6	15.1	1.1	100.0(93)	
300인 이상	15.7	32.2	16.5	20.0	15.7	-	100.0(1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1-7〉 영아 양육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지원확대	시설 확충	세제 지원	기업지원 확대	서비스 질 관리	부모요구 반영	기타	합계	$\chi^2(df)$
전체	29.7	19.1	5.6	6.5	30.7	7.8	0.6	100.0(538)	
19인 이하	32.6	17.4	6.2	5.6	27.5	9.6	1.1	100.0(178)	
20~49인 이하	28.8	20.0	4.0	9.6	28.8	8.0	0.8	100.0(125)	13.7(18)
50~299인 이하	28.0	22.6	6.5	4.3	32.3	6.5	-	100.0(93)	
300인 이상	22.6	18.3	7.0	6.1	39.1	7.0	-	100.0(1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이와 연계하여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양육 지원정책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30.7%로 가장 높았고, 양육비 지원 확대가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확충 19.1%, 부모들의 요구반영 7.8%,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6.5%, 부모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5.6% 등으로 아이를 대리 양육하는 기관에 대한 질과 양을 개선시키라는 요구가 높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는 양육비 지원 확대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장이 클수록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표 VI-1-7 참조).

4) 기업의 출산 및 자녀 양육지원의 문제와 요구

기업에서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51.5%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과 양육지원을 여성근로자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인식이 34.1%,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이 11.8%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표 VI-1-8 참조).

〈표 VI-1-8〉 기업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의 애로요인

단위: %(명)

구분	사회적 분위기	기업의 인식	낮은 처벌 수준	지원부족	기타	합계
전체	51.5	34.1	2.2	11.8	0.4	100.0(539)
19인 이하	52.5	31.6	2.3	13.0	0.6	100.0(177)
20~49인 이하	51.2	39.2	1.6	8.0	-	100.0(302)
50~299인 이하	51.6	33.0	1.1	14.3	-	100.0(91)
300인 이상	49.6	34.8	4.3	10.4	0.9	100.0(1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1-9〉 가장 효과가 높은 제도

단위: %(명)

구분	시차 출근제	파트 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운영	직장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산모수유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타	계
전체	7.5	3.0	6.2	6.0	36.2	25.0	1.5	2.4	10.8	1.5	100.0(536)
19인 이하	9.1	3.4	4.0	7.4	31.8	29.5	0.6	2.8	8.0	3.4	100.0(176)
49인 이하	7.2	1.6	8.0	9.6	32.8	24.0	4.0	2.4	9.6	0.8	100.0(125)
50~299인 이하	5.4	3.2	6.5	4.3	45.2	17.2	2.2	2.2	14.0	-	100.0(93)
300인 이상	7.8	3.5	7.0	1.7	41.7	19.1	-	2.6	15.7	0.9	100.0(115)

주: 회사 $\chi^2(df=22.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한편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비 지원 25.0%, 육아휴직 10.8% 등으로 탄력근무제도 등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시설 및 재정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동부 조사에서도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 직장보육시설이 5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육아휴직제도 14.3%이었으며,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 7.8%, 배우자 출산 휴가제 7.6%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VI-1-10 참조).

이는 2006년 2월 여성부의 '직장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도 기혼 직장여성들의 64.4%가 직장내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로 직장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는 응답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표 VI-1-10〉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단위: %(명)

구분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육아수당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제	(수)
2007년	59.1	14.3	9.3	7.8	7.6	(1,000)
2006년	55.2	14.4	10.7	8.9	9.3	(1,000)

자료: 노동부(각 연도), 남녀고용평등 의식 조사.

한편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제도로 탄력적 근로 시간 운용(48.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육아 휴직제 확대(21.7%), 가족 간호 휴직제 도입(13.3%), 파파쿼터제 도입(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11〉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제도

단위: %

구분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육아 휴직제 확대	가족 간호 휴직제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비율	48.5	21.7	13.3	11.1

자료: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 의식 조사.

2. 산전후휴가 실시 및 사용

가. 산전후휴가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 1월부터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2005년말 기준 여성 취업자는 약 950만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는 639만명이다. 그러나 <표 VI-2-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는 약 276만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28.9%이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43.1%에 불과하다.

즉, 제도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보장받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4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49%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및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VI-2-1〉 여성취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여성근로자

단위: 천명

구분	고용보험적용 사업체 수	고용보험적용 여성근로자	취업자		직장의료보험 여성가입자
			여성취업자	여성 임금근로자	
2002	826	2,339	9,225	5,857	2,491
2003	846	2,391	9,108	5,970	2,715
2004	1,003	2,557	9,364	6,237	2,923
2005	1,148	2,757	9,526	6,391	3,14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한편,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ILO 협약은 산전후휴가 시 임금보전이 여성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적용범위를 모든 공업적, 상업적 기업과 각 부분에서 비공업적

농업적 업무로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산전후휴가를 비공업 및 농업적 업무로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산전후휴가 사용률

산전후휴가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인원이 2.2배로 증가하였고, 지급총액이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06년 기준 909억원이 지급되었다(표 VI-2-2 참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2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 등이었다. 제조업은 피보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비중이 높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보험업 등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속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표 VI-2-3 참조).

〈표 VI-2-2〉 연도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원	전체	22,711	32,133	38,541	41,104 (100.0)	49,539 (100.0)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	-	17,446 (42.4)	25,602 (51.7)
	지급총액	22,601	33,522	41,610	46,041	90,8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표 VI-2-3〉 산업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	교육 서비스	운수업	기타
사용현황	10,049	8,742	7,253	6,714	5,688	2,149	1,868	7,076
(비율)	(20.3)	(17.6)	(14.6)	(13.6)	(11.5)	(4.3)	(3.8)	(1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VI-2-4〉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5명 미만	5~9	1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수	6,417	4,594	6,562	2,597	3,718	6,165	2,314	3,981	13,191
(비율)	(13.0)	(9.3)	(13.2)	(5.2)	(7.5)	(12.4)	(4.7)	(8.0)	(26.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기업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26.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의 48.5%가 5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영세 규모 사업장 취업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가능성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VI-2-4 참조).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2005년 4만 1,104명에서 2006년에는 4만 9,539명으로 20.6%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만 5,602명으로 2005년 1만 7,446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42.4%에서 2006년에는 51.7%로 절반을 넘었다.

이처럼 2002년 이후 산전후휴가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그 비율은 낮다. 2005년 건강보험 여성피보험자가 분만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건수는 76,757건이지만 산전후휴가 건수는 41,104건으로 54%에 불과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출산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에서도 실시한다는 비율이 사업장 규모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1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실시율이 51.5%에 머물렀다. 한편 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9인 미만 사업장도 86.9%로 조사되었다(표 VI-2-5 참조).

〈표 VI-2-5〉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제도 실시 및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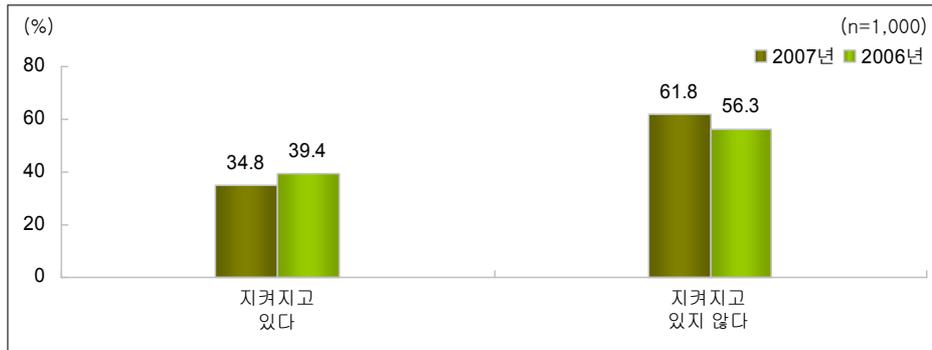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실시	실시 시 사용 경험
전체	72.1	91.0
19인 이하	51.5	86.9
20~49인 이하	75.2	91.5
50~299인 이하	87.1	93.8
300인 이상	88.6	93.1
(수)	(499)	(360)
$\chi^2(df)$	22.9(3)**	3.1(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2007년도 노동부 조사에서는 산전후휴가 제도가 지켜지고 있다 34.8%, 지켜지고 있지 않다 61.8%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다. 2006년에 비해서도 산전후휴가 제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56.3%에서 61.8%로 다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자료: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 의식 조사.

[그림 VI-2-1] 여성 위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부터 3월부터 2006년까지 2월까지 212개의 대도시 소재 사업장의 출산 여성근로자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8.2%만이 법정 휴가일인 90일을 전부 사용했다. 그런데, 정규직 및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각각 60.6%, 75.5%가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했지만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사업체는 휴가 사용비율이 각각 36.4%와 25.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출산 후 산후 회복기를 무급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고, 법정 휴가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출근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표 VI-2-6 참조).

<표 VI-2-6>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단위: %

구분	30일 미만	30 - 59일	60 - 89일	90일 이상
전체	3.3	18.8	19.7	58.2
고용형태				
정규직	2.7	17.2	19.5	60.6
비정규직	9.1	31.8	22.7	36.4
기업규모				
99인 이하	5.9	22.4	45.9	25.9
100인 이상	1.9	17.0	5.6	75.5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다. 근로자 의견 및 요구

1) 필요성 및 만족도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전혀 없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1~2%에 불과해 산전후휴가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나타냈는데⁶⁸⁾, 이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의 만족한다는 비율은 매우 만족 29.7%, 만족 27.6%로 모두 57.3%이고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3.9%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9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18.1%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고, 그 이상 규모는 규모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표 VI-2-7 참조).

〈표 VI-2-7〉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자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전체	29.7	27.6	28.8	9.7	4.2	100.0(330)
19인 이하	22.2	23.6	36.1	13.9	4.2	100.0(72)
49인 이하	27.9	33.7	26.7	8.1	3.5	100.0(86)
50~299인 이하	28.9	25.0	31.6	7.9	6.6	100.0(76)
300인 이상	37.6	28.0	22.6	8.6	3.2	100.0(93)

주: 산전후휴가 $\chi^2(df=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미사용 이유 등

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중 29.4%가 동료에 대한 부담, 23.5%가 복직에 대한 불안, 15.7%가 회사 관행이라고 밝혔다(표 VI-2-8 참조).

산전후휴가 중 업무는 72.1%가 동료들이 분담했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비율은 21.7%에 불과했다

68) 표 제시는 생략함.

〈표 VI-2-8〉 산전후휴가 기간 미사용 이유

단위: %

구분	회사의 관행상	동료에 대한 부담	복직에 대한 불안	업무대행이 난이	법에 대한 무지	기타	계
비율	15.7	29.4	23.5	13.7	3.9	13.8	100.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3. 육아휴직 실시 및 사용

가. 육아휴직 사용

1) 사용 비율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과 직장 및 가정생활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그리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성평등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006년까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VI-3-1 참조).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05년 1만 700명에서 2006년에는 1만 3,672명으로 27.8% 증가했다. 그러나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는 같은 기간 동안 3,622명에서 5,240명으로 44.7% 증가했다.

성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98.3%로 절대 다수이며 남성의 비율은 2% 미만이다. 그러나 절대 수로는 적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2004년 52.0%에 비하여 다소 하락했고, 30~34세는 41.0%로 2004년 40.2%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휴직 수급자의 연령대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1 참조).

산업별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 등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산전후휴가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육아휴직은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연속성이 금융보험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표 VI-3-2 참조).

〈표 VI-3-1〉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간	지급액	인원			월급여액	평균 육아휴직 일수	
		전체	여성	남성		여	남
2001	5	25	23	2	20만원	185일	293일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178일	146일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195일	158일
2004	20,803	9,303	9,122	181	40만원	209일	186일
2005	28,242	10,700	10,492	208	40만원	211일	185일
2006	34,521	13,672	13,442	230	50만원	216일	191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고용평등심의관실.

〈표 VI-3-2〉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금융보험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	운수업	건설업	기타	계
수	2,722	2,571	2,011	1,546	1,367	807	518	2,130	13,672
(비율)	(19.9)	(18.8)	(14.7)	(11.3)	(10.0)	(5.9)	(3.8)	(15.6)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VI-3-3〉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현황(2006년)

단위: 명(%)

구분	~4	5~9	1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계
수	1,657	1,028	1,186	360	566	1,144	457	1,240	6,034	13,672
(비율)	(12.1)	(7.5)	(8.7)	(2.6)	(4.1)	(8.4)	(3.3)	(9.1)	(44.1)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기업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사용비중이 44.1%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기업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여성취업자가 2006년 기준으로 11.9%가 고용되어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비중은 12.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VI-3-3 참조〉).

2) 산전후휴가제도와의 연계

육아 휴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전 휴가자 대비 비율을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2년 산전후휴가 이용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16.6%에 불과했으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도 2006년 27.6%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VI-3-4〉 연도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단위: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산전후휴가	22,711	32,133	38,541	41,104	49,539
육아휴직	3,763	6,816	9,303	10,720	13,672
육아휴직/산전후휴가	16.6	21.2	24.1	26.1	27.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05년 962명에서 2006년 1,251명으로 30% 증가했으나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이용률은 4.34%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역시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체인력 사용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방안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은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적절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률이 낮다.

〈표 VI-3-5〉 연도별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사업장	인원	지원액	1인당 월 지원금액
1997	473	4,185	2,031	9만135천원
1998	475	4,404	2,334	11~14만원
1999	322	1,972	1,148	12~15만원
2000	401	2,226	1,422	"
2001	542	3,136	2,804	20만원
2002	461	2,227	2,836	20만원
2003	802	3,877	5,255	20만원
2004	1,330	4,561	6,733	20~35만원
2005	1,551	4,594	7,217	20~35만원
2006	2,011	6,436	9,815	20~50만원

자료: 노동부(각 연도).

〈표 VI-3-6〉 연도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실시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인원	지원금	비고
2004	6	6	5	20~35만원
2005	55	58	64	20~35만원
2006	194	466	392	20~50만원

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제도는 2004년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어려움은 민간기업의 경우 더욱 더 심하다. 노동부가 2006년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9.1%와 41.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16.8%와 16.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현재보다 약 20~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2006년 중앙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005년 962명에서 1,251명으로 30% 증가했는데, 대체인력 활용률은 2005년 37.1%에서 53.1%로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부분근무제도, 업무대행제도, 대체인력뱅크제도 등이 확산되어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이 2005년 14명에서 2006년에는 35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체인력뱅크 규모도 8개 기관 128명에서 10개 기관 269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시 보직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⁶⁹⁾

나. 근로자 의견 및 요구

1) 필요성 및 만족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전혀 없었다. 사업장 규모별 차이도 일정치 않다(표 VI-3-7 참조).

2007년 노동부 조사에서도 육아 휴직 제도와 파파키퍼제가 여성 경력 단절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64~66%로 높았다.

69) 국정브리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활용 현황, 2007. 3. 13.

〈표 VI-3-7〉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수)
육아휴직 제도						
전체	90.1	8.1	1.7	-	-	100.0(517)
19인 이하	90.6	5.8	3.5	-	-	100.0(171)
49인 이하	86.6	11.8	1.7	-	-	100.0(119)
50~299인 이하	93.5	6.5	-	-	-	100.0(92)
300인 이상	93.9	6.1	-	-	-	100.0(114)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대체인력 풀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0.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로 육아휴직 제도에 비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0%이상으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보다 높다(표 VI-3-8 참조).

〈표 VI-3-8〉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대체인력 풀 운영 제도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수)	$\chi^2(df)$
전체	40.5	28.7	23.2	5.5	2.0	100.0(491)	
19인 이하	43.5	27.1	21.8	5.3	2.4	100.0(170)	
20~49인 이하	42.7	28.2	21.4	6.0	1.7	100.0(117)	4.4(8)
50~299인 이하	34.8	33.7	23.9	6.5	1.1	100.0(92)	
300인 이상	38.4	27.7	26.8	4.5	2.7	100.0(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3-9〉는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풀의 수혜 경험자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만족도는 67.8%가 만족하고 11.9%가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로는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시설이 차이를 보여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인력 풀에 대해서는 수혜자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54.6%가 만족하고 18.2%가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표 VI-3-9〉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육아휴직						
전체	41.5	26.3	20.3	10.2	1.7	100.0(118)
19인 이하	26.1	34.8	26.1	13.0	-	100.0(23)
49인 이하	36.4	33.3	9.1	15.2	6.1	100.0(33)
50~299인 이하	29.2	25.0	41.7	4.2	-	100.0(24)
300인 이상	63.2	15.8	13.2	7.9	-	100.0(38)
대체인력 풀						
전체	9.1	45.5	27.3	18.2	-	100.0(11)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미사용 이유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회사분위기가 21.8%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인력 미확보 14.1%, 승진 및 교육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 11.5%, 수당이 적어서 9.0% 등이었다.

〈표 VI-3-10〉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단위: %(명)

구분	해당 안됨	회사 분위기	대체인력 미확보	불이익	원직복직 불확실	수당이 적음	직장이 더 좋음	기타	계(수)
전체	7.7	21.8	14.1	11.5	7.7	9.0	6.4	21.8	100.0(80)
19인 이하	11.8	23.5	5.9	11.8	11.8	11.8	-	23.5	100.0(17)
20~49인 이하	5.0	20.0	30.0	5.0	10.0	-	-	30.0	100.0(20)
50~299인 이하	5.9	17.6	11.8	17.6	-	11.8	11.8	23.5	100.0(17)
300인 이상	8.3	25.0	8.3	12.5	8.3	12.5	12.5	12.5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뚜렷하게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성화 방안 의견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수 응답결과 응답자의 55.6%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 개선을 지적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직복직 보장에 대한 요구가 43.5%, 육아휴직 급여인상 31.0%, 대체인력 확보 28.6%, 불이익 금지 21.6%의 순이다(표 VI-3-11 참조).

사업장 규모별로 보아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직장 분위기 개선이 육아휴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원직복귀 보장을 지적한 비율과 대체인력 확보를 지적한 비율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불이익 금지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특히 원직복직 보장 요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즉,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이후에 원직으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반영한다.

〈표 VI-3-11〉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정착 방안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급여인상	대체인력 확보	원직복직 보장	불이익 금지	업무적응 지원	직장 분위기	기간 연장	기타	(수)
전체	31.0	28.6	43.5	21.6	3.6	55.6	14.5	1.4	(492)
19인 이하	22.2	31.7	51.5	16.8	4.2	54.5	16.8	1.2	(167)
20~49인 이하	33.6	27.9	43.4	19.7	2.5	60.7	10.7	1.6	(122)
50~299인 이하	38.9	26.7	38.9	18.9	2.2	54.4	18.9	1.1	(90)
300인 이상	34.5	24.8	33.6	33.6	4.4	54.9	13.3	0.9	(113)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4.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

가. 직장보육서비스 현황

1)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이행 현황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⁰⁾ 고용보험

7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에 가입한 민간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6년 12월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298개소로 14,53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즉, 전체 29,233개소 보육시설 중 1.0%가 직장보육시설이고, 전체 보육 아동 104,361명 중 1.4%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 직장보육시설은 의무 설치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다.

〈표 VI-4-1〉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응자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2
사업장수	7	5	2	2	2	2	3	1	9	4	1
금액	880	720	540	98	125	450	811	150	2,657	511	400

주: 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및 시설전환비 지원: 5억원 한도,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1~2%
자료: 노동부.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775개 중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47.1%인 365개소로 2005년 37%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2007년 52.9%인 410개이다. 의무이행 사업장 365개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19개,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132개,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34개이었다(표 VI-4-2 참조).

즉, 직장보육시설 298개소 중 119개소가 의무 설치 사업장에 있고 나머지 179개소는 기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다. <표 VI-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직장 보육서비스 이행률이 매년 10% 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2006년까지도 전체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공립학교에서도 설치비율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VI-4-2〉 연도별 의무사업장의 직장 보육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2004년	824 (100.0)	196 (23.8)	135 (16.4)	61 (7.4)	-	628 (76.2)
2005년	817 (100.0)	302 (37.0)	170 (20.8)	105 (12.9)	27 (3.3)	515 (63.0)
2006년	775 (100.0)	365 (47.1)	119 (15.4)	132 (17.0)	34 (4.4)	410 (52.9)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을 사업장 규모 및 지역별로 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인 사업장이 38.0%,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5.0%,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2.0%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행 비율이 높았다(표 VI-4-3 참조).

〈표 VI-4-3〉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

단위: %

구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1,000인 미만	근로자 1,000인 이상
비율	38.0	45.0	52.0

자료 :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33개 기관 중 131개 기관이 설치하여 이행비율 98.5%로 이행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개 중 26개로 61.9%,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 531개 중 186개로 35.0%, 학교 69개 중 22개로 31.9% 등으로 학교와 민간부문의 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4-4 참조). 지역별로는 대전이 71%로 비교적 높고, 서울, 전북, 울산, 광주, 경기도가 50% 이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의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비율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775 (100.0)	365 (47.1)	199 (25.7)	132 (17.0)	34 (4.4)	410 (52.9)
국가기관	42 (100.0)	26 (61.9)	25 (59.5)	-	1 (2.4)	16 (38.1)
지자체	133 (100.0)	131 (98.5)	57 (42.9)	73 (54.9)	1 (0.8)	2 (1.5)
학교	69 (100.0)	22 (31.9)	10 (14.5)	12 (17.4)	-	47 (68.1)
민간 (공사 등 포함)	531 (100.0)	186 (35.0)	107 (20.2)	47 (8.9)	32 (6.0)	345 (65.0)

자료 :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본 근로자 조사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실시중인 기업은 6.3%이고, 이들 사업장 근로자 중 이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22.9%로 조사되었다(표 VI-4-5 참조).

기혼 직장여성들의 다수가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로 직장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직장보육시설이나 이를 이용하는 아동은 각각 전체의 1%,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표 VI-4-5〉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 실시 및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실시	실시 시 이용 경험
전체	6.3	22.9
19인 이하	3.0	-
20~49인 이하	1.6	50.0
50~299인 이하	2.2	66.7
300인 이상	19.5	20.8
(수)	(496)	(34)
$\chi^2(df)$	4.1(3)	n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4-6〉은 기업이 응답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를 나타내는데, 주로 보육수요 부족, 비용부담, 장소 미확보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시설 설치 기업주는 설치비 이외에도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있다.

〈표 VI-4-6〉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예산부족	장소 미확보	예산부족 및 장소 미확보	수요 부족	기타	계
2005년	116 (22.5)	90 (17.5)	31 (6.0)	162 (31.5)	116 (22.5)	515 (100.0)
2006년	171 (41.7)	96 (23.4)	-	136 (33.2)	7 (1.7)	41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세계적으로 지역보육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업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일본의 직장보육시설 아동 수는 전체의 2.5%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1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보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정지원

제 3장에서 간단히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융자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와 유구비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시설장과 취사부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후 5년마다 소요연수가 경과한 유구비품의 교체비용을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노동부 일반회계이다.

〈표 VI-4-7〉 고용보험기금 지원제도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무상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용자	
	설치비 등		보육교사 인건비			사업장	금액
	사업장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2005년	20	1,393	129	907	5,952	9	2,657
2006년	32	3,245	147	1,309	8,106	4	511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12월말 직장보육지원 이행현황 및 지원제도.

여성가족부(2006).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결과.

〈표 VI-4-8〉 연도별 보육교사 임금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사업장	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1997	65	1975(216)	1,187	월 40만원
1998	69	2,785(253)	1,645	"
1999	317(95)	2,862	2,029	월 55~60만원
2000	357(98)	3,496	2,483	"
2001	340(105)	1,528(506)	2,403	"
2002	322(92)	1,511(483)	2,483	월 60~65만원
2003	345(96)	1,700(549)	2,918	월 65만원
2004	401(119)	2,262(748)	4,128	"
2005	449(129)	2,863(907)	5,952	월 70만원
2006	537(147)	3,854(1,309)	8,106	월 80만원

주: 1) 2002년 7월부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에서 '보육교사지원금'으로 명칭변경.

2) '99~'00년은 월지급 연건수, '01년 이후는 분기지급 연건수임.

자료: 노동부(2007).

〈표 VI-4-7〉은 2005년과 2006년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보육지원 실적이다.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2006년 147개 사업장 1,309명의 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었다.

〈표 VI-4-8〉은 1997년 이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나. 근로자 의견 및 요구

1) 직장보육 지원 필요성

기업에서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이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직장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기업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 규모별 별 차이가 없다(표 VI-4-9 참조).

한편으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보육비 지원 수혜자의 만족도는 〈표 VI-4-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5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9〉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과 기업의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수)
직장보육시설 설치						
전체	81.2	13.5	4.4	0.8	-	100.0(517)
19인 이하	84.2	12.3	3.5	-	-	100.0(171)
49인 이하	76.5	14.3	7.6	1.7	-	100.0(119)
50~299인 이하	79.3	16.3	2.2	2.2	-	100.0(92)
300인 이상						
보육비 지원						
전체	85.7	11.2	2.7	0.4	-	100.0(518)
19인 이하	87.7	9.4	2.9	-	-	100.0(171)
49인 이하	85.0	11.7	1.7	1.7	-	100.0(120)
50~299인 이하	79.3	14.1	6.5	-	-	100.0(92)
300인 이상	86.0	13.2	0.9	-	-	100.0(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VI-4-10〉 직장보육시설과 기업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직장보육시설	50.0	50.0	-	-	-	100.0(8)
보육비 지원	27.3	30.3	24.2	12.1	6.1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직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은 자리가 없다는 것이 29.4%로 가장 높았고 보육료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5%, 거리가 멀어서 14.7% 등 이었다.

〈표 VI-4-11〉 사업장 규모별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거리가 멀	남은 자리 없음	보육료나 시간이 맞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14.7	29.4	23.5	32.4	100.0(35)
19인 이하	14.3	28.6	28.6	28.6	100.0(7)
20~49인 이하	33.3	33.3	-	33.3	100.0(3)
50~299인 이하	-	-	50.0	50.0	100.0(2)
300인 이상	13.6	31.8	22.7	31.8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5.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및 이용

가.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현황

탄력근무제이란 근무시간 또는 장소를 근로자가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자녀양육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무공유제, 집중근로시간제 등이 있다(유계숙 외, 200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시차출근제는 근로자들이 1일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자신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아침과 저녁시간을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자녀양육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무공유제는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이 이상이 공유하여 직무공유자간 업무를 탄력적으로 공유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선택적·탄력적 근무제도가 유한킴벌리, CJ, KT, 포스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정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2년부터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근제도가 시행되었다. 2005년말 기준 15개 중앙부처에 9,641명이 대상이 되었으나 15%가 참여한 상태이고, 그 양상은 1시간 일찍 출근 49.7%, 또는 1시간 늦게 퇴근 47.8%로 전체의 95% 이상이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도를 2007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개인이 근무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98개 기업과 29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유계숙 외, 2006)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들 중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선택적·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무공유,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업무 전환을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각각 39%, 26.4%로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차출퇴근제나 원격·재택근무가 시행되는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자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응답기업의 10.5%만이 시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현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VI-5-1 참조).

〈표 VI-5-1〉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제도 없음	있으나 시행저조	잘 시행됨	매우 잘 시행됨	계(수)
원격 및 재택근무	75.6	11.6	10.5	2.3	100.0(86)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업무 전환	52.6	21.1	21.1	5.3	100.0(38)
시차출퇴근제	80.0	3.5	11.8	4.7	100.0(85)
집중근로시간	95.1	2.4	-	2.4	100.0(41)
직무공유	58.5	2.4	34.1	4.9	100.0(41)
V(자발적 단축근로)-시간	91.9	-	2.7	5.4	100.0(37)
자율근무	92.5	2.5	2.5	2.5	100.0(40)
단계적·부분적 퇴직	97.5	-	-	2.5	100.0(40)
자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2.6	7.0	7.0	3.5	100.0(86)

자료: 유계숙 외(2006).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에서도 제도 실시 비율은 시차출근제가 10.4%이고 파트 타임제 3.8%, 근로시간단축 8.5%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20~49인 사업장이 시차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이러한 제도 실시 시 이용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차 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단축근로가 각각 62.3%, 65.0%, 53.5%로 조사되었다.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20~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차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실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선택보다는 사업장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향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표 VI-5-2 참조).

〈표 VI-5-2〉 사업장 규모별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및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실시			실시 시 이용		
	시차 출근제	파트 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근제	파트 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전체	10.4	3.8	8.5	62.3	65.0	53.5
19인 이하	7.8	5.5	6.1	84.6	88.9	90.0
20~49인 이하	14.4	4.8	13.6	77.8	83.3	52.9
50~299인 이하	10.8	-	8.6	60.0	-	37.5
300인 이상	9.6	3.5	6.2	16.7	-	25.0
(수)	(498)	(497)	(496)	(53)	(20)	(43)
$\chi^2(df)$	3.4(3)	na	na	na	na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나. 근로자 의견 및 요구

1) 필요성 및 만족도

탄력적 근무 실시 비율은 낮으나 근로자의 선호도는 비교적 높다. 현재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경영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차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차출근제,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제 순으로 높다. 시차출근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57.6%였으며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80% 수준이었다. 파트타임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7.4%로 여러 지원제도 중 필요성이 가장 낮고,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10% 수준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45.1%였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 이상이 75% 수준이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7% 수준이다. 사업체 규모로는 시차 출근제에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기존 연구결과로 최은영 등(2006)에 의하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가족 양립형태 중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무 선호비중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 공급 18.6%, 보육비 지원 13.7%에 이어 취업모의 탄력근무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1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5-3〉 사업장 규모별 탄력근무제도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수)	$\chi^2(df)$
시차출근제							
전체	57.6	22.7	14.6	3.7	1.4	100.0(493)	
19인 이하	54.4	26.6	13.0	4.7	1.2	100.0(109)	
20~49인 이하	52.5	19.5	23.7	2.5	1.7	100.0(118)	na
50~299인 이하	63.4	22.6	8.6	4.3	1.1	100.0(93)	
300인 이상	62.8	20.4	12.4	2.7	1.8	100.0(113)	
파트타임제							
전체	26.9	30.5	32.8	7.1	2.6	100.0(491)	
19인 이하	28.4	34.3	29.6	5.9	1.8	100.0(169)	
49인 이하	20.5	29.1	35.0	12.8	2.6	100.0(117)	17.6(12)
50~299인 이하	26.9	35.5	30.1	5.4	2.2	100.0(93)	
300인 이상	31.3	22.3	37.5	4.5	4.5	100.0(112)	
근로시간 단축							
전체	45.1	29.7	18.5	4.7	2.0	100.0(492)	
19인 이하	45.0	27.5	19.3	5.8	2.3	100.0(171)	
49인 이하	45.3	31.6	18.8	3.4	0.9	100.0(117)	na
50~299인 이하	45.7	35.9	10.9	5.4	2.2	100.0(92)	
300인 이상	44.6	25.9	23.2	3.6	2.7	100.0(112)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시차출근제 72.8%, 파트타임제 61.5%, 근로시간 단축 65.2%로 조사되었다. 파트타임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7.7%로 시차출근제나 근로시간 단축에 비하여 낮다.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세 가지 제도 모두 매우 소수이다(표 VI-5-4 참조).

〈표 VI-5-4〉 탄력근무제도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시차출근제	36.4	36.4	21.2	6.1	-	100.0(33)
파트타임제	7.7	53.8	38.5	-	-	100.0(13)
근로시간 단축	39.1	26.1	30.4	4.3	-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미이용 이유

시차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무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 성격상 탄력근무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직장에서 원하지 않아서 17.8%, 소득이 줄어서 15.6%, 승진 및 교육에서의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13.3%이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소득 감소를 지적한 비율이 타 사업장 근로자 응답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승진 및 교육 등에서의 불이익을 응답한 비율이 타 사업장 근로자 응답에 비해 높다(표 VI-5-5 참조).

〈표 VI-5-5〉 사업장 규모별 탄력적 근무제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감소	업무 성격상	직장에서 원하지 않음	승진 및 교육 등에서의 불이익	기타	계(수)
전체	15.6	46.7	17.8	13.3	6.7	100.0(45)
19인 이하	28.6	42.9	-	14.3	14.3	100.0(7)
20~49인 이하	18.2	45.5	27.3	9.1	-	100.0(11)
50~299인 이하	20.0	50.0	20.0	-	10.0	100.0(10)
300인 이상	5.9	47.1	17.6	23.5	5.9	100.0(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를 둔 근로자 양육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6. 정책시사점

현재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경영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특히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파트타임제,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풀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0% 이하로 나타나 여성근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제도는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영아 양육을 위한 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근로자의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

도를 살펴본 결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실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30% 이상으로 높아서 실제로 기업의 지원제도 시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별로 정책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전후휴가는 출산 대비 비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이다.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이들을 산전후휴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이들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육아 휴직자의 수가 증가하여 산전 휴가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6년 27.8%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회사분위기, 대체인력 미확보, 불이익 우려 수당이 적어서 등의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수 응답 결과 50.5%가 직장분위기를 지적하였고, 원직복직 보장 43.5%, 육아휴직 급여인상 31.0%, 대체인력 확보 28.6%, 불이익 금지 21.6%의 순이다. 육아휴직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대체인력 확보, 수당 상향조정, 불이익 금지 등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2004년 이후 직장 보육서비스 이행률이 매년 10% 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2006년까지도 전체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권고사항이지만 보다 강력하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행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행률이 높아서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그러나 직장보육 지원은 무조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업체의 위치나 구성원 특성에 맞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수당 지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자 대상 조사를 보면 각 제도의 실시 비율은 시차출근제가 10.4%이고 파트 타임제 3.8%, 근로시간단축 8.5%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20~49인 사업장이 시차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탄력근무제도는 300인 이상 시설은 업무 성격상, 300인 미만 시설은 소득감소가 제도 실시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여성의 근로 조건

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유실 운영은 근로기준법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VII. 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영아 양육지원 방안

영아 전체를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방안은 크게 시설보육의 내실화,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근로자 자녀 양육지원 활성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영아 양육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양육지원 정책 대상의 포괄성이다. 영아 양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양육지원 대상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취업모의 자녀 양육지원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 양육지원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이다. 현재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는 시설보육 중심이지만 영아 보육서비스로 가정내 보육을 이용하고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0세아를 둔 취업모는 상당수가 비혈연에 의한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수가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이들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유의한 요인은 소득계층과 모의 취업여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요인을 감안한다.

넷째, 서비스에 대한 지원간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시설보육과 가정 내 보육서비스의 경우 현재 정부 정책은 전자가 우선순위를 갖고, 후자는 전자의 보완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 경우 후자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되, 전자의 지원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정책대상과 수요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본인프라와 비용 지원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표 VII-1-1>, <VII-1-2>와 같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취업모를 위해서 직장보육,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고,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양육지원 인프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 면에서는 취업모를 위한 야간보육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아픈 아동보육서비스가 있고 미취업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들 수 있다. 가정내 보육서비스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프라이다. 기본 인프라는 소득계층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측면은 기본 인프라보다 다소 복잡하여 취업여부와 소득계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정책들은 보육시설 이용 시에 한정하여 소득계층만을 고려하고 있고 모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표 VII-1-1〉 영아 양육지원 기본 인프라

구분	모 취업	모 미취업
전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탄축 근무 직장보육 지원 정보·상담 지원	정보·상담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야간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 아픈아동 보육	시간제보육시설
가정내 보육	가정내 보육제도	가정내 보육제도

〈표 VII-1-2〉 영아 양육 비용 지원 내용

구분	구분	모 취업	모 미취업
전체	전체	소득공제	소득공제
보육시설 이용	소득계층1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소득계층2	기본보조금	기본보조금
가정내 보육 서비스 이용	소득계층1	차등이용료 또는 양육지원금	차등이용료 또는 양육지원금
	소득계층2	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
보육서비스 미이용	소득계층1	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
	소득계층2	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

2. 영아 시설보육의 내실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보육은 다양한 영아와 유아 보육의 형태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별활동과 취약보육에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었다. 비용 부문에서는 장시간 이용 아동과 그 이외 아동의 차별화, 민간개입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추가 개선이 요구되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의 투명성 등과 계속 연계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최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시설장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기본보조금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하여 시설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는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영아의 시설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시설운영, 보육비 및 재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표 VII-2-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VII-2-1> 시설보육의 과제

구분	내용	우선 대상
보육시설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보육시설 유형의 다양성 유지 - 영아반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취약보육의 강화 -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체 - 취업모, 미취업모 - 전체
보육비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간의 형평성 - 이용시간 및 지원의 이원화 - 취업모 차등보육료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취업모 - 취업모
서비스의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과 서비스 수준 연계 - 보육인력 관리 개선 - 물리적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체 - 전체

강화되어야 할 정책의 대부분은 전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일부 정책만 각각 취업모 또는 미취업모 중심의 정책이다. 시설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보육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접근성은 상당 수준 보장되고 있다고 하겠다.

가. 보육시설 운영

1) 영아 보육시설 유형의 다양성 유지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유형에 관하여 전담과 일반시설 중 어느 곳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부모와 시설장 모두 두 가지를 다 선호하는 세력이 있다. 시설장의 45.8%는 영아전담 시설을 선호하고 25.7%는 영아 중심 시설을 선호하며, 28.5%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설장과 부모의 의견을 보면 보육아동 구분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 보육시설이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영아보육을 기피해서 정부가 보육시설 신고 시에 영아반과 유아반의 비율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이제 영아보육 기피 현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정부가 영아와 유아 보육의 형태를 규제하거나 통일하기보다는 보육시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004년 이후 추가 설치를 하고 있지 않다. 영아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므로 민간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아전담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영아만 보육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지역 수요에 따라 확충되어야 한다.

2) 영아반 운영의 탄력성 제고

우선, 전체적인 물리적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수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 기본보조금 지원 등과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평가인증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그 일환으로 교사대 아동비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2006년에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이는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교사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영아들은 대부분 6~7월이 되어야 보육시설에 입소하므로 그 전에는 반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입소한 아동도 부모의 취업 특성, 방학 등 가정 여건에 따라 입소와 퇴소를 쉽게 하기 때문에 시설의 안정적 운영 보장에 힘이 든다.

둘째로는 국공립·법인시설에도 아동이 줄어 든 경우 현재는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3개월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가 감소하여 반당 아동

이 1명이 되어도 이 아이를 보육하는 교사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이 교사 1인당 영아수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것은 강조하는데, 이보다는 교사 2인당 아동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 1인이 일정 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데에 따른 아동과 교사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3) 취약보육의 강화

영아보육시설의 정규시간 외 취약보육 실시 비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경우 영아 부모들은 취약보육 필요 시 보육시설보다는 조부모 등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취약보육이 영아에 한정된 요구는 아니지만 특히 이용기관이 보육시설로 한정된 영아 부모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가) 시간연장형 보육 기회 확충

영아보육이 취업모 지원 기능이 강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현재의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실시하는 시설의 규모를 늘려나 가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는 농번기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기준 보육시간 외의 추가 보육이 요구되는 지역 또한 우선적으로 취약보육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은 현재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거점형 시설로 육성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은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결코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여 질 높은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간제 특수보육시설 및 반 운영

시간제보육은 취약보육 중에서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히 전업주부의 불특정한 시간대에 요구되는 자녀 대리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여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은 일반 보육시설에서 정규반 아이들과 함께 실시하기보다는 거점형 시설을 중심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특수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YMCA에서 실시하는 '아가야 열린보육센터'와 같

이 별도의 공간을 갖춘 시간제 전문 보육시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영아를 시간제로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설비가 요구된다.

시간제 보육이 정식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책정한 시간당 보육료인 2,500원으로 불특정 다수 아동의 보육으로는 아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예측할 수 없어서 반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민간개인이나 놀이방에서 시간제 보육을 많이 실시하고 그 수입을 교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 아픈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영아 보육시설에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투약과 같은 아픈 아동을 보살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으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병원 데려가기를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6%이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게 되면 일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인력 구조로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모의 아픈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별도의 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일부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설비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아픈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4)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영아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가장 많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발달 관련 프로그램이다. 영아보육 프로그램은 이제 보육과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보급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적지 않게 실시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약 5% 정도는 0세아 대상 특별활동을 하며, 대다수가 만 2세아 이상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이 실시한다. 그러므로 이도 부분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에서 흡수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도 요구된다. 시설서비스 평가 중에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71)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별도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함.

나. 보육비 및 재정

1) 보육시설간의 형평성 제고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의 투명성 등과 계속 연계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차이로 보육비용에 차이가 있다.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을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0세아 75.2%, 만1세아 69.8%, 만2세아 67.7% 수준의 비용으로 아동을 보육하여야 한다. 전담보육시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기본보조금 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시설 교사의 64% 수준이고,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시설유형별로 아동별 보육비용은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 소요재원을 정부와 부모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또 다른 과제인데, 보육비용을 국공립보육시설의 90% 수준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 차액을 기본보조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의 기본보조금은 <표 VI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0세아 12만 8천원, 만1세아 13만원, 만2세아 11만5천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표 VII-2-2> 보육비용 기본

단위: 원, 명, 백만원

구분	민간			국공립시설의 90% 수준(B)	차액 (C=B-A)	시설이용 아동수(D)	추가 비용 (C×D)
	보육료	기본 보조금	소계(A)				
만0세	361,000	292,000	653,000	781,565	128,565	45,121	5,801
만1세	317,000	134,000	451,000	581,255	130,255	113,232	14,749
만2세	262,000	86,000	348,000	462,879	114,879	253,058	29,071
계	-	-	-	-	-	-	49,621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이 경우 추가 소요액은 2007년 기준으로 496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재원확보가 주요 과제이다.

2)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의 이원화

영아보육시설 이용 아동 특성과 이용행태를 살펴본 결과, 이용 시간 이원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사된 보육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은 70% 정도가 되는데 비하여 종일제 보육아동비율은 그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자녀의 종일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사실 아동 입장에서조차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용 이유에서도 0세아는 취업모 대리 양육 비율이 높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사실상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⁷²⁾ 따라서 정부 지원이 모두 종일제로 들어간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보육시설 운영비나 종사자의 처우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는 운영비 감소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미취업모 0세아에게 월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

제시된 대안은 이용시간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모의 취업여부에 의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연장제와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종일제와 연장제 이용 아동비율은 연령별 취업모 등 종일제 보육 필요 비율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20~40%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0, 1세아는 각각 20%와 30%, 만 2세아는 35%,를 연장제로 간주하여 비용을 달리 적용하였다. 종일제 적용 비율은 현재 취업률보다는 상향 조정된 비율로,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 모의 취업률은 이 비율보다 낮지만, 모의 취업 이외에도 질병, 가족간호, 구직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자가 있고, 또한 보육서비스 지원의 강화와 모의 취업은 상호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인식되고 있어서 취업모 아동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면 이 비율도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종일제 보육이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72)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와 반일제 용어를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종일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7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고, 반일제는 오후 2~3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함.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¹⁾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에서의 반일제를 연장제 개념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음.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종일제와 연장제 비용의 차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연장제를 종일제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0세아가 66.9%, 만1세아와 만2세아가 79.7%, 79.8%이다. 따라서 전체 예산으로는 기존에 필요한 예산 대비 93% 정도가 소요된다.

<표 VII-2-3>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비용 절감 비율

단위: %

연령	보육 종일제 비율	연장제 비율	연장제 비용의 표준비용 비율	당초안 대비 소요예산비율
0	80	20	66.9	0.93
1	70	30	79.7	0.94
2	65	35	79.8	0.93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행정비용에 비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⁷³⁾ 아동수가 증가하면 그 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앞으로 그 동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보육비용을 다시 산출할 경우 이 비용의 차이는 크게 증가할 소지가 많다.⁷⁴⁾ 그러나 이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고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

3) 취업모 차등보육료 차등 적용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체계는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0세아와 만1세아에 한해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반영하여 취업모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비율을 이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에 취업모는 차등을 두는 방안, 또는 취업모는 중산층이라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표 VII-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이상부터 지원 비율을 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상 계층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⁷⁵⁾

73) 2006년도 연구(서문희 외, 2006)에서는 0세아와 만1세아 미취업모 자녀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74) 유치원의 경우 반일반, 연장제, 종일제 원비가 각각 큰 차이가 있음.

75) 참고로 2007년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 기본계획안에서는 제4층부터 10%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노동부, 2007).

〈표 VII-2-4〉 취업모 소득단계별 차등보육료 조정(2009)

단위: %, 천원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일반 ¹⁾	취업모 (0. 1세아)
1층	법정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100	100
3층	50%까지	80	90
4층	70%까지	60	70
5층	100%까지	30	40
6층	130%까지	30	40
7층	130%초과	-	30

자료: 1)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다.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는 조력, 지도·감독 강화와 재정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기술하였다. 이들은 영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영아에게는 유아와 달리 기본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1) 조력 및 지도·감독 강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운영위원회 운영, 재무회계 규칙 등은 실시 비율이 낮아서 이러한 조치와 기본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과 연계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재무회계규칙도 단순한 회계 자료의 입력 수준이 아니라 그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용의 지출 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조력을 강화한다.

2) 재정지원과 서비스 수준 연계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최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시설장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부모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서비스 질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재정 지원이 교사 인건비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정부 지원의 정도를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잘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교사 급여로 책정되도록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과 연계를 조기에 추진한다. 현재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적 수준 제고 수단인 평가인증제도와 정부지원은 하루 빨리 연계되어야 한다. 일정 조건을 두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한다. 우선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연계시키고, 평가인증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차등보육료와도 연계시켜야 한다.

3.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으로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및 접근성 확대, 영아 양육지원금 도입,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구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다.

〈표 VII-3-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의 과제

구분	내용	우선 대상
가정내 보육서비스	- 사업주체 관리 - 인력의 자격, 교육 및 관리	- 전체 - 전체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체계화	-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 전체 - 저소득층
양육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	- 1안 개인 서비스 이용자 대상 - 2안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전체	- 취업모, 저소득, 저연령
세제 지원의 개선	- 가정내 보육서비스비용 소득공제 포함 - 취업모 추가 세제지원	- 취업모
정보 및 상담 기능 확대	- 정보제공, 상담, 공간 제공 기능을 하는 인프라 확충	- 전체

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영리 및 비영리 가정내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방향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를 시설보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시설보육을 가장 우선적인 보육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시설 보육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내 보육을 추진한다.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역할은 시설보육의 대체적 역할과 보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이 있고 또한 부모의 근로형태가 비정형적이거나 야간작업이 많을 경우 등이다. 보육 시설에서 취약보육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아이의 연령이나 기질 특성 상 단체보육보다는 개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 보완적 역할을 하는 예로는 방과후 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등의 사례가 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만, 기관 이용을 전후하여 성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둘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과 내용이므로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재 가정내 보육서비스 파견, 소개 기능을 하는 기구는 정부의 위탁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 회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활동하여 서로간의 교류나 협력은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동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성과 같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업 주체 관리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 소개업과 관련한 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사업 신고, 물적·인적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직업안정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이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포괄적 돌봄지원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 일부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영리, 비영리 민간사업체는 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갖추어 정하여 등록하고, 사업기구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 가정내 보육서비스 소개 사업자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관리·담당하는 부처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현재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노동부가 지원하는 YMCA 아가야 등 서로 다른 명칭과 목적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부처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체계가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관리 부처는 하나로 하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영리 부문은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되, 시터 교육, 관리 등은 비영리부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 단체와 같은 조직을 통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장기적으로 정부 위탁사업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인력 자격, 교육 및 관리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에게는 적성과 인성,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도 베이비시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성을 꼽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은 높은 자격 기준보다는 시설보육과 차별화된 보호 중심의 자격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격을 위하여 실습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는 사업체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여기서 실습과정이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모든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최소한의 초기 교육은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전문 직업인으로 경력을 쌓아 나가게 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영리·영리 부문 모두 같이 사후관리 체계의 개발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제공자 파견 후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한다.

아이를 돌보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개별적인 손해보험 가입 등 시터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들은 아이를 돌보는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업체들은 손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가입비율이 낮아서 아동이나 회사에 비해 시터에 대한 보장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다.

나.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체계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적용하여야 하는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개별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회를 보다 확충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 YMCA 아가야 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혼재되어 있고, 이용하는 유형도 보육시설과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에서 기준 보육시간 외에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야근, 출장 등 이용시간대를 벗어난 경우 아무리 시설에서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로의 접근성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종일제는 입주도 기능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 대상, 서비스 유형 등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정부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 사업체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보육인력의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된다.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의 근로자성 확보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이들이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사업체가 최소한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라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의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다.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부모 부담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부모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영아에 우선 적용하고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조부모에 의한 가정내 양육지원도 아동 모의 취업이 인정되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과 가정내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영아 양육지원금 지원제도 도입

다음의 정책방안은 영아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는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아 기본보조금 미지원 시설이 있으나 이는 시설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1) 실시 방안

가정내 영아 양육지원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방안은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1안

첫 번째 안은 철저하게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보육 미이용 영아 중 혈연과 비혈연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⁷⁶⁾ 각 연령별로 혈연과 비혈연 등 개인이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⁷⁷⁾ 적용하면 대상 영아는 2008년 아동수 기준으로 37만 1895명이 된다.

나) 2안

두 번째 안은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2안은 아동수당과 복지서비스⁷⁸⁾가 혼합된 개념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다. 농림부에서는 농지규모가 5ha 미만인 농가원부에 등록된 가구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일손 돕기라는 명목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는 두 가지 정책이 혼합된 정책이라 하겠다.⁷⁹⁾

76) 이 제도는 앞에서 제안한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조정이 필요함.

77)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0세아는 조부모 18.2%, 비혈연 5.8%, 만1세아는 혈연과 비혈연 각각 19.7%, 5.6%, 만2세아는 각각 16.5%, 4.0%로 조사됨.

78)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비기여적, 보편적인 가족급여이고,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은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그 성격이 다름.

79) 아동수당이 저출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서비스 지원과 아동수당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제한된 재정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들어가면 두 제도의 성격과 무관하게 아동수당과 보육 비용 지원의 중복성 논란이 있게 됨. 아동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두 정책이 혼합된 형태의 정책도 등장 가능함.

2) 소요예산

가) 1안

각 연령별로 혈연과 비혈연 등 개인이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소요예산은 총 3718억 9500만원이 된다.

〈표 VII-3-2〉 제1안 예산 추계안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총 인구 수(2008) ¹⁾	이용 비율 추정 ²⁾	해당 아동수	예산 추정
0세	446,738	24.0	107,217	128,661
1세	445,796	25.3	112,786	135,344
2세	438,576	20.5	89,908	107,890
총계	1,331,110	69.8	309,911	371,895

자료: 1) 통계청

2) 서문희 외(2005)

나) 2안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받는 아동을 제외하면⁸⁰⁾ 영아 수는 약 92만명으로, 이들 전체에게 월 10만원을 적용하면 소요예산은 약 1조 1036 억원이 소요된다.

〈표 VII-3-3〉 제2안 예산 추계안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상 아동수	예산금액
0세	401,617	481,941
1세	332,564	399,077
2세	185,518	222,621
계	919,699	1,103,639

80)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비용 지원 대상은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3) 연차별 적용

예산의 제약으로, 연령, 출생순위,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 등 아동과 가정 특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2안을 중심으로 연차별 적용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아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1조 1036억원이 소요된다. 연령별로 0세아부터 우선 적용하면 도입 첫해인 2009년에 4819억원이 필요하다.

출생순위별로 0세아에게 우선 적용하되 셋째아에게만 지원하면 소요예산의 약 7%가 필요하고, 둘째아부터 지원하면 소요예산의 약 47%가 필요하다. 0세아 셋째아부터 시작하면 337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둘째아부터 시작하면 2265억 1200만원이 필요하다. 출생순위별 아동 비율 추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15~44세 부인의 자녀수는 1명 32.2%, 2명 56.8%, 3명 11.10%로 나타나서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들 자녀 중 출생순위 1위는 53%, 2위 출생순위는 43%, 셋째 이상 순위는 7%가 된다.

〈표 VII-3-4〉 연령별 연차별 적용시 소요예산(제2안)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상	전체	출생순위 고려		취업모 등에 적용(60%)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2009	0세아	481,941	226,512	33,736	289,165
2010	1세아 이하	881,018	414,078	61,671	528,611
2011	2세아 이하	1,103,639	518,710	77,255	662,183

이외에도 자녀 양육지원금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상 아동은 전체의 약 50%가 되므로 소요예산도 약 50%가 된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둘째아 이상에 지원하는 정도와 유사하다.

또한 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 모의 취업률은 40% 미만이지만 직업 훈련 중이거나 구직 중인 모의 아동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약 60%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 우선 정책을 영아에 한정하여 실시하면 각세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40~60%에 해당되는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아의 취업모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큰 과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해 내는 일이다. 비공식 부분의 근로자 등 여성 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취업모, 구직 및 훈련 중인 어머니와 그 이외 어머니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 세제지원의 개선

1) 취업모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방식이 소득공제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현재 현금 지원은 소득공제뿐이므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탁아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취업모 추가 세제 지원

현재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연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보육수당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데, 취업모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취업모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주고 보육수당도 기업이 지급하는 전액을 비과세하여 취업모와 그 이외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소득공제 제도 이외에 소득수준별 세액 감면제도(Child Care Tax Credit)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¹⁾

마.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확대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기능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

81) 이러한 세제 지원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보육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즉, 보육료 지원 방식과는 상호 대체적 관계라고 하겠음.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대부분의 아동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받게 된다면 효용가치는 떨어지게 됨.

모들의 인지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여성가족부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부모 상담은 물론 부모와 아동이 함께 와서 다양한 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미취업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최근 중앙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태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활성화

2007년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제도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자녀양육 지원제도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50%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는 별도로 실제로 근로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실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30% 이상으로 높아 실제로 기업의 지원제도 시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VII-4-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의 과제

구분	내용
출산전후휴가	-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급여 확충 -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화 - 배우자 출산 휴가제 추진
육아휴직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육아휴직 수당 조정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 대체인력 활용 장려금 내실화
탄력근무제도	-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직장보육 지원 활성화	-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제고 -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기업의 근로자 양육지원 방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탄력적 근무, 직장의 보육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 산전후휴가 사용 제고

1)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급여 확충

출산 대비 출산 휴가의 비율을 높여 출산 후 부모와 영아를 함께 보호하여야 하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모성보호이다.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므로, 이들에게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 출산한 비정규직 중 28.9%만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정책연구원, 2007, 노동부, 2007 재인용).

첫째, 지급요건을 현재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사용 비율을 높인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휴가를 계속 부여할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6개월간 40~60만원을 지원하는데,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화

산전후휴가 급여 재원은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대기업 기여 30일분만 고용보험으로 부담하고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하는데, 모두 사회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상한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급여 상한선은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인데, 135만원은 2006년 평균 임금 201만원의 2/3 수준이다. 산전후휴가 수급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이 넘는 비율이 2006년 40%이다(노동부, 2007).

3) 배우자 출산 휴가제 추진

산전후휴가의 대상은 고용평등과 부모의 자녀 양육공동책임 관점에서 여성뿐 아

나라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에서 노사협약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제도화를 통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육아휴직의 활성화

현재 30% 미만인 출산 대비 육아휴직률은 제고하여야 한다. 적어도 출생후 1년은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 발달과 부모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공보육과 더불어 육아휴직의 확보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정된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출산후 1년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권의 보장을 지원한다.

1) 육아휴직 요건완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12.2%로 보고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9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2) 육아휴직 수당 조정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보장은 육아휴직 선택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미이용 이유 중 수당이 적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육아휴직급여가 2007년 3월부터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휴직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정액지급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평상 임금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대상이 배우자로 확대되어 있으나 실제로 남자휴직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일반적 분위기 때문인데 자녀양육을 남녀공동 책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근로자의 64%는 이 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로 남성육아참가촉진급부금제도를 들 수 있다.

4) 대체인력 활용 장려금 내실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고, 대체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시기를 현재 육아휴직자 복귀 시점에서 대체인력 활용 매 분기로 전환한다.

다.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확산

탄력적 근무제도 등 유연근무제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은 미흡한 상태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차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단축근로의 세 가지 제도를 실시한다는 비율은 각각 10.4%, 3.8%, 8.5% 수준이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주로 업무 성격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제도 실시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우선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탄력적 근무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여성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직장보육 지원 활성화

취업모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보육지원제도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이다. 직장에서의 보육지원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1)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률 제고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직장보육 지원 의무사업장에서의 의무 시행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 설치 비율은 22.1%이고 수당 지원 등 의무 이행률은 40.1%에 머물고 있는데,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직장에서 담당하여야 할 보육의 비중

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부적절성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는 수용하여 충분히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현재 직장보육시설 중 상당수는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 보육시설은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체 밀집지역 등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VIII. 맺는 말

본 보고서는 영아를 둔 부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양육지원 제도와 영아를 둔 가정의 공식, 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보육, 가정내 보육 및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현황과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영아 양육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은 영아기 자체가 전 생애에 걸쳐서 매우 주요한 시기로, 그 어느 시기보다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나 출산 수준 관점에서 보아도 영아 양육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다. 일과 가정 양립이 아니면 출산 자체가 어려워진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 양육지원은 여성취업률과 출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보육과 육아지원 등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영아를 포함한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은 결국 여성이 직장에서의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그리고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동안의 정책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육아휴직 참여가 그 대상자의 1/4 미만에 머물고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매우 낮다. 육아휴직 수당도 2000년 이후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설치 등 양적 확충에 급급하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하겠다. 이외의 정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포괄적 통합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취업률이나 출산율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파편적이나 그 수준이 미미한 정책을 실시한 경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방안으로 시설보육의 내실화,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의 강화, 근로자 양육지원의 활성화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아를 둔 부모라면 어느 하나의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보육부분은 사실 그 동안의 시설보육이 자녀양육 지원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시설보육 중심의 보육정책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타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혈연, 비혈연 등 개인에 의한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등 보편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제도의 현실화가 사회적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설보육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부모 요구에 따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취업모 중심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아 보육시설 유형의 다양성, 반 운영의 탄력성, 취약보육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비용 부분에서는 이용시간의 이원화, 차등보육료 취업모 추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의 강화와 평가인증이나 교사 급여 등 서비스 수준과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는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및 공공사업의 확대, 양육지원금 제도 도입, 취업모 세제 추가 지원, 자녀 양육 정보와 상담 제공 기능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 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던 영역인데, 영아를 둔 부모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지원 역시 핵심적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성화, 직장보육의 의무 이행 제고,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주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휴가 급여 수준을 높여서 제도 사용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며, 남성의 휴직 참여를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아기에 육아휴직의 허용으로 영아를 직접 돌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단축근무제도 등 탄력 근무제로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직장으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아를 마음놓고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설

치, 비용지원,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시설보육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육시설 이외에 수요자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정 내 보육 지원,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지원 등 다양하고 다각적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도 및 지원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기업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탄력적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적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두 동시에 단시간에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 지원방안은 대부분이 관련 부처와 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도 이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새싹플랜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순차적으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육·교육 시간 및 비용의 이원화,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 양육지원금과 같은 과제는 논의 단계에 있는 과제이므로 실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새싹플랜에 제시된 영유아 보육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2010년 기준으로 총 6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⁸²⁾ 이외 추가로 제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 양육지원금과 같이 정책 추진은 그 대상과 지원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도 연 5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육·교육 시간 및 비용의 이원화와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 역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클수록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이 보편적 가치인 저출산사회에서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82) 새싹플랜에 제시된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과 교육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세하게 추정된 바가 있음, 육아정책개발센터가 2006년에 실시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참조.

참고문헌

- 김재호 외(200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노동부 용역과제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순(2004).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보육의 긍정적 효과. 삼성복지재단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영유아 보육과 파트너십). pp.247-266.
- 김승권(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0).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2001). 영아보육의 발전방안, 21C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보건복지부.
- 김재구·김태홍(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분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고인아(2003).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김난주(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노동부(2005). 일하는 영아 업마의 보육실태조사 보고.
- 노동부(2007).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실태조사
- 류경(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행동 특징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연(2006). 아동발달. 서울:교문사
- 박윤정(1995). 가정환경과 보육시설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환(1994).
- 변용찬 외(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

- 사회연구원.
-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 외(2004). 여성사회활동 증진을 보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김유경·조애저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이상현(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2a).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2b).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김명순·윤선영·이 옥·정미라·최영신·황혜정(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1). 국공립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특별시(2007). 여성복지분야 사업: 女幸 프로젝트 2010.
- 성지미 외(2005). 여성 친화적 사회적 기업 설치 및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에 관한 연구. 노동부
- 양안나(1990). 탁아경험 및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결과.

여성민우회(1994).

원영미(2000). 보육시설유형별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1집.

유계숙 외(2006).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희정 외(2002). 영아보육 프로그램. 여성개발원.

이미숙·전춘애(1999). 보육시설의 영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수준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이석무(1994).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이순형(2001). 표준보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원리, 21C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방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1990). 전인적 발달을 위한 0~2세 미만 종일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어린이육영회. pp.33~62.

이영(2000). 영아발달과 보육. 2000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한국아동학회.

이옥 외(2005). 가정보육교사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이완정(2001). 적정 교사대 아동비율 산정방안. 21C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방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동환(1996).

장지연 외(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장지연 외(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경희·김유경(1997).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민자 외(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조방제(1996). 어린이집 보육경험이 취학 후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지성애(1997).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제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라(1995).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유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현운강·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pp.25-42.
- Barnas, M. V., & Cummings, E. M.(1994). Caregiver stability and toddlers' attachment-related behavior towards caregivers in day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 Vol. 17.
- Bates, J. E., et al.(1994). Child care history and kindergarten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 Becker. G(2005), Llyode Delama Lectures, American Univ. of Paris, Paris
- Belsky, J.(1989). The effects of infant day-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3.
- Belsky, J.(2001). Emanuel Miller Lecture: Dvelopmental risks(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2. pp. 1-20.
- Bennett(2002). *OECD Education Policy Analysis, Updated 2005*.
- Blau, David M., & Philip K. Robins(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6, No. 2. pp.287~299.
- Blau, Francine, Marianne Ferber, & Anne Winkler(1998).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 Hall.
- Brewer, M.(2003). *The New Tax Credits*.

- Caplan, F. & Caplan, T.(1982). *The Second Twelve Months of Life*. New York: Perigee Books.
- Castle F. G.(2003). The World Up 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London.
- Caughy, M., Dipietro, J. & Strobino, D.(1994). Day care participa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pp.457-471.
- Cleveland G. Gunderson & Hyatt(1996). Child Care Costs and the Employment Decision of Women: Canadian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1). pp.132-51.
- Cleveland G., & Krashinsky M.(2003).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an OECD Early Child Care Education and Care Workshop in Rotterdam, January.
- Cleveland G., & Krashinsky M.(2003).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OECD.
- Currie, J., & D. Thomas(1995). Does Head Start Make A Diffe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5(3): 47~50.
- D'Addio, & Mira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OECD, Paris. OECD, DELSA/ELSA/WD/AEM.
- Del Boca, Daniela(2002). Low Fertil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Italian Women: Evidence and Interpretation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 61.
- Esping-Anderson(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Press.
- Field, W.J.(1998). Target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Myths and realities.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 Golden, M. et al.(1988). Effects of infant and toddler day care: Another look at

- the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6.
- Gornick, Janet C.(1999). 7. Gender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Sainsbury, Diane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USA:Oxford University Press. pp.210-244.
- Howes, C.(1990). Can the age of entry and the quality of infant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292-303.
- Howes, C., & Hamilton, C. E.(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8.
- Immervoll, H., & D. Barber(2005). Can Parents Afford to work?: Child care Costs, Tax-Benefit Policies and Work Incentiv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31. OECD, Paris. OECD, DELSA/ELSA/WD/SEM.
- Jacobsen(2002). *The Economics of Work and Family*. W.E. Upjohn Institute.
- Kamerman, S. B.(1998).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An overview of development in the OECD countries*. Paris, OECD.
- Kamerman, S. B.(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An overview of development in the OECD count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3.
- Kamerman, S. B.(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Kamerman, S. B.(2003). *Welfare States, Family Polici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and Family Support, 2003 : Option for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CEE) and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Countries*. Prepared for the Consultation on Family Support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Organized by the Council of Europe and UNESCO, September 3~5, Budapest, Hungary.
- Kamerman, S. B., & Alfred J. Kahn(1995). *Starting Right: How America*

Neglects Its Youngest Childre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New York: Oxford Press.

Kammerman, S. B. et al.(2003). *Social Policies, Family Types, and Child Outcomes.* Paris, France, OECD.

Lehrer, Evelyn L., & Seiichi Kawasaki(198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Fertility: An Analysis of Two-Earner Households. *Demography.* Vol 22. No. 4. pp.499~513.

Lewis, Jane(1998).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shgate.

Mason, Karen O., & Karen Kuhlthau(1992). The Perceived Impact of Child Care Costs on Women's Labor Supply and Fertility. *Demography.* Vol. 29. No 4., pp523~543.

Masse, & Barnett(2003).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 Abecedari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www.nieer.org.

Meyer, Marcia, & Janet Gornick(2003).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pp379-411.

Meyer, Marcia, Janet Gornick, & Katherin Ross(1999).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in Diane Sainsbury(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Press.

Mikko Kautto et al.(eds.)(1999). *Nordic Social Policy: Changing Welfare States.* Routledge.

Mincer, Jacob(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 H. Greg Lewis(ed.). *NBER Conference Studies.* no. 14. Princeton Univ. press. pp.63~97.

Moore, Lane, Hille. et al. Recommendations for child care centers(3rd rev. ed.) (Report R79-2). Milwaukee: Wisconsin University. Center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Research. 1994, P. Olmsted and J. Montid, ed, *Early Childhood Settings in 15 Countries,* High Scope Press,

2001, 재인용

- Neyer, G.(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P 2003-021.
- NHS. Guidelines for Out-Of-Home Child Care Programs. *National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Standards*. <http://nrc.uchsc.edu/national/index.html>.
- NICHD Early Child Care Network(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4). pp.58-78.
- NSACA(National School Age Care Alliances). URL : <http://www.nsac.org>
- OECD(2006). *Start Strong II*.
- OECD(2003). *OECD Health Data*.
- OECD(2003). *Country Note for Ireland*.
- OECD(2007). *OECD family data base*.
- OECD(2002). *OECD in figures : Statistics for the member countries*. Paris, Author. www.childpolicyintl.org/countries.uk.html.
- OECD(1999).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ountry report, background report*. appendix 참조.
- Peng, Ito(2002). Gender and Generation: Japanese Child Care and the Demographic Crisis. in Sonya Michel and Rianne Mahon(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New York, London: Routledge.
- Ramey, C. T.(1992). High risk children and IQ: Altering intergenerational patterns. *Intelligence*. Vol. 16.
- Ramey, C. T., & Campbell(1997). Developing early childhood programs for children and families at risk: Research based principles to promote long-term effectiven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0.
- Ramsey, C. T., & Reid(1998). Designing play environment for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Bergen(ed). *Play as a medium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A handbook of theory and practice*. Portsmouth, NH:Erlbaum.

- Raynolds, A. J.(1999). Educational success in high-risk setting: Contributions of the Chicago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Special Issue: Schooling and High-Risk Population - The Chicago Longitudinal Study. Vol. 37.
- Ribar, David(1995).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 No.3.
- Sainsbury, Diane(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 Press.
- Scarr, S., & Thompson, W.W.(1004).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non-maternal infant care on development at two and four year.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 Schindler, M.S.(2003). *Sewing seeds in a growing environment*. Paper presnted at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Annual Conference. Toronto, Canada.
- Shore, R.(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Thornburg, K. R.(1995). Child care policies: Changing to meet the needs.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 http://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oss/index_en.html
- <http://www.ifs.org.uk/taxben/bn35.pdf>.

부 록

1.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조사표
2. 영아가 있는 가구조사표
3. 영아가 있는 근로자조사표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조사표

조사유형 ① 전담 ② 일반	조사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조사표 번호			시설유형 번호

안녕하십니까? 보육사업에 헌신하고 계신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영아보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보육시설명	주소	연락처
시설유형 1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2) 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3) 단체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4) 개인민간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5)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6) 가정보육시설		

1. 귀 보육시설은 다음 중 어떤 보육시설에 해당됩니까?

- 1) 영아와 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일반 시설 2) 영아만 보육하는 시설
 3) 영아 중심, 유아를 소수 보육하는 시설

1

2. 귀하는 어떠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영아보육시설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영아와 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일반 시설 2) 영아만 보육하는 시설
 3) 영아 중심, 유아를 소수 보육하는 시설

2

3. 2007년 4월 30일 현재, 귀 보육시설의 연령별 인가 정원, 현원, 취업모 자녀수 등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연령 구분이 없는 경우 합계만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이상 미취학아동	합계
3-1. 인가 정원	()명			()명	()명
3-2. 현원	()명	()명	()명	()명	()명
3-3. 취업모 자녀	()명	()명	()명	()명	()명
3-4. 오후 6시 이후 하원하는 영아수	()명	()명	()명	/	
3-5. 시설 운영 차량으로 등하원하는 영아수	()명				

4. 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약보육은 무엇 무엇입니까? 실시하는 취약보육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각각에 1, 0으로 표시)

- 1) 야간보육 2) 24시간 보육 3) 일시 시간제 보육 4) 휴일보육

4

--	--	--	--

5. 귀 보육시설의 2007년 각 연령별 종일반 영아 1인당 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구분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보육료	()원	()원	()원

6. 귀 보육시설 수입 중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6 %

7. 귀 보육시설의 서비스나 설비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 매우 우수함	2. 대체로 우수함	3. 보통	4. 부분적 개선 필요	5. 많은 개선 필요
01) 시설의 공간배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2) 교재교구 다양성과 충분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3)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4) 보육활동의 다양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5) 유아의 일상적 보호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6) 교사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7) 실내 시설설비 위생상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8) 실외 시설설비 안전상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9) 건강 및 질병 관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0) 급간식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1) 놀잇감 안전 관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2) 비상사태 대비 시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3) 부모와의 의사소통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4) 지역사회 연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8. 다음 중 귀 보육시설은 대체교사를 고용하십니까? 대체교사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응답). (각각에 1, 0으로 표시)

8

- 1) 보수교육 2) 출산휴가 3) 일반 휴가 4) 기타()

9. 귀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십니까?

9

- 1) 지급함 2) 지급하지 않음

10. 귀 보육시설에서 가장 어린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지난 4월 총 급여와 총 근무연수 및 급수는 어떠합니까?

	4월 총 급여	총 근무연수	급수
가장 나이 어린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원	년	급

11. 귀 보육시설에 영아반과 유아반이 있는 경우 영아반 교사의 급여가 유아반 교사의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까?

11

- 1) 차이 없음 2) 영아보육교사 급여가 높음 8) 유아반 없음 (비해당)

12. 다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준수하기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구분	1. 매우 어려움	2. 대체로 어려움	3. 어렵지 않음	4. 모르겠음
1) 총정원 준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4대보험 가입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e-보육 사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혼합반 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교사 급여 기준 및 인상 관련 조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7) 평가인증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8) 재무회계 규칙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2

1)
 2)
 3)
 4)
 5)
 6)
 7)
 8)

13 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상태는 어떠합니까? 13

1) 2005년에 이미 받았음 2) 2006년에 신청하여 인증받음

3) 현재 평가가 진행 중 4) 2007년 내에 신청할 예정임

5) 2008년에 신청할 예정임 6) 신청 계획 없음

7) 잘 모르겠음

14 귀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회계를 관리합니까? 14

1) 직접 익숙하게 관리함 2) 직접 관리하지만 배우 불편함

3) 외부 도움을 받아서 관리함 4) 사용하지 않음 5) 기타()

15 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십니까? 15

1)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함 2) 구성하였으나 운영은 미약함

3) 구성하지 않았음 4) 기타()

※ 다음 질문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만 질문합니다(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은 제외).

16. (일반보육시설인 경우) 귀 보육시설은 2007년 4월 현재 영아 기본보조금을 수령하십니까? 16

1) 수령함 2) 수령하지 않음

17. (일반보육시설인 경우) 귀 보육시설은 영아 기본보조금을 수령하다가 정지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17

1) 있음 2) 없음

18. 보육시설 중에 ①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 ②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 ③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육료 상한선 이하를 받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18

1)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겠음

2)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겠음

3)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상한선 이하로 받겠음 4) 잘 모르겠음

※ 다음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 중 현재 영아 기본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에만 질문합니다.

19. 정부가 영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영아 부모에게 가정통신으로 알리신 적이 있습니까? 19

1) 상세하게 알렸음 2) 간단히 알렸음 3) 알리지 않았음 4) 모르겠음

20. 영아 기본보조금 수령 이후 보육인력을 충원하셨습니다습니까?(각각에 1, 0으로 표시) 20

1) 보조교사 충원 2) 취사부 충원 3) 기타 인력 충원 4) 충원 없음

21.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후 귀 보육시설 서비스와 보육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21

구분	변화 여부 및 정도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3. 별 변화 없음	4. 모르겠음
1) 교재교구가 다양하고 충분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놀잇감이 많아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급간식의 질이 개선되었음(유기농 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프로그램 등 보육활동이 다양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실내 환경이 더 쾌적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7) 실외 안전 설비(장치) 등이 더 좋아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2. 2007년도에 기본보조금 지급에 따른 교사 급여 인상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급여가 아닌 추가분만 적어주십시오. 평균 (천원) 22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표

조사지역	조사표 번호			시설유형 번호

안녕하십니까?

3세 미만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가구주명			
전화번호	(DDD:) -		
조사담당자		조사표 작성일	2007년 ()월 ()일

1. 가구와 부모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댁의 자녀수를 구분별로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없는 경우는 0을 기입하십시오)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생 이상	⑤ 전체
명	명	명	명

2. 가족유형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② 부부+자녀 ③ 여성한부모+자녀 ④ 남성한부모+자녀
 ⑤ (한)조부모+자녀 ⑥ 친인척+자녀 ⑦ 기타

1

--	--	--	--

 ① ② ③ ④

2

3. 현재 살고 계신 생활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상 2) 중상 3) 중하 4) 저소득층

3

4. 귀댁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각종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 예상되는 연 소득을 추정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주십시오.

월 _____ 만원

4

--	--	--	--

 만원

5.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 학력 및 건강상태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남편	부인
5-1. 연령	세	세
5-2.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3년제)대학 졸 ④ 4년제대학 이상	
5-3. 건강상태	① 건강 ② 질병 ③ 장애 ④ 질병과 장애	

5
 1)

--	--	--	--

 세
 2)

--	--

 3)

--	--

6. 귀댁 부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보기 】	남편	부인
0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 종사자 0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07) 농, 임, 어업 숙련종사자 0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0) 단순노무 종사자 11) 군인, 학생·재수생 13) 무직, 주부(집안일, 가사) 88) 비해당(부재)		

6

--	--

7. 취업한 경우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이고,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평일 귀가시간은 일정합니까?

구분	남편	부인
평균 1주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만원	만원
평일 귀가시간	1)일정함 <input type="checkbox"/> 2)일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일정함 <input type="checkbox"/> 2)일정하지 않음

7

--	--	--	--

 시간

--	--	--	--

 만원

II. 자녀 양육과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댁의 3세미만 자녀를 연령이 낮은 순으로 각각 이름, 연령, 성별을 기입해 주십시오. 3세 미만 자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한 집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 누가 돌보아 줍니까?

1. 이름	1)	2)	3)
2. 생년월일	년 월	년 월	년 월
개월 (7월 1일 기준)	개월	개월	개월
3. 성별 ① 남 ② 여			
4. 출생순위			
5.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질병있음 ③ 장애있음 ④ 장애와 질병 있음			
6. 낮 동안 다니는 기관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학원 ④ 선교원 ⑤ 복지관 ⑥ 기타 ⑦ 안 다님			
6-1.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천원	천원	천원
7.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인척 ④ 형제자매 ⑤ 파견육아전문인력 ⑥ 기타 비혈연 ⑦ 기타 ⑧ 없음			
7-1. (부모, 형제자매 이외인 경우)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천원	천원	천원

※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를 조사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합니다. (이름: 번호:)

2. 현재 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느 유형입니까? 2
- 1) 국·공립보육시설 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3)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4) 민간보육시설 5) 직장보육시설 6) 가정보육시설
 7) 부모협동보육시설
 □
3. 현재 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은 영아만 보육합니까? 3
- 1) 영아전담 2) 영아 중심 3) 영아와 유아 함께 보육
 □
4. 귀댁의 자녀는 언제부터 현재의 보육시설에 다녔습니까? 그 기간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개월수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년 ()월부터 시작해서 모두 ()개월
- □ 개월
5.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해당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5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이 들어서
 3) 예체능 특기교육을 위하여 4) 모취업으로 대리 양육을 위하여
 5)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6) 기타()
 □
6. 귀댁의 자녀는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매일 갑니까? 6
-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 일주일에 3~4번 4) 일주일에 1~2번 5) 필요할 때 가끔
 □
7. 평상시에 이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7
- ()시 ()분 ~ ()시 ()분
- □ □ □

8.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또한 2007년 3~5월 3개월 동안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입학금을 제외하고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등의 필요경비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1)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	2) 특별활동 비용 월 평균	3) 특별활동 이외 현장학습비 등 납부액 월 평균
()원	()원	()원

9. 이 자녀는 국가로부터 보육비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 1) 전액 면제
- 2) 일부 감면
- 3) 아무런 혜택 없음
- 4) 잘 모르겠음

9-1.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소득별 차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2) 한부모가정 자녀
<input type="checkbox"/> 3) 장애아동	<input type="checkbox"/> 4) 두 자녀가 이용
<input type="checkbox"/> 5) 세 번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6)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7) 기타	<input type="checkbox"/> 8) 비해당

9

9-1

10. 2007년 4월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고 있는 특기교육(특별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미술 관련 | <input type="checkbox"/> 2) 음악 관련 | <input type="checkbox"/> 3) 체육 관련 |
| <input type="checkbox"/> 4) 과학 관련 | <input type="checkbox"/> 5) 수학 관련 | <input type="checkbox"/> 6) 한글 관련 |
| <input type="checkbox"/> 7) 외국어 관련 | <input type="checkbox"/> 8) 컴퓨터 관련 | |
| <input type="checkbox"/> 9) 교구이용 (프뢰벨, 오르다, 가베 등) |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 |

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은 영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 1) 지원받고 있음(질문 11-1로)
- 2) 지원받지 않음
- 3) 잘 모르겠음

11-1. 지원 받는 경우, 영아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7년 현재 지원금 : 0세아 292,000원, 만 1세아 134,000원, 만 2세아 86,000원)

- 1)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음
- 2) 대충 안다
- 3) 전혀 모름

11

11-1

12. 3세 미만의 영아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실 경우,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저녁시간,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 <input type="checkbox"/> 3) 발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
| <input type="checkbox"/> 2) 가족이나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 <input type="checkbox"/> 4)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 |
| <input type="checkbox"/> 5) 급간식을 잘 챙겨 주는 것 | <input type="checkbox"/> 6) 병원가기 등 부모대리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
| <input type="checkbox"/> 7) 기타() | |

12

13.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등 기관에 다음 사항을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13-1. 병원 데려가기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잘 모름
13-2. 투약 등 아픈 아이 보살피기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잘 모름
13-3. 상황에 따라 등하원 시간 조절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잘 모름
13-4. 육아 정보 요청 및 육아상담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잘 모름

13

14.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서비스나 설비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 매우 우수함	2. 대체로 우수함	3. 보통	4. 부분적 개선 필요	5. 많은 개선 필요
01) 시설의 공간배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2) 교재교구 및 장비 다양성과 충분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3)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4) 보육활동의 다양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4

01)

02)

03)

04)

05) 유아의 일상적 보호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6) 교사와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7) 실내 시설설비 위생상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8) 실외 시설설비 안전상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9) 건강 및 질병 관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0) 급간식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1) 놀잇감 안전 관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2) 비상사태 대비 시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3) 부모와의 의사소통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14) 지역사회 연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현재 지불하는 보육비용 대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함 2) 어느 정도 만족함 3) 만족하지 못 함(질문 15-1로)

15

15-1.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가장 희망하십니까? 14번 문항에서 답변을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번

15-1

16. 최근 보육시설 서비스와 보육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구분	변화 여부 및 정도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3. 별 변화 없음	4. 모르겠음
1) 교재교구가 다양하고 충분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놀잇감이 많아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급간식의 질이 개선되었음(유기농 등)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프로그램 등 보육활동이 다양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교사가 아동에게 보다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6) 실내 환경이 더 쾌적해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7) 실외 안전 설비(장치) 등이 더 좋아졌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16

1)

2)

3)

4)

5)

6)

7)

17. 보육시설 중에 ① 기본보조금을 받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 ②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따라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 ③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이하를 받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귀하는 앞으로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생각이십니까?

- 1) 기본보조금을 받고 보육료 상한선을 지키는 시설
- 2)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질문 17-1로)
- 3)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상한선 이하로 받는 시설 ↓
- 4) 잘 모르겠음

17

17-1.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높게 받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경우 현재보다 보육료를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월 ()천원 정도

17-1 천원

※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아를 조사합니다.

18.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1)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2) 기관이 너무 멀어서
 3)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있어서 4) 비용이 부담되어서
 5)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없어서 6) 기타 8) 비해당(다남)

19. 향후 3세 미만 자녀를 기관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19
 1) 보낼 계획 있음(질문 19-1로) 2) 보낼 계획 없음(질문 20으로)

19-1 앞으로 기관에 보낸다면, 언제 보낼 계획입니까? 19-1
 1) 올해 안에 2) 내년 초에 3) 내년 하반기에
 4) 내후년 또는 그 이후에 8) 비해당(보낼 계획 없음)

20. 집에서 학습지나 방문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까? 20
 1) 하고 있음(질문 20-1로) 2) 하지 않음(질문 21로)

20-1 학습지나 방문지도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20-1
 1) 미술 관련 2) 음악 관련 3) 체육 관련
 4) 과학 관련 5) 수학 관련 6) 한글 관련
 7) 외국어 관련 8) 컴퓨터 관련 9) 교구 (프뢰벨, 오르다, 가베 등)
 10) 기타 12) 기타() 88) 비해당(안 함)

※ 조부모,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아동을 조사합니다.

21. 다음 중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1
 1) 친조부모 2) 외조부모 3) 친인척 4) 가정부, 파출부
 5) 파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6) 이웃탁아모 등 7) 기타
 8) 비해당

22. 조부모나 비혈연이 돌보는 자녀는 몇 명이며 주로 돌보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22

1. 조부모나 비혈연이 돌보는 자녀수	()명
2. 주로 돌보는 자녀	이름 () 번호()

23. 조부모나 비혈연은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23
 1) 평일 일정하게 2) 필요 시 간헐적으로

24. 조부모나 비혈연이 평균 1주일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24

25. 개인 보육서비스를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십니까? 25
 1) 개인 보육서비스만 이용(질문 25-1로) 2) 보육시설 등 기관과 중복 이용

25-1. (개인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5-1
 1) 보육시설을 믿을수 없어서 2) 아이가 아파서 3) 장애가 있어서
 4) 보육시설이 없어서 5) 인근 보육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6) 비용 부담으로 7) 기타 8) 비해당

26. 아이를 돌보는 분에게 비용지불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1) 정기적으로 지불
- 2) 비정기적으로 지불
- 3) 지불 안 함
- 8) 비해당

26-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월 평균을 내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원

26

25-1 천원

27. (비혈연인 경우) 아이를 돌보아 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1) 인력파견기관의 소개로
- 2) 주변의 소개로
- 3) 지역신문 등 광고로
- 4) 평소 알던 사람임
- 8) 비해당

27

28. (비혈연인 경우)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의 연령과 자격은 어떠한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기
28-1. 연령	() 세
28-2. 자격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간호사(간호조무사) <input type="checkbox"/> ⑤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모름 <input type="checkbox"/> ⑧ 비해당

28

1)

2)

29. (비혈연인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를 돌보아 주는 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도
1. 이용시간 탄력성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2) 만족 <input type="checkbox"/> 3)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4) 매우 불만족
2. 비용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2) 만족 <input type="checkbox"/> 3)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4) 매우 불만족
3. 양육방식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2) 만족 <input type="checkbox"/> 3)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4) 매우 불만족

29

1)

2)

3)

※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합니다.

30.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2)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3)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 4)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 5)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 6) 건강상 이유로
- 7) 기타()
- 8) 비해당(취업 중)

30

III. 자녀 양육 등 요구와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댁의 경우로 보아 어머니 취업 등으로 부모가 이동을 보살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은 무엇(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 1세 미만 자녀	② 만 1세 자녀	③ 만 2세 자녀
【보기】		
1) 조부모	2) 친인척	3) 어린이집 등 기관
4) 이웃탁아모 등 비혈연인	5) 기타	6) 잘 모름

1

2. 어머니께서는 영아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영아끼리 별도로 보육하는 곳과 유아와 함께 보육하는 곳 중 어디가 영아 자녀에게 더욱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영아만 보육
- 2) 영아 중심
- 3) 영아와 유아 함께 보육

2

3. 현재 일부 가정에서는 집에서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에게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개별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관리하여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일명 '보육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3

4.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구분	필요성	대처 방안
		① 상시 ② 매우 자주(주 2-3회) ③ 비교적 자주(주 1-2회) ④ 가끔(월 1~2번) ⑤ 매우 가끔(년 1-2번) ⑥ 없음
1) 시간제보육		
2) 야간보육		
3) 아픈 자녀 보육		
4) 24시간 보육		
5) 휴일보육		

4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마지막 출산 당시 취업 중이었습니까? 출산 후 원직으로 복직되었습니까?

- 1) 막내 출산시 미취업 중 2) 원직으로 복직
 3) 출산전 직장을 그만 둠(질문 5-1로) 4) 출산후 직장을 그만 둠(질문 5-1로)
 5) 휴직함 ↓ 6) 기타

5

5-1. (일을 그만 둔 경우) 당시 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2) 일을 하고 싶으나 회사 사정으로
 3)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4) 일을 하여도 보육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5) 건강상 이유로 6)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7) 기타() 8) 비해당(취업 중)

5-1

6. 현재는 정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웃)탁아모, 베이비시터, 조부모 등 개인이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가 집에서 보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만 지원
 2) (이웃)탁아모, 베이비시터, 조부모 등 개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가 집에서 보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3) 개인서비스 이용 아동은 물론 부모가 보는 아동도 지원 4) 잘 모름

6

7. 아이를 기르시면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1) 집안 어른 2) 친구, 동료 3) 육아관련 사이트
 4) 육아전문가 5) 기타

7

8.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로 누구와 주로 상담하십니까?

- 1) 집안 어른 2) 친구, 동료 3) 육아관련 사이트
 4) 전문상담가 5) 기타 6) 혼자 해결

8

9. 귀하는 육아정보와 상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현재로 충분해서 불필요 2) 전문기관 필요 3) 잘 모르겠다

9

◆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아가 있는 근로자 조사표

조사지역	조사표 번호		

안녕하십니까?

3세 미만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주소	()시·도 ()군 ()읍·면		
가구주명			
전화번호	(DDD:) -		
조사담당자	조사표 작성일	2007년 ()월 ()일	

I. 근로자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1

2. 귀하의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농업·어업·임업·축업·원예업 (가족종사자 포함)

2.

②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약사 등)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④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기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선반·목공, 숙련공 등)

⑤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

⑥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⑦ 경영·관리직 (5급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⑧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등)

⑨ 가정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⑩ 기타

3.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3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자녀 없음

4. 귀하 자녀의 만 나이를 선택해 주십시오(12개월 미만의 유아는 만 0세로 적어 주십시오).

① 첫째 아이 : 만 () 세

4-1

② 둘째 아이 : 만 () 세

4-2

③ 셋째 아이 : 만 () 세

4-3

④ 넷째 아이 : 만 () 세

4-4

5.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및 수도권

② 충청권

③ 강원권

5

④ 경상권

⑤ 전라권

6.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9인 이하

② 20~49인 이하

③ 49인 이하

④ 50~99인 이하

6

⑤ 100~299인 이하

⑥ 300~499인 이하

⑦ 500인 이상

II.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4~16번 문항은 자녀를 직접 보살필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의 연령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14. 만 0세 영아(12개월 미만)를 위한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을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조부모 | ② 친인척 | ③ 탁아모 등 비혈연인 |
| ④ 어린이집 | ⑤ 놀이방 | ⑥ 유치원 |
| ⑦ 선교원 | ⑧ 학원 | ⑨ 기타 () |

14

15. 만 1세 영아(12개월 ~ 24개월 미만)를 위한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을 위의 예시를 보고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5

16. 만 2세 영아(24개월 ~ 36개월 미만)를 위한 가장 좋은 대리양육 방법을 위의 예시를 보고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6

17. 귀하가 평일 하루 중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③ 2시간~3시간 미만 |
| ④ 3시간~4시간 미만 | ⑤ 4시간~5시간 미만 | ⑥ 5시간~6시간 미만 |
| ⑦ 6시간~7시간 미만 | ⑧ 7시간~8시간 미만 | ⑨ 8시간 이상 |

17

18. 만 3세 미만 자녀는 현재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 | | |
|--------|-------|-------------------------------|
| ① 조부모 | ② 친인척 | ③ 탁아모 등 비혈연인 |
| ④ 어린이집 | ⑤ 놀이방 | ⑥ 유치원 |
| ⑦ 선교원 | ⑧ 학원 | ⑨ 기타 () |

18

만 3세 미만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19.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19

20.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3개월) 특별활동 비용으로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만원

20

21.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3개월) 특별활동 이외의 현장학습비로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만원

21

22. 3세 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시설을 선택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보육시간 | ② 보육료 | ③ 집과의 거리 |
| ④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수준 | ⑤ 보육시설의 환경 | ⑥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
| ⑦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등 | ⑧ 기타 | |

22

III. 기업의 영아 양육 지원제도 현황

33. 아래의 기업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각각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필요성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근로자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선택)	①	②	③	④	⑤	33-1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파트타임제	①	②	③	④	⑤	33-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33-3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대체인력 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33-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보육 제도	직장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33-5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3-6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산모 수유실 설치 및 수유시간 부여	①	②	③	④	⑤	33-7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휴가 휴직	산전·후 휴가	①	②	③	④	⑤	33-8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3-9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34. 귀하가 재직 중인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① 시차출근제 | 34-1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② 파트타임제 | 34-2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③ 근로시간 단축 | 34-3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④ 대체인력 풀 운영 | 34-4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⑤ 직장보육시설 | 34-5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⑥ 보육비 지원 | 34-6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⑦ 산모 수유실 설치 및 수유시간 부여 | 34-7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⑧ 산전, 산후 휴가 | 34-8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⑨ 육아휴직 | 34-9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⑩ 기타 | 34-10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35. 귀하가 재직 중인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중에서 본인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원제도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① 시차출근제 | 35-1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② 파트타임제 | 35-2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③ 근로시간 단축 | 35-3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④ 대체인력 풀 운영 | 35-4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⑤ 직장보육시설 | 35-5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⑥ 보육비 지원 | 35-6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⑦ 산모 수유실 설치 및 수유시간 부여 | 35-7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⑧ 산전, 산후 휴가 | 35-8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⑨ 육아휴직 | 35-9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 ⑩ 기타 | 35-10 |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

36. 귀하의 직장에서 이용해 보신 기업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차출근제(근로자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선택)	①	②	③	④	⑤	36-1 <input type="text"/>
파트타임제	①	②	③	④	⑤	36-2 <input type="text"/>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36-3 <input type="text"/>
대체인력 풀 지원	①	②	③	④	⑤	36-4 <input type="text"/>
직장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36-5 <input type="text"/>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6-6 <input type="text"/>
산모 수유실 이용 및 수유시간 부여	①	②	③	④	⑤	36-7 <input type="text"/>
산전·후 휴가	①	②	③	④	⑤	36-8 <input type="text"/>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6-9 <input type="text"/>

37. 위의 지원제도 외에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기업이 시행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제도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38. 탄력근무제도(시차출근제, 파트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등)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② 업무의 성격상 탄력근무가 쉽지 않아서
 - ③ 직장에서 원하지 않아서 ④ 승진 및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⑤ 기타 () ⑧ 비해당(탄력근무제도 없음)
- 38

39.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있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②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 ③ 직장보육시설에 남은 자리가 없어서 ④ 직장보육시설이 좋지 않아서
 - ⑤ 보육료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⑥ 기타 () ⑧ 비해당(직장보육시설 없음)
- 39

40. 막내 출산 당시 육아휴직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휴직이 해당되지 않음 ② 회사 분위기가 허용하지 않음
 - ③ 대체인력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 ④ 직장내 승진 및 교육훈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 ⑤ 원직복직이 어렵기 때문에 ⑥ 수당이 너무 적어서
 - ⑦ 직장에 나가는 것이 더 좋아서 ⑧ 기타 () ⑨ 비해당(육아휴직 없음)
- 40

41. 육아휴직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2개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확보
 - ③ 원직복직 보장(고용안정) ④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⑤ 휴직 후 업무 적응능력 프로그램 제공 ⑥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 분위기
 - ⑦ 육아휴직 기간 연장 ⑧ 기타 ()
- 41-1.
41-2.

IV. 영아 양육 지원제도 개선방향

42. 귀하가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수입(소득) 변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변화 ② 자녀양육
 - ③ 본인의 경력관리 ④ 사회활동 참여 욕구
 - ⑤ 기타()
- 42

43. 부모의 취업으로 3세 미만 영아를 대리양육할 경우,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양해 지는 것
- ② 양호한 보육환경
- ③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 ④ 보육과 함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⑤ 기타()

43

44. 현재 기업의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 ② 출산과 양육지원을 여성근로자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인식
- ③ 기업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평등법 위반시 낮은 처벌 수준
- ④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 ⑤ 기타 ()

44

45.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 ① 시차출근제
- ② 파트타임제
- ③ 근로시간 단축
- ④ 대체인력 풀 운영
- ⑤ 직장보육시설
- ⑥ 보육비 지원
- ⑦ 산모수유실 설치 및 수유시간 부여
- ⑧ 산전후 휴가
- ⑨ 육아휴직
- ⑩ 기타()

45

46. 현재 정부의 영아 양육지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육비 지원 미흡
- ② 국공립 시설 등 지원 시설 부족
- ③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 ④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관리 미흡
- ⑤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최종 수혜자인 부모들의 요구 파악 미흡
- ⑥ 기타 ()

46

47.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제도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육비 지원 확대
- ② 보육시설 확충
- ③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 ④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지원 확대
- ⑤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 ⑥ 부모들의 요구 반영
- ⑦ 기타 ()

47

◆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07-02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10-3 93330